시 보

선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027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8호 도시관리계획(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1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9호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11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1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8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 17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08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7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27호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180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0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1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2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3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4호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5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15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6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47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24

회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1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2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1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105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명칭: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1,960.2㎡
 ○ 규모: 주차장 등 증축, 데크(산책길)설치, 건축물 세부용도변경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재생콘텐츠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1	대	331.2	331.2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2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3	대	301.2	301.2	인천광역시					
3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4	대	195.0	195.0	인천광역시					
4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5	대	132.2	132.2	인천광역시					
5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7	대	185.5	185.5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6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8	대	33.7	33.7	국 (기획재정부)					
7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9	도	0.7	0.7	국 (기획재정부)					
8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	공	13,486.5	9.0	인천광역시 (교육감)					
9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2	대	237.2	237.2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근저당권자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10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1	대	112.4	112.4	인천광역시					
11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2	대	108.1	108.1	인천광역시					
12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22	대	235.5	224.0	인천광역시					
13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2	도	5,957.0	90.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21,316.2	1,960.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0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1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88),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위 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가정동 산168-6 ~ 가정동438 일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9	33.5~65	주간선 도로	8,018	남측구역계 (가정동581-1)	백석동경계 (당하동876-5)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변경	대로	1	19	33.5~65	주간선 도로	8,018 (780)	남측구역계 (가정동581-1)	백석동경계 (당하동876-5)	일반 도로	-	건고54 ('70.2.9.)	분할측량 성과 반영 및 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19	대로 1-19	• 분할측량성과 결과 반영(면적변경)	• 분할측량성과 결과 및 면적변경에 따른 변경(경미한 변경) - 41,948㎡ →42,354㎡ 증)406㎡

2. 실시계획인가(변경)

○ 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가정동 산168-6 ~ 가정동438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인천가정 서곶로(대1-19호선) 확장공사

○ 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면적: 당초41,948㎡ / 변경42,354㎡, 증)406㎡
- 규모: 폭원(33.5 ~ 65m), 연장(780m), 차로확장(6차로→8차로)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2021.11. 8. ~ 2023.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로: 대1-19호선(폭원 B=33.5 ~ 65m, 연장 L=780m)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용지조서 1부. 끝.

■ 용지조서

○시설명: 대로1-19호선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증감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81,826	42,354	41,948	42,354	406					
1	산168-6	산168-15	구	구	152	43	33	43	10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분할
2	산15-2	산15-2	임	임	148	148	148	148		국	산림청	국	산림청	
3	산168	산168-13	구	구	257	38	45	38	-7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분할
4		산168-14		구		3		3	3			국	국토교통부	분할
5	산32	산32-3	임	임	1,002	39	16	39	23	국	산림청	국	산림청	분할
6	산15	산15-3	임	임	783	755	681	755	74	국	산림청	국	산림청	분할
7	6	6-4	전	전	2,793	1,257	1,261	1,257	-4	오*동	인천광역시북구산곡동***-*경남아파트***동**0*호	오*동	인천광역시북구산곡동***-*경남아파트***동**0*호	분할
8	6-2	6-2	답	답	558	558	558	558		오*동	인천광역시북구산곡동***-*경남아파트***동**0*호	오*동	인천광역시북구산곡동***-*경남아파트***동**0*호	
9	5	5-152	답	답	891	759	751	759	8	임*호 외** 명	인천시 서구 심곡동 ***	불명	인천시 서구 심곡동 ***	분할
10	7-1	7-5	답	답	1,120	1,007	1,001	1,007	6	김*숙 외*명	인천 남구 관교동 **-* 동아아파트 *동 *0*호	불명	인천 남구 관교동 **-* 동아아파트 *동 *0*호	분할
11	산33	산33-1	임	임	201	15	44	15	-29	국	산림청	국	산림청	분할
12	7-2	7-2	답	답	193	193	193	193		김*숙 외*명	인천 남구 관교동 **-* 동아아파트 *동 *0*호	불명	인천 남구 관교동 **-* 동아아파트 *동 *0*호	
13	4	4	답	답	289	289	289	289		안*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안*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	산34	산34-1	임	임	893	548	500	548	48	조*경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석남동)	조*경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번길**(석남동)	분할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증감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5	8	8-3	답	답	805	654	641	654	13	조*순 외*명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동로 *,*동 **0*호(용현동,금호타운)	조*순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동로 *,*동 **0*호(용현동,금호타운)	분할
16	3	3-3	전	전	959	764	768	764	-4	이*섭	인천광역시서구심곡동*0*한국아파트*0*동***호	이*섭	인천광역시서구심곡동*0*한국아파트*0*동***호	분할
17	산37	산37-1	임	임	298	135	115	135	20	국	산림청	국	산림청	분할
18	436	436-6	구	구	7,773	3,655	5,470	3,655	-1,815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
19		436-2		구		1,778		1,778	1,778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
20	9-3	9-11	전	전	1,264	997	1,003	997	-6	신*금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0*동 *0*호(심곡동,극동아파트)	신*금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0*동 *0*호(심곡동,극동아파트)	분할
21	9-1	9-10	답	답	1,505	1,079	1,069	1,079	10	오*석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감로 **-**	오*석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도감로 **-**	분할
22	산5	산5-3	임	임	2,058	981	953	981	28	학교법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학교법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분할
23	산4	산4-4	임	임	8,706	2,729	2,766	2,729	-37	이*상	인천 북구 부평동 ***-*	이*상	인천 북구 부평동 ***-*	분할
24	산3	산3-4	임	임	8,763	431	438	431	-7	학교법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학교법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분할
25	12-4	12-9	도	도	8,834	845	866	845	-2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분할
26	5-127	5-154	임	임	309	4	4	4		공	인천광역시서구	공	인천광역시서구	분할
27	5-126	5-153	도	도	1,034	4	4	4		공	인천광역시서구	공	인천광역시서구	분할
28	산15-1	산15-1	도	도	1,449	1,449	1,449	1,449		국	산림청	국	산림청	
29	5-102	5-102	도	도	88	88	88	8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0	5-134	5-155	임	임	99	62	64	62	-2	한*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한*애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분할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증감내역 (㎡)	소유자 당초		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1	산13-15	산13-15	도	도	2,433	2,433	2,433	2,433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2	6-1	6-1	도	도	246	246	246	246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3	5-99	5-99	도	도	544	544	544	544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4	5-100	5-100	도	도	258	258	258	25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5	3-1	3-1	도	도	4,683	4,683	4,415	4,683	268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측량
36	9-4	9-4	도	도	3,796	3,796	3,796	3,796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7	산5-1	산5-1	도	도	1,871	1,871	1,871	1,871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8	산4-1	산4-1	도	도	5,040	5,040	5,040	5,040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39	산2-3	산2-8	도	도	7,962	2,170	2,121	2,170	49	공	인천광역시	공	인천광역시	분할
40	438	438-4	도	도	1,508	6	6	6		국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	분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8호

도로구역(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국지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및 도시계획【도로: 광로3-24호선, 광로3-27호선, 대로3-58호선 / 사업명: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제91조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⑩총연장(㎞)
당초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	대곡동 일원	15,520	대곡동 373-1	대곡동 469-2	-	0.14
변경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	대곡동 일원	57,199	대곡동 373-11	불로동 3-9	-	1.11
당초	광역시도	58호선	-	대곡동 일원	50,208	대곡동 373-1	대곡동 555-9	-	0.6
변경	광역시도	58호선	-	대곡동 일원	40,208	대곡동 373-11	대곡동 555-9	-	0.6
결정	지방도	346호선	-	불로동 일원	8,128	마전동 321-17	마전동 326-4	-	0.46

※ 구간 중복(L=0.14Km,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광역시도 58호선)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실시설계 변경 결과 반영

○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0. 6.29. ~ 2022.12.31.
- 변경: 2020. 6.29. ~ 202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붙임과 같음

○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07)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광로	3	27	40	주간선도로	2,877 (970)	대로2-61	광로3-24	일반도로	-	인고제 1998-118호 (1998. 6.12.)	-
변경	광로	3	27	40	주간선도로	2,877 (970)	대로2-61	광로3-24	일반도로	-	-	가각부 변경

※ ( )는 금회 시행되는 폭원 및 연장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3-27호선	광로3-27호선	· 대로3-58호선과 접속부 변경	·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로3-58호선 접속구간 일부 변경

3.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73-5번지 ~ 불로동 326-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 면적 및 규모(변경)
- 당초: 면적 109,121.8㎡
- 변경: 면적 105,535.0㎡
- 변경사유: 실시설계 변경 결과 반영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 ~ 2022.12.31.
- 변경: 2020. 6.29. ~ 2025.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대곡	당초	373-13	답	304.0	30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73-5	답	1,635.0	352.0	공	인천광역시			
2	대곡	당초	373-11	답	1,185.0	1,185.0	정*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373-11	답	1,185.0	1,185.0	정*일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3	대곡	당초	373-12	답	793.0	79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73-12	답	793.0	793.0	공	인천광역시			
4	대곡	당초	382-7	임	801.7	801.7	김*석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변경	382-4	임	1,983.0	832.0	김*석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5	대곡	당초	382-6	임	239.1	239.1	김*석 외 9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변경	382-3	임	18,898.1	259.0	김*석 외 9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에이동 ***호(마전동,서해아파트*단지)			
6	대곡	당초	687-11	천	2,105.0	2,105.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87-12	천	18.0	18.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87-13	천	1,969.0	1,969.0	국	국토교통부			
		당초	687-14	천	216.0	21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7	천	31,810.0	4,561.0	국	국토교통부			
7	대곡	당초	373-3	답	151.0	15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73-3	답	151.0	151.0	공	인천광역시			
8	대곡	당초	469-19	답	853.0	85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469-25	답	853.0	853.0	공	인천광역시			
9	대곡	당초	469-15	답	838.0	838.0	문*주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번길 ** (불로동)			
		변경	469-21	답	838.0	838.0	문*주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번길 ** (불로동)			
10	대곡	당초	469-10	답	164.0	164.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변경	469-10	답	164.0	154.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1	대곡	당초	469-16	답	193.0	193.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변경	469-22	답	193.0	27.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2	대곡	당초	469-11	답	511.0	511.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변경	469-11	답	511.0	450.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3	대곡	당초	469-17	답	367.0	367.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변경	469-23	답	367.0	160.0	백*모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동 ***호 (당하동,성웅탑스빌아파트)			
14	대곡	당초	469-12	답	1,250.0	1,250.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변경	469-12	답	1,250.0	1,250.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5	대곡	당초	469-18	답	676.0	676.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변경	469-24	답	676.0	676.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6	대곡	당초	469-20	답	715.0	715.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변경	469-26	답	715.0	715.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17	대곡	당초	470-15	답	2,980.0	2,980.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70-24	답	2,982.0	2,982.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8	대곡	당초	470-17	답	1,086.0	1,086.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70-25	답	1,130.0	1,085.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19	대곡	당초	470-19	답	1,953.0	1,953.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70-26	답	2,228.0	1,945.0	안*철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0	대곡	당초	470-12	답	432.0	432.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12	답	432.0	432.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1	대곡	당초	470-14	답	543.0	54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14	답	543.0	54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2	대곡	당초	470-22	답	136.0	136.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29	답	136.0	136.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3	대곡	당초	470-23	답	170.0	170.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30	답	170.0	170.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24	대곡	당초	482-7	답	1,145.0	1,145.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7	답	1,145.0	1,145.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5	대곡	당초	482-18	답	308.0	308.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24	답	308.0	308.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26	대곡	당초	632-10	답	36.0	36.0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신명아파트 ***-****			
		변경	632-14	답	36.0	36.0	이*택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신명아파트 ***-****			
27	대곡	당초	482-9	답	1,282.0	1,282.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변경	482-9	답	1,282.0	1,282.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8	대곡	당초	482-8	답	91.0	91.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변경	482-8	답	91.0	91.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29	대곡	당초	632-9	답	319.0	319.0	김*희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			
		변경	632-13	답	319.0	319.0	김*희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			
30	대곡	당초	701-16	구	95.0	9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1-24	구	95.0	8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대곡	당초	701-17	구	447.0	4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1-25	구	447.0	4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대곡	당초	701-13	도	189.0	1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1-21	도	189.0	1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33	대곡	당초	701-14	도	727.0	7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1-22	도	727.0	7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대곡	당초	632-8	답	284.0	28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변경	632-12	답	284.0	28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5	대곡	당초	632-6	답	4.0	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변경	632-6	답	4.0	4.0	송*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36	대곡	당초	632-5	답	49.0	49.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피아*차아파트)			
		변경	632-5	답	49.0	49.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동 ***호 (마전동,대원레스피아*차아파트)			
37	대곡	당초	632-7	답	214.0	214.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호 (신현동,금강아미움)			
		변경	632-11	답	214.0	214.0	최*임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호 (신현동,금강아미움)			
38	대곡	당초	555-15	답	86.0	86.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15	답	86.0	86.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39	대곡	당초	555-22	답	173.0	173.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29	답	173.0	173.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40	대곡	당초	555-14	답	671.0	67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14	답	671.0	67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1	대곡	당초	555-21	답	621.0	62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변경	555-28	답	621.0	621.0	이*순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동 ***호 (풍무동,양도마을)			
42	대곡	당초	555-13	답	471.0	471.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변경	555-13	답	471.0	471.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43	대곡	당초	555-20	답	68.0	68.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변경	555-27	답	68.0	68.0	조*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동아아파트)			
44	대곡	당초	555-24	답	156.0	156.0	공	인천광역시			
		변경	555-31	답	156.0	156.0	공	인천광역시			
45	대곡	당초	555-25	답	50.0	5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555-32	답	50.0	12.0	공	인천광역시			
46	대곡	당초	555-12	답	744.0	744.0	박*기	인천 남구 주안동 ***-**			
		변경	555-12	답	744.0	744.0	박*기	인천 남구 주안동 ***-**			
47	대곡	당초	642-4	답	443.0	44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42-3	답	554.0	271.0	공	인천광역시			
48	대곡	당초	643-6	답	1,125.0	1,12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43-5	답	1,191.0	805.0	공	인천광역시			
49	대곡	당초	643-1	답	709.0	70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43-1	답	709.0	643.0	공	인천광역시			
50	대곡	당초	555-10	답	280.0	28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555-10	답	280.0	280.0	공	인천광역시			
51	대곡	당초	555-19	답	969.0	969.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변경	555-2	답	1,358.0	933.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2	대곡	당초	555-8	답	134.0	134.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변경	555-8	답	134.0	134.0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53	대곡	당초	643-3	답	431.0	43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43-3	답	431.0	431.0	공	인천광역시			
54	대곡	당초	703-9	구	763.0	76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3-1	구	4,002.0	660.0	국	농림축산식품부			
55	대곡	당초	555-7	답	1,161.0	1,16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555-7	답	1,161.0	1,161.0	공	인천광역시			
56	대곡	당초	373	답	1,828.0	1,828.0	지*환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 게이더스버그시리닝오크가 ***			
		변경	373	답	1,828.0	1,828.0	지*환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 게이더스버그시리닝오크가 ***			
57	대곡	당초	700-9	구	544.0	5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0-9	구	544.0	5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대곡	당초	산29-1	임	889.0	889.0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변경	산29	임	7,835.0	950.0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9	대곡	당초	687-15	구	5,151.0	5,15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7-8	구	46,785.0	4,510.0	국	국토교통부			
60	대곡	당초	468-6	답	100.0	100.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변경	468-6	답	100.0	100.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61	대곡	당초	379-3	전	106.0	106.0	********종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379-2	전	1,750.0	170.0	********종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62	대곡	당초	468-5	답	522.0	522.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변경	468-5	답	522.0	522.0	김*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길 ** (서운동)			
63	대곡	당초	469-4	답	109.0	109.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변경	469-4	답	109.0	109.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64	대곡	당초	469-14	답	1,653.0	1,653.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부평동)			
		변경	469-14	답	1,653.0	1,653.0	신*순 외 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번길 **-* (부평동)			
65	대곡	당초	468-7	답	500.0	500.0	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68-8	답	500.0	500.0	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66	대곡	당초	470-20	답	181.0	181.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27	답	181.0	181.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67	대곡	당초	470-21	답	213.0	21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변경	470-28	답	213.0	213.0	이*재	인천 부평구 산곡동 **-*			
68	대곡	당초	482-13	답	414.0	414.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19	답	414.0	414.0	박*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69	대곡	당초	482-14	답	418.0	418.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변경	482-20	답	418.0	418.0	김*성 외 2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동 ****호 (옥수동,극동그린아파트)			
70	대곡	당초	482-15	답	1,846.0	1,846.0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21	답	1,846.0	1,846.0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71	대곡	당초	482-16	답	488.0	488.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변경	482-22	답	488.0	488.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72	대곡	당초	482-11	답	773.0	773.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변경	482-11	답	773.0	773.0	신*명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퀸스타운길훈아파트 ***-****			
73	대곡	당초	482-17	전	184.0	184.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23	전	184.0	184.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74	대곡	당초	482-12	답	159.0	159.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482-12	답	159.0	159.0	이*찬	인천 서구 대곡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5	대곡	당초	533-5	답	48.0	48.0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동 ****호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변경	533-5	답	48.0	48.0	김*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동 ****호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76	대곡	당초	533-7	답	167.0	167.0	이*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검단힐스테이트아파트)			
		변경	533-13	답	167.0	167.0	이*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길 **,***동 ***호 (마전동,검단힐스테이트아파트)			
77	대곡	당초	555-23	답	1,025.0	1,025.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번길 ** (강남동)			
		변경	555-30	답	1,025.0	1,025.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번길 ** (강남동)			
78	대곡	당초	555-18	답	1.0	1.0	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번길 **,**동 ****호 (오류동,신동아아파트)			
		변경	555-26	답	1.0	1.0	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번길 **,**동 ****호 (오류동,신동아아파트)			
79	대곡	당초	533-8	전	7.0	7.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533-14	전	7.0	7.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80	대곡	당초	533-9	전	21.0	21.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533-15	전	21.0	21.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81	대곡	당초	700-16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0-21	구	23.0	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82	대곡	당초	700-17	구	916.0	9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0-22	구	916.0	9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3	대곡	당초	643-4	답	2,541.0	2,54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43-4	답	2,541.0	2,115.0	공	인천광역시			
84	대곡	당초	555-17	답	403.0	40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555	답	419.0	326.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85	대곡	당초	533-10	답	961.0	961.0	김*덕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변경	533-2	답	3,358.0	956.0	김*덕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 (오류동)			
86	대곡	당초	643-2	도	147.0	1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643-2	도	147.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87	대곡	당초	555-9	답	1,243.0	1,24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555-9	답	1,243.0	1,123.0	정*규	인천 서구 대곡동 ***			
88	대곡	당초	555-6	답	593.0	59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555-6	답	593.0	528.0	공	인천광역시			
89	대곡	당초	700-12	도	97.0	9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0-13	도	519.0	51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0-14	도	8.0	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0-15	도	3,205.0	3,20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0-2	도	16,480.0	3,1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0	대곡	당초	533-11	전	296.0	296.0	박*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동 ***호 (산곡동,현대아파트)			
		변경	533-3	답	1,003.0	297.0	박*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동 ***호 (산곡동,현대아파트)			
91	대곡	당초	703-8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3-11	구	2,503.0	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92	대곡	당초	675-20	답	751.0	75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2	답	779.0	779.0	공	인천광역시			
93	대곡	당초	675-16	답	18.0	18.0	이*홍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동보아파트 ***동 ***호			
		변경									
94	대곡	당초	675-13	답	485.0	48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3	답	485.0	485.0	공	인천광역시			
95	대곡	당초	675-17	답	19.0	19.0	송*길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 현대아파트 ***동 ****호			
		변경									
96	대곡	당초	675-14	답	844.0	84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4	답	844.0	844.0	공	인천광역시			
97	대곡	당초	675-10	답	300.0	30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0	답	300.0	300.0	공	인천광역시			
98	대곡	당초	675-18	답	9.0	9.0	심*기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99	대곡	당초	675-11	답	87.0	87.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1	답	87.0	87.0	공	인천광역시			
100	대곡	당초	675-21	답	152.0	15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15	답	172.0	172.0	공	인천광역시			
101	대곡	당초	706-3	구	388.0	3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6	구	1,711.0	42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2	대곡	당초	677-3	답	309.0	30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3	답	309.0	309.0	공	인천광역시			
103	대곡	당초	677-12	답	1,156.0	1,156.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8	답	1,347.0	1,347.0	공	인천광역시			
104	대곡	당초	677-11	전	5.0	5.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677-2	전	742.0	27.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105	대곡	당초	677-10	전	171.0	171.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변경	677-1	전	1,010.0	189.0	임*일	인천 서구 대곡동 ***			
106	대곡	당초	677-7	답	369.0	36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7	답	369.0	369.0	공	인천광역시			
107	대곡	당초	677-9	전	348.0	348.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변경	677	전	2,518.0	408.0	이*환	인천 계양구 계산동 ***-** 하나아파트 **동 ***호			
108	대곡	당초	677-6	답	73.0	7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6	답	73.0	73.0	공	인천광역시			
109	대곡	당초	707-5	구	169.0	16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7-1	구	371.0	2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0	대곡	당초	707-4	도	297.0	29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7	도	606.0	3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	대곡	당초	682	답	253.0	25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	답	253.0	253.0	공	인천광역시			
112	대곡	당초	682-6	답	579.0	57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6	답	579.0	579.0	공	인천광역시			
113	대곡	당초	682-12	답	412.0	41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1	답	417.0	407.0	공	인천광역시			
114	대곡	당초	682-9	답	934.0	93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9	답	934.0	934.0	공	인천광역시			
115	대곡	당초	682-13	답	174.0	174.0	임*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이화마을건영캐스빌 ***-****			
		변경	682-2	답	857.0	380.0	임*택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이화마을건영캐스빌 ***-****			
116	대곡	당초	682-7	답	598.0	59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7	답	598.0	598.0	공	인천광역시			
117	대곡	당초	682-10	답	605.0	60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10	답	605.0	605.0	공	인천광역시			
118	대곡	당초	682-8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2-8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119	대곡	당초	682-11	답	216.0	2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682-11	답	216.0	2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20	대곡	당초	708-4	구	107.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8-4	구	107.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대곡	당초	708-5	구	133.0	1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8-5	구	133.0	133.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2	대곡	당초	682-14	답	1.0	1.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682-3	답	2,146.0	94.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23	대곡	당초	708-6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8-7	구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8	구	386.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24	대곡	당초	683-16	답	14.0	14.0	김*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호 (방배동)			
		변경	683-4	답	43.0	24.0	김*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길 **-**,***호 (방배동)			
125	대곡	당초	683-14	답	3.0	3.0	이*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			
		변경	683-3	답	2,049.0	23.0	이*근	서울 양천구 신월동 ***-*			
126	대곡	당초	683-13	답	948.0	94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3-13	답	948.0	948.0	공	인천광역시			
127	대곡	당초	683-10	답	1,893.0	1,89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3-10	답	1,893.0	1,893.0	공	인천광역시			
128	대곡	당초	683-19	답	1,494.0	1,49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3-12	답	1,642.0	1,572.0	공	인천광역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29	대곡	당초	683-9	답	265.0	26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3-9	답	265.0	265.0	공	인천광역시			
130	대곡	당초	708-8	도	200.0	2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8-1	도	261.0	20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31	대곡	당초	686-1	답	482.0	48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	답	482.0	482.0	공	인천광역시			
132	대곡	당초	686-48	답	1,132.0	1,13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6	답	1,415.0	1,134.0	공	인천광역시			
133	대곡	당초	686-17	답	1,838.0	1,83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7	답	1,838.0	1,793.0	공	인천광역시			
134	대곡	당초	686-40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당초	686-41	답	284.0	2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8	답	1,168.0	380.0	공	인천광역시			
135	대곡	당초	686-50	답	91.0	9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9	답	253.0	145.0	공	인천광역시			
136	대곡	당초	686-18	답	698.0	69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8	답	698.0	698.0	공	인천광역시			
137	대곡	당초	686-25	답	3.0	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5	답	3.0	3.0	공	인천광역시			
138	대곡	당초	686-30	답	38.0	3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30	답	38.0	38.0	공	인천광역시			
139	대곡	당초	686-20	답	11.0	1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0	답	11.0	11.0	공	인천광역시			
140	대곡	당초	709-4	구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9-4	구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1	대곡	당초	709-6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9-6	구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2	대곡	당초	709-2	구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9-2	구	37.0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3	대곡	당초	686-10	천	24.0	2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0	천	24.0	24.0	공	인천광역시			
144	대곡	당초	686-31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31	답	48.0	48.0	공	인천광역시			
145	대곡	당초	686-3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3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146	대곡	당초	705-11	도	191.0	19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3	도	1,116.0	1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7	대곡	당초	705-13	구	168.0	16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4	구	831.0	16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48	대곡	당초	675-19	답	2,384.0	2,3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5-9	답	2,398.0	2,020.0	공	인천광역시			
149	대곡	당초	677-5	답	1,759.0	1,75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5	답	1,759.0	1,759.0	공	인천광역시			
150	대곡	당초	705-14	구	325.0	3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5	구	1,707.0	31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1	대곡	당초	679-6	잡	221.0	22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9-5	잡	1,435.0	214.0	공	인천광역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52	대곡	당초	677-4	답	867.0	867.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7-4	답	867.0	867.0	공	인천광역시			
153	대곡	당초	679-4	잡	11.0	1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9-4	잡	11.0	11.0	공	인천광역시			
154	대곡	당초	706-4	도	73.0	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6-1	도	550.0	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대곡	당초	705-15	구	83.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5-9	구	2,041.0	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56	대곡	당초	671-12	도	58.0	5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1-9	도	68.0	58.0	공	인천광역시			
157	대곡	당초	671-11	대	64.0	6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1-8	대	122.0	58.0	공	인천광역시			
158	대곡	당초	673-4	도	22.0	2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4	도	22.0	22.0	공	인천광역시			
159	대곡	당초	673-7	도	53.0	5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7	도	53.0	53.0	공	인천광역시			
160	대곡	당초	673-9	대	131.0	13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3	대	179.0	135.0	공	인천광역시			
161	대곡	당초	739	도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39	도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162	대곡	당초	673-6	대	208.0	20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6	대	208.0	208.0	공	인천광역시			
163	대곡	당초	673-10	전	60.0	6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8	전	336.0	31.0	공	인천광역시			
164	대곡	당초	673-1	도	149.0	149.0	임*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673-1	도	149.0	149.0	임*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165	대곡	당초	673-5	전	247.0	247.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3-5	전	247.0	226.0	공	인천광역시			
166	대곡	당초	672-6	전	6.0	6.0	공	인천광역시			
		변경									
167	대곡	당초	672-4	전	91.0	9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72-4	전	91.0	57.0	공	인천광역시			
168	대곡	당초	산204-12	임	1,205.0	1,20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산204-6	임	1,265.0	1,128.0	공	인천광역시			
169	대곡	당초	산204-13	임	1.0	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170	대곡	당초	산204-15	임	190.0	19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산204-9	임	295.0	216.0	공	인천광역시			
171	대곡	당초	683-18	구	1,025.0	1,02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172	대곡	당초	683-6	도	297.0	297.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683-6	도	297.0	18.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73	대곡	당초	산199-18	임	37.0	37.0	공	인천광역시			
		변경									
174	대곡	당초	686-44	답	1,611.0	1,61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5	답	1,674.0	1,468.0	공	인천광역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5	대곡	당초	686-38	답	24.0	24.0	장*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			
		변경	686	답	414.0	35.0	장*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			
176	대곡	당초	686-39	답	4.0	4.0	장*철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			
		변경									
177	대곡	당초	709-11	구	240.0	2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9-12	구	7.0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709-13	구	236.0	23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09	구	1,606.0	44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8	대곡	당초	686-45	답	1,638.0	1,63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9	답	1,732.0	1,356.0	공	인천광역시			
179	대곡	당초	686-11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11	답	34.0	34.0	공	인천광역시			
180	대곡	당초	686-46	답	1,408.0	1,40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1	답	1,527.0	1,235.0	공	인천광역시			
181	대곡	당초	686-9	답	35.0	3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9	답	35.0	35.0	공	인천광역시			
182	대곡	당초	686-47	답	32.0	3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686-23	답	42.0	1.0	공	인천광역시			
183	대곡	당초	686-51	답	8.0	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184	대곡	당초	533-12	답	47.0	47.0	김*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변경	533-16	답	47.0	47.0	김*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푸른마을삼부아파트)			
185	대곡	당초	713-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13-5	도	1.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6	대곡	당초	693-15	도	104.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693-15	도	104.0	1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7	대곡	당초	713-4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13-4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8	대곡	당초	687-9	구	46.0	4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687-9	구	46.0	46.0	국	국토교통부			
189	대곡	당초	693-14	도	842.0	8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190	대곡	당초	713-14	도	188.0	18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13-3	도	343.0	3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1	대곡	당초	713-15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713-12	도	105.0	5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2	대곡	당초									
		변경	701-1	구	61.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3	대곡	당초									
		변경	701	도	138.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4	대곡	당초									
		변경	555-11	답	12.0	12.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번길 ** (강남동)			
195	대곡	당초									
		변경	555-1	답	15.0	4.0	김*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번길 **,**동 ****호 (오류동,신동아아파트)			
196	대곡	당초									
		변경	533-1	전	1,297.0	18.0	문*명	인천 서구 대곡동 ***-*			
197	대곡	당초									
		변경	700-4	구	4,641.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98	대곡	당초									
		변경	산204-5	임	413.0	3.0	공	인천광역시			
199	대곡	당초									
		변경	산204-7	임	690.0	13.0	공	인천광역시			
200	대곡	당초									
		변경	693-12	도	1,499.0	7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1	대곡	당초									
		변경	554-23	답	1,013.0	70.0	신*석	김포시 북변동 산**			
202	대곡	당초									
		변경	554-12	답	17.0	9.0	신*석	김포시 북변동 산**			
203	대곡	당초									
		변경	676-2	답	3,949.0	2.0	이*영	인천 서구 가정동***한국아파트***-***			
204	대곡	당초									
		변경	713-18	도	918.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5	불로	당초	4-16	답	314.0	31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4-8	답	2,228.0	318.0	공	인천광역시			
206	불로	당초	4-10	답	188.0	188.0	공	인천광역시			
		변경	4-10	답	188.0	188.0	공	인천광역시			
207	불로	당초	4-9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4-9	답	184.0	184.0	공	인천광역시			
208	불로	당초	21-30	임	359.0	359.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1-20	임	575.0	358.0	공	인천광역시			
209	불로	당초	21-33	도	68.0	68.0	국	국토교통부			
		당초	21-34	도	34.0	34.0	국	국토교통부			
		변경	21-24	도	4,473.0	127.0	국	국토교통부			
210	불로	당초	20-6	도	63.0	63.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20-6	도	63.0	63.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11	불로	당초	21-28	도	104.0	104.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12	불로	당초	19-14	도	53.0	53.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변경	19-14	도	53.0	53.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13	불로	당초	20-1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변경	20-1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14	불로	당초	19-22	도	69.0	6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정동 ***			
		변경	19-15	도	78.0	78.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정동 ***			
215	불로	당초	19-10	도	38.0	38.0	김*수	서울 종로구 승인동 ***			
		변경	19-10	도	38.0	38.0	김*수	서울 종로구 승인동 ***			
216	불로	당초	519-28	도	13.0	13.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11	도	30.0	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217	불로	당초	19-3	도	132.0	132.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변경	19-3	도	132.0	132.0	김*수 외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동 ****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218	불로	당초	3-11	답	526.0	526.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7	답	776.0	499.0	공	인천광역시			
219	불로	당초	3-4	답	379.0	379.0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변경	3-4	답	379.0	379.0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220	불로	당초	19-8	도	234.0	2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9-8	도	234.0	2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21	불로	당초	3-5	전	175.0	175.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변경	3-5	전	175.0	175.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222	불로	당초	519-10	도	47.0	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10	도	47.0	4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3	불로	당초	519-12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12	구	25.0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4	불로	당초	19-2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변경	19-2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225	불로	당초	3	답	2.0	2.0	배*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동 ***호 (호원동,호원동한승미메이드아파트)			
		변경	3	답	2.0	2.0	배*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동 ***호 (호원동,호원동한승미메이드아파트)			
226	불로	당초	3-8	답	2.0	2.0	공	인천광역시			
		변경	3-8	답	2.0	2.0	공	인천광역시			
227	불로	당초	0-2	가		622.0	미등기	*			
		변경	0-2	가		622.0	미등기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28	불로	당초	3-9	전	447.0	447.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변경	3-9	전	447.0	447.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229	불로	당초	19-18	도	12.0	12.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변경	19-18	도	12.0	12.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230	불로	당초	19-9	도	189.0	18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9-9	도	189.0	189.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1	불로	당초	3-13	전	277.0	277.0	농협회사법인 주식회사*****	세종시 한누리대로 ***(어진동)			
		변경	3-10	전	1,310.0	428.0	고*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동 ***호 (경서동,동양엔파트)			
232	불로	당초	519-24	도	72.0	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519-25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519-26	도	154.0	1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	도	668.0	2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3	불로	당초	519-27	도	32.0	32.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519-1	구	2,034.0	3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4	불로	당초	4-15	답	109.0	109.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동 ***호 (마전동,검단*차대주피오레아파트)			
		변경	4-5	답	224.0	113.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번안길 **,***동 ***호 (마전동,검단*차대주피오레아파트)			
235	불로	당초	19-19	도	11.0	11.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변경	19-19	도	11.0	11.0	공 외 10인	인천광역시			
236	불로	당초	19-16	도	34.0	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9-16	도	34.0	3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7	불로	당초	19-17	도	4.0	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9-17	도	4.0	4.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8	불로	당초	18-4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8-4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39	불로	당초	18-6	도	226.0	226.0	공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18-5	도	239.0	239.0	공	인천광역시 서구			
240	불로	당초	18-2	도	190.0	190.0	유*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8-2	도	190.0	190.0	유*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1	불로	당초	18-3	도	3.0	2.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18-3	도	3.0	3.0	장*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2	불로	당초	21-26	답	11.0	11.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21-6	답	96.0	14.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43	불로	당초	21-8	도	25.0	25.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1-8	도	25.0	25.0	공	인천광역시			
244	불로	당초	21-19	도	2.0	2.0	임*경	마전동			
		변경	21-19	도	2.0	2.0	임*경	마전동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45	불로	당초	17-4	도	3.0	3.0	박*혜 외 17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			
		변경	17-4	도	3.0	3.0	박*혜 외 17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			
246	불로	당초	21-2	도	17.0	17.0	임*경	검단면 마전리			
		변경	21-2	도	17.0	17.0	임*경	검단면 마전리			
247	불로	당초	20-7	천	19.0	1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20-5	천	24.0	24.0	국	국토교통부			
248	불로	당초	20-4	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20-4	천	40.0	40.0	국	국토교통부			
249	불로	당초	19-21	도	1.0	1.0	임*용 외 5인	마전리 ***			
		변경	19-11	도	3.0	3.0	임*용 외 5인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50	불로	당초	17-5	도	13.0	13.0	나*경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송도동,송도해모로월드뷰)			
		변경	17-3	도	58.0	25.0	나*경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번길**,***-****(송도동,송도해모로월드뷰)			
251	불로	당초	17-2	도	4.0	4.0	박*혜 외12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			
		변경	17-2	도	4.0	4.0	박*혜 외12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동 ***호(구운동,코오롱하늘채아파트)			
252	불로	당초	21-27	도	1.0	1.0	류*자	서울 서초구 명달로*길**,***-****			
		변경	21-7	도	26.0	2.0	류*자	서울 서초구 명달로*길**,***-****			
253	불로	당초	21-25	도	7.0	7.0	임*경	마전동			
		변경	21-5	도	15.0	11.0	임*경	마전동			
254	불로	당초									
		변경	21-12	도	108.0	100.0	공	인천광역시			
255	불로	당초									
		변경	21-15	도	632.0	4.0	공	경기도			
256	마전	당초	290-21	도	13.0	13.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7	도	2,980.0	13.0	공	인천광역시			
257	마전	당초	416-43	구	2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16-34	구	84.0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8	마전	당초	416-41	도	28.0	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16-33	도	82.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9	마전	당초	321-32	도	116.0	11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17	도	126.0	126.0	임*택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60	마전	당초	321-33	도	7.0	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변경	321-21	도	49.0	37.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61	마전	당초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변경	321-22	도	34.0	34.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62	마전	당초	159-8	도	10.0	10.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변경	159-5	도	937.0	262.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263	마전	당초	290-20	도	530.0	530.0	공	인천광역시			
		변경	290-16	도	1,163.0	544.0	공	인천광역시			
264	마전	당초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23	도	32.0	3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65	마전	당초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24	도	215.0	21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66	마전	당초	159-7	도	14.0	14.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변경	159-2	도	15.0	15.0	김*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			
267	마전	당초	727-7	도	80.0	80.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7-3	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268	마전	당초	727-8	도	16.0	1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7-5	도	43.0	43.0	국	국토교통부			
269	마전	당초	727-6	도	21.0	2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727	도	36.0	36.0	국	국토교통부			
270	마전	당초	321-26	도	2.0	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26	도	2.0	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71	마전	당초	326-8	도	643.0	64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26-4	도	810.0	660.0	국	국토교통부			
272	마전	당초	399-23	구	166.0	16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99-1	구	311.0	167.0	국	국토교통부			
273	마전	당초	399-19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99-19	구	6.0	6.0	국	국토교통부			
274	마전	당초	399-22	구	291.0	291.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99	구	699.0	302.0	국	국토교통부			
275	마전	당초	182-22	도	281.0	281.0	공	인천광역시			
		변경	182-20	도	2,118.0	254.0	공	인천광역시			
276	마전	당초	446-65	도	17.0	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46-63	도	105.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7	마전	당초	446-64	구	9.0	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446-62	구	38.0	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8	마전	당초	0-0	가		145.0	미등기	*			
		변경	0-0	가		145.0	미등기	*			
279	마전	당초	326-10	임	592.0	592.0	국	기획재정부			
		변경	326-6	임	3,260.0	606.0	국	기획재정부			
280	마전	당초	326-7	도	119.0	11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26-1	도	222.0	123.0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281	마전	당초	321-34	도	4.0	4.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당초	321-30	도	58.0	58.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변경	321-2	도	72.0	72.0	문*진외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82	마전	당초	321-16	도	22.0	2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16	도	22.0	22.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3	마전	당초	321-25	도	35.0	3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25	도	35.0	35.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4	마전	당초	321-19	도	1.0	1.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변경	321-19	도	1.0	1.0	김*익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285	마전	당초	399-18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변경	399-18	구	3.0	3.0	국	국토교통부			
286	마전	당초	산1-4	임	298.0	298.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산1	임	1,586.0	303.0	국	국토교통부			
287	마전	당초									
		변경	321-20	도	7.0	2.0	임*택	마전동 ***			
288	마전	당초									
		변경	321-3	도	82.0	1.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289	마전	당초									
		변경	727-4	도	160.0	23.0	국	국토교통부			
290	마전	당초									
		변경	321-29	도	11.0	11.0	문*진 외 3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큰마을현대아파트 ***-***			
합계			당초			109,121.8					
			변경			105,535.0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촉 연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대곡동	산29	산29	농막	목제/비닐	22㎡		차*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2	대곡동	533-6	533-16	사무실	조립식/함석	19㎡		김*호 외 1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부개동, 푸른마을삼부아파트)	
3	대곡동	533-3	533-3	유실수	블루베리	134주		박*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동 ***호 (산곡동,현대아파트)	
4	대곡동	555-2	555-2	창고	조립식	3㎡		박*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자두나무		121주				
5	대곡동	671-6	671-6	창고	블록조/스레트	211㎡		문*종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6	불로동	3-4	3-4	가건물	조립식	4㎡		안*용 외 1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가건물	철파이프/스레트	12㎡				
				가건물	조립식	1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09호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도시재생과, ☏032-509-69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95호(2017. 7. 24.)로 결정(변경)된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부평동, 부개동, 청천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굴포천역~부평구청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부평동, 부개동, 청천동 일원	529,962	-	529,962	○ 역세권 주변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결정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9,962	-	529,962	100.0	
주거지역	소 계	448,029	-	448,029	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93,708	-	193,708	3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74,602	-	174,602	32.9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33	-	50,033	9.4	
	준주거지역	29,686	-	29,686	5.6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8,594	-	58,594	11.1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3,339	-	23,339	4.4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연 장 (m)	면 적 (㎡)
합 계	기정	93	13,597 (44,297)	148,808	20	3,917 (33,298)	70,942	27	4,432 (5,654)	44,450	46	5,248 (5,345)	33,416
대 로	기정	2	1,108 (25,120)	39,682	2	1,108 (25,120)	39,682	-	-	-	-	-	-
중 로	기정	7	2,334 (8,538)	34,374	1	437 (5,670)	8,162	3	1,488 (2,362)	21,639	3	409 (506)	4,573
소 로	기정	84	10,155 (10,639)	74,752	17	2,372 (2,508)	23,098	24	2,944 (3,292)	22,811	43	4,839 (4,839)	28,843

주1) ( )는 종류별 전체 연장

주2) 면적은 구역내 산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1	11	35	주간선 도로	732 (7,200)	석남동 광2-9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75. 5. 16.	
	대로	1	13	35	주간선 도로	376 (17,920)	계산동 광3-9	고잔동 광3-5	일반도로		인고제98-30호 (1998. 2. 4.)	
	중로	1	32	20	보조간선 도로	437 (5,670)	부평동 광3-8	계산동 중2-33	일반도로		인고 제1421호 (1988. 12. 29.)	
	중로	2	29	15	국지도로	1,228 (1,350)	광로3-8	중2-40	일반도로		건고 제54호 (1970. 2. 9.)	
	중로	2	204	15	집산도로	100 (520)	대1-11	대2-15	일반도로			
	중로	2	205	15	집산도로	160 (492)	대1-11	대2-15	일반도로			
	소로	1	1	10	국지도로	248	중2-204	중1-32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1	2	10	국지도로	287	중1-32	중2-20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9	중2-205	중3-66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중로	3	665	14	국지도로	92	소1-3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10	10	국지도로	73	대1-13	소1-13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56	대1-13	소1-14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1	13	10	국지도로	277	대1-11	중2-29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1	14	10	국지도로	53 (189)	중2-29	소3-23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1	15	10	국지도로	142	대1-11	소3-3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1	8	국지도로	61	소1-5	소1-2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2	2	8	국지도로	33	소1-2	소3-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2	10	8	국지도로	265	중1-32	소1-15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11	8	국지도로	303	중1-32	소1-13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0	중2-29	소2-1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26.)	
	중로	3	666	12	국지도로	164	대1-13	소1-13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2	15	8	국지도로	70	소2-13	소3-47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16	8	국지도로	108	소1-13	소2-13	일반도로		건교제326호 (1985. 7. 26.)	
	소로	2	42	8	국지도로	106	중2-29	소1-11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2	20	8	국지도로	179	중2-29	소2-1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07.26)	
	소로	2	21	8	국지도로	48	중2-29	소2-25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22	8	국지도로	103	소1-13	소2-20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1	6	국지도로	39	소1-1	소3-1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주차장 (지하)와 가각부분 일부 중복
	소로	3	2	6	국지도로	30	소1-1	소3-3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3	6	국지도로	176	소1-16	소3-1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주차장 (지하)와 가각부분 일부 중복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16	10	국지도로	50	소1-1	소1-21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4	6	국지도로	40	소1-5	소1-2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5	6	국지도로	210	소1-17	소3-14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1	17	10	국지도로	40	소1-2	소3-5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42	중3-665	소1-3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1	19	10	국지도로	84	소1-3	소1-4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8	6	국지도로	70	소1-3	소1-4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9	6	국지도로	70	소1-2	소1-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10	6	국지도로	60	소1-2	소1-5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11	6	국지도로	92	소1-2	소2-1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1	20	10	국지도로	84	소1-5	소1-2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14	6	국지도로	35	소1-2	소3-18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15	6	특수도로	21	대1-11	소3-1	보행자 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1	21	10	특수도로	20	대1-11	소1-16	보행자 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17	6	특수도로	30	대1-11	소3-5	보행자 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18	6	특수도로	34	대1-11	소3-14	보행자 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19	6	특수도로	37	대1-13	중3-665	보행자 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20	6	국지도로	28	소1-1	소1-6	일반도로		건고 제592호 (1989. 10. 23.)	
	소로	3	31	6	국지도로	151	중2-29	소1-15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32	6	국지도로	235	소3-31	소1-2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22	10	국지도로	307	소3-31	소2-10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34	6	국지도로	28	중2-29	소1-2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35	6	국지도로	32	소1-22	소3-3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36	6	국지도로	32	소2-10	소3-3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37	6	국지도로	28	중2-29	소1-2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39	6	국지도로	64	소2-10	소3-3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0	6	국지도로	145	소2-20	소1-23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1	6	국지도로	64	소1-23	소3-40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2	6	국지도로	83	소1-23	소3-40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30	소2-12	소2-20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44	6	국지도로	87	소2-20	소3-45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5	6	국지도로	67	소2-11	소2-22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6	6	국지도로	164	중3-666	중3-666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7	6	국지도로	110	소1-10	중3-666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48	6	국지도로	161	소2-11	소2-1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50	6	국지도로	96	소1-11	소3-56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51	6	국지도로	66	소3-23	소1-11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52	6	국지도로	106	소1-14	소2-25	일반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보1	4	특수도로	358	대1-11	중1-32	보행자 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2	25	8	국지도로	24	중1-32	소1-22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보3	4	특수도로	225	중1-32	소3-48	보행자 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보4	4	특수도로	32	소2-11	소3-40	보행자 도로		건고 제326호 (1985. 7. 26.)	
	소로	3	53	4	특수도로	30	대1-11	소1-17	보행자 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54	4	특수도로	34	소1-6	소1-1	보행자 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3	55	4	특수도로	27	대1-11	소1-18	보행자 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2	13	8	국지도로	223	중2-29	소2-14	일반도로			
	소로	2	26	8	국지도로	109	소2-42	소1-14	일반도로			
	소로	2	30	8	국지도로	46	중2-29	소2-25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2	27	8	국지도로	37 (53)	중2-29	중3-246	일반도로			
	소로	2	28	8	국지도로	53	중2-29	중3-246	일반도로			
	소로	2	29	8	국지도로	28	중2-29	중3-246	일반도로			
	중로	3	245	12	국지도로	153 (250)	중2-29	중3-247	일반도로			
	소로	3	13	6	국지도로	450	대1-13	중1-32	일반도로			
	소로	3	21	6	국지도로	450	대1-13	중1-32	일반도로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소로	2	17	8	국지도로	210	중2-29	소2-41	일반도로			
	소로	2	18	8	국지도로	93 (251)	중2-29	소2-7	일반도로			
	소로	2	40	8	국지도로	270 (450)	대1-13	중1-32	일반도로			
	소로	3	16	6	국지도로	270	중1-32	소2-18	일반도로			
	소로	2	41	8	국지도로	269	중1-32	소2-18	일반도로			
	소로	1	4	10	국지도로	170 (330)	소1-3	소1-2	일반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4	8	국지도로	140 (252)	대1-11	소1-5	일반도로			
	소로	3	56	6	국지도로	66	소1-11	소3-23	일반도로		인고 제2021-67호 (2021. 3. 31.)	

주) ( )는 노선별 전체 연장

○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8,237.7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10-766번지	549	인고 제2006-22호 (2006. 6. 29.)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10-335번지	371	인고 제2006-22호 (2006. 6. 29.)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	부평구 갈산동 380번지 일원	1,590.7	부평구고시 제2020-106호 (2020. 8. 10.)	일반광장, 도로 중복결정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지하)	부평구 부평동 880번지 일원	5,727	부평구 고시 제2020-121호 (2020.10.05)	신트리근린공원과 중복결정

○ 광장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1개소	-	-	1,578.2		
	1	광장	일반광장	부평구 갈산동 380번지	1,578.2	인고 제2017-95호 (2017. 4. 24.)	주차장(지하) 중복 결정

○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14,386.6		
	1	녹지	완충녹지	부평구 부평동 892번지	770.0	건고 제326호 (1985. 7. 26.)	
	2	녹지	완충녹지	부평구 부평동 913번지	1,617.0	건고 제326호 (1985. 7. 26.)	
	3	녹지	완충녹지	부평구 갈산동 392-15번지 일원	10,296.4	건고 제592호 (1989. 10. 23.)	
	4	녹지	완충녹지	부평구 갈산동 397-20번지 일원	1,703.2	건고 제592호 (1989. 10. 23.)	

○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64,141.5		
	44	신트리공원	근린공원	부평구 부평동 880번지 일원	58,594.6	건고 제326호 (1985. 7. 26.)	주차장(지하) 중복 결정
	76	고니샘놀이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부평동 916번지	1,651.0	-	
	249	마당놀이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갈산동 389번지	1,782.6	건고 제592호 (1989. 10. 23.)	
	250	대갈놀이공원	어린이공원	부평구 갈산동 398번지	2,113.3	건고 제592호 (1989. 10. 23.)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2,389.7		
	1	공공공지	부평구 갈산동 383-5번지 일원	507.4	인고 제2017-95 (2017. 4. 24.)	
	2	공공공지	부평구 갈산동 392-15번지 일원	564.2	인고 제2017-95 (2017. 4. 24.)	
	3	공공공지	부평구 갈산동 392-19번지 일원	490.4	인고 제2017-95 (2017. 4. 24.)	
	4	공공공지	부평구 갈산동 397-20번지 일원	418.8	인고 제2017-95 (2017. 4. 24.)	
	5	공공공지	부평구 갈산동 402-8번지 일원	408.9	인고 제2017-95 (2017. 4. 24.)	

○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11,963.2		
	1	학교	초등학교	부평구 부평동 905번지	10,843.0	건고 제326호 (1985. 7. 26.)	
	1	학교	유치원	부평구 갈산동 391번지	1,120.2	건고 제592호 (1989. 10. 23.)	

라.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 소계	2,069.3	-	-	-
	갈산동 381대	390.1	-	-	-
	갈산동 381-1대	380.2	-	-	-
	갈산동 381-2대	379.9	-	-	-
	갈산동 381-3대	538.8	-	-	-
	갈산동 381-4대	380.3	-	-	-
A2	- 소계	2,932.0	-	-	-
	갈산동 377대	196.0	-	-	-
	갈산동 377-1대	195.0	-	-	-
	갈산동 377-2대	195.1	-	-	-
	갈산동 377-3대	195.6	-	-	-
	갈산동 377-4대	195.9	-	-	-
	갈산동 377-5대	195.1	-	-	-
	갈산동 377-6대	195.0	-	-	-
	갈산동 377-7대	196.0	-	-	-
	갈산동 377-8대	196.0	-	-	-
	갈산동 377-9대	195.2	-	-	-
	갈산동 377-10대	195.2	-	-	-
	갈산동 377-11대	196.0	-	-	-
	갈산동 377-12대	195.8	-	-	-
	갈산동 377-13대	195.1	-	-	-
	갈산동 377-14대	195.0	-	-	-
A3	- 소계	912.8	-	-	-
	갈산동 380-1대	227.7	-	-	-
	갈산동 380-2대	228.6	-	-	-
	갈산동 380-3대	228.7	-	-	-
	갈산동 380-4대	227.8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4	- 소계	2,452.1	-	-	-
	갈산동 382대	205.1	-	-	-
	갈산동 382-1대	204.9	-	-	-
	갈산동 382-2대	204.7	-	-	-
	갈산동 382-3대	204.6	-	-	-
	갈산동 382-4대	204.5	-	-	-
	갈산동 382-5대	204.6	-	-	-
	갈산동 382-6대	204.4	-	-	-
	갈산동 382-7대	204.3	-	-	-
	갈산동 382-8대	204.1	-	-	-
	갈산동 382-9대	204.1	-	-	-
	갈산동 382-10대	204.1	-	-	-
	갈산동 382-11대	202.7	-	-	-
A5	- 소계	3,038.7	-	-	-
	갈산동 378대	219.0	-	-	-
	갈산동 378-1대	217.0	-	-	-
	갈산동 378-2대	217.0	-	-	-
	갈산동 378-3대	216.2	-	-	-
	갈산동 378-4대	216.8	-	-	-
	갈산동 378-5대	216.8	-	-	-
	갈산동 378-6대	216.4	-	-	-
	갈산동 378-11대	216.8	-	-	-
	갈산동 378-12대	216.7	-	-	-
	갈산동 378-13대	216.8	-	-	-
	갈산동 378-14대	216.1	-	-	-
	갈산동 378-15대	217.1	-	-	-
	갈산동 378-16대	217.0	-	-	-
	갈산동 378-17대	219.0	-	-	-
A6	- 소계	2,543.6	-	-	-
	갈산동 379대	211.9	-	-	-
	갈산동 379-1대	211.9	-	-	-
	갈산동 379-2대	211.8	-	-	-
	갈산동 379-3대	212.0	-	-	-
	갈산동 379-4대	212.0	-	-	-
	갈산동 379-5대	212.2	-	-	-
	갈산동 379-6대	212.0	-	-	-
	갈산동 379-7대	212.1	-	-	-
	갈산동 379-8대	211.9	-	-	-
	갈산동 379-9대	211.8	-	-	-
	갈산동 379-10대	212.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갈산동 379-11대	212.0	-	-	-
A7	- 소계	736.0	-	-	-
	갈산동 378-7대	148.2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보행자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78-8대	219.8	-	-	
	갈산동 378-9대	219.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보행자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78-10대	148.5	-	-	
A8	- 소계	1,322.1	-	-	-
	갈산동 383대	139.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3-7대	190.7	-	-	
	갈산동 383-1대	140.6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3-6대	190.1	-	-	
	갈산동 383-2대	140.6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3-5대	190.2	-	-	
	갈산동 383-3대	140.2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3-4대	190.0	-	-	
A10	- 소계	1,310.6	-	-	-
	갈산동 392대	185.0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2-7대	165.6	-	-	
	갈산동 392-1대	185.0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2-6대	135.6	-	-	
	갈산동 392-2대	185.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2-5대	135.6	-	-	
	갈산동 392-3대	189.0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2-4대	129.7	-	-	
A11	- 소계	2,204.0	-	-	-
	갈산동 390대	189.0	-	-	-
	갈산동 390-1대	190.0	-	-	-
	갈산동 390-2대	190.0	-	-	-
	갈산동 390-3대	189.6	-	-	-
	갈산동 390-4대	189.8	-	-	-
	갈산동 390-5대	191.4	-	-	-
	갈산동 390-6대	211.8	-	-	-
	갈산동 390-7대	212.8	-	-	-
	갈산동 390-8대	214.1	-	-	-
	갈산동 390-9대	209.3	-	-	-
	갈산동 390-10대	216.2	-	-	-
A12	- 소계	2,930.8	-	-	-
	갈산동 393대	208.5	-	-	-
	갈산동 393-1대	209.1	-	-	-
	갈산동 393-2대	209.1	-	-	-
	갈산동 393-3대	209.0	-	-	-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갈산동 393-4대	209.3	-	-	-
	갈산동 393-5대	209.3	-	-	-
	갈산동 393-6대	210.7	-	-	-
	갈산동 393-7대	210.6	-	-	-
	갈산동 393-8대	209.4	-	-	-
	갈산동 393-9대	209.6	-	-	-
	갈산동 393-10대	209.1	-	-	-
	갈산동 393-11대	209.1	-	-	-
	갈산동 393-12대	209.2	-	-	-
	갈산동 393-13대	208.8	-	-	-
A13	- 소계	1,427.0	-	-	-
	갈산동 392-8대	203.8	-	-	-
	갈산동 392-9대	203.8	-	-	-
	갈산동 392-10대	203.9	-	-	-
	갈산동 392-11대	203.7	-	-	-
	갈산동 392-12대	203.9	-	-	-
	갈산동 392-13대	203.8	-	-	-
	갈산동 392-14대	204.1	-	-	-
A14	- 소계	1,413.4	-	-	-
	갈산동 395대	201.7	-	-	-
	갈산동 395-1대	201.6	-	-	-
	갈산동 395-2대	201.8	-	-	-
	갈산동 395-3대	201.7	-	-	-
	갈산동 395-4대	201.7	-	-	-
	갈산동 395-5대	201.8	-	-	-
	갈산동 395-6대	203.1	-	-	-
A15	- 소계	1,874.1	-	-	-
	갈산동 388대	193.7	-	-	-
	갈산동 388-1대	186.2	-	-	-
	갈산동 388-2대	186.2	-	-	-
	갈산동 388-3대	186.2	-	-	-
	갈산동 388-4대	188.0	-	-	-
	갈산동 388-5대	186.0	-	-	-
	갈산동 388-6대	186.0	-	-	-
	갈산동 388-7대	186.0	-	-	-
	갈산동 388-8대	185.8	-	-	-
	갈산동 388-9대	190.0	-	-	-
A16	- 소계	2,299.5	-	-	-
	갈산동 387대	214.3	-	-	-
	갈산동 387-1대	208.1	-	-	-
	갈산동 387-2대	208.0	-	-	-
	갈산동 387-3대	208.1	-	-	-
	갈산동 387-4대	208.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갈산동 387-5대	208.0	-	-	-
	갈산동 387-6대	208.0	-	-	-
	갈산동 387-7대	208.0	-	-	-
	갈산동 387-8대	208.0	-	-	-
	갈산동 387-9대	208.0	-	-	-
	갈산동 387-10대	213.0	-	-	-
A17	- 소계	2,533.6	-	-	-
	갈산동 386대	211.1	-	-	-
	갈산동 386-1대	211.3	-	-	-
	갈산동 386-2대	211.2	-	-	-
	갈산동 386-3대	211.2	-	-	-
	갈산동 386-4대	211.0	-	-	-
	갈산동 386-5대	211.0	-	-	-
	갈산동 386-6대	210.8	-	-	-
	갈산동 386-7대	211.2	-	-	-
	갈산동 386-8대	211.2	-	-	-
	갈산동 386-9대	211.2	-	-	-
	갈산동 386-10대	211.2	-	-	-
	갈산동 386-11대	211.2	-	-	-
A18	- 소계	3,008.7	-	-	-
	갈산동 394대	218.7	-	-	-
	갈산동 394-1대	214.2	-	-	-
	갈산동 394-2대	214.2	-	-	-
	갈산동 394-3대	214.2	-	-	-
	갈산동 394-4대	214.3	-	-	-
	갈산동 394-5대	214.3	-	-	-
	갈산동 394-6대	214.2	-	-	-
	갈산동 394-7대	214.1	-	-	-
	갈산동 394-8대	214.3	-	-	-
	갈산동 394-9대	214.3	-	-	-
	갈산동 394-10대	214.3	-	-	-
	갈산동 394-11대	214.4	-	-	-
	갈산동 394-12대	214.3	-	-	-
	갈산동 394-13대	218.9	-	-	-
A19	- 소계	2,626.4	-	-	-
	갈산동 385대	158.1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13대	212.6	-	-	
	갈산동 385-1대	165.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12대	212.3	-	-	
	갈산동 385-2대	165.6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11대	212.2	-	-	
	갈산동 385-3대	165.3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10대	212.1	-	-	
	갈산동 385-4대	164.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9대	212.1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갈산동 385-5대	164.8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8대	212.2	-	-	
	갈산동 385-6대	155.9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85-7대	212.4	-	-	
A20	- 소계	2,300.3	-	-	-
	갈산동 396대	2,300.3	-	-	-
A21	- 소계	2,355.2	-	-	-
	갈산동 399대	195.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13대	139.3	-	-	
	갈산동 399-1대	192.3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12대	145.6	-	-	
	갈산동 399-2대	192.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11대	145.7	-	-	
	갈산동 399-3대	192.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10대	145.7	-	-	
	갈산동 399-4대	192.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9대	145.7	-	-	
	갈산동 399-5대	192.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8대	145.8	-	-	
	갈산동 399-6대	192.6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9-7대	137.0	-	-	
A22	- 소계	1,433.9	-	-	-
	갈산동 397대	399.4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1대	198.6	-	-	
	갈산동 397-6대	148.5	-	-	
	갈산동 397-2대	198.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5대	148.6	-	-	
	갈산동 397-3대	199.6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4대	140.7	-	-	
A23	- 소계	2,707.4	-	-	-
	갈산동 400대	197.1	-	-	-
	갈산동 400-1대	193.0	-	-	-
	갈산동 400-2대	192.8	-	-	-
	갈산동 400-3대	192.8	-	-	-
	갈산동 400-4대	192.7	-	-	-
	갈산동 400-5대	192.5	-	-	-
	갈산동 400-6대	192.7	-	-	-
	갈산동 400-7대	192.9	-	-	-
	갈산동 400-8대	192.6	-	-	-
	갈산동 400-9대	192.7	-	-	-
	갈산동 400-10대	192.7	-	-	-
	갈산동 400-11대	192.8	-	-	-
	갈산동 400-12대	193.1	-	-	-
	갈산동 400-13대	197.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A24	- 소계	2,600.0	-	-	-
	갈산동 401대	220.0	-	-	-
	갈산동 401-1대	215.9	-	-	-
	갈산동 401-2대	216.1	-	-	-
	갈산동 401-3대	216.0	-	-	-
	갈산동 401-4대	215.9	-	-	-
	갈산동 401-5대	215.9	-	-	-
	갈산동 401-6대	216.2	-	-	-
	갈산동 401-7대	216.0	-	-	-
	갈산동 401-8대	216.0	-	-	-
	갈산동 401-9대	216.0	-	-	-
	갈산동 401-10대	216.0	-	-	-
	갈산동 401-11대	220.0	-	-	-
A25	- 소계	1,906.2	-	-	-
	갈산동 397-8대	152.1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9대	152.2	-	-	
	갈산동 397-10대	152.3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11대	152.4	-	-	
	갈산동 397-12대	152.5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13대	154.8	-	-	
	갈산동 397-14대	254.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15대	183.7	-	-	
	갈산동 397-16대	180.5	-	-	
	갈산동 397-17대	180.3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397-18대	190.5	-	-	
A26	- 소계	1,391.4	-	-	-
	갈산동 402대	170.4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402-1대	172.2	-	-	
	갈산동 402-2대	172.7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402-3대	173.2	-	-	
	갈산동 402-4대	173.5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402-5대	174.2	-	-	
	갈산동 402-6대	174.5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갈산동 402-7대	180.7	-	-	
B1	- 소계	1,802.5	-	-	-
	부평동 881대	191.8	-	-	-
	부평동 881-1대	244.8	-	-	-
	부평동 881-2대	219.7	-	-	-
	부평동 881-3대	211.6	-	-	-
	부평동 881-4대	259.4	-	-	-
	부평동 881-5대	238.7	-	-	-
	부평동 881-6대	231.8	-	-	-
	부평동 881-7대	204.7	-	-	-
B2	- 소계	3,544.0	-	-	-
	부평동 882대	247.7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882-1대	207.1	-	-	-
	부평동 882-2대	207.5	-	-	-
	부평동 882-3대	287.6	-	-	-
	부평동 882-4대	226.7	-	-	-
	부평동 882-5대	291.8	-	-	-
	부평동 882-6대	247.6	-	-	-
	부평동 882-7대	210.1	-	-	-
	부평동 882-8대	193.8	-	-	-
	부평동 882-9대	200.6	-	-	-
	부평동 882-10대	200.6	-	-	-
	부평동 882-11대	200.6	-	-	-
	부평동 882-12대	201.0	-	-	-
	부평동 882-13대	200.5	-	-	-
	부평동 882-14대	200.7	-	-	-
	부평동 882-15대	220.1	-	-	-
B3	- 소계	3,042.9	-	-	-
	부평동 883대	151.8	-	-	-
	부평동 883-1대	199.7	-	-	-
	부평동 883-2대	200.6	-	-	-
	부평동 883-3대	199.9	-	-	-
	부평동 883-4대	200.5	-	-	-
	부평동 883-5대	200.1	-	-	-
	부평동 883-6대	200.2	-	-	-
	부평동 883-7대	192.8	-	-	-
	부평동 883-8대	191.8	-	-	-
	부평동 883-9대	199.9	-	-	-
	부평동 883-10대	199.7	-	-	-
	부평동 883-11대	199.7	-	-	-
	부평동 883-12대	232.2	-	-	-
	부평동 883-13대	245.0	-	-	-
	부평동 883-14대	229.0	-	-	-
B4	- 소계	4,116.1	-	-	-
	부평동 887대	200.3	-	-	-
	부평동 887-1대	206.9	-	-	-
	부평동 887-2대	206.8	-	-	-
	부평동 887-3대	206.2	-	-	-
	부평동 887-4대	207.0	-	-	-
	부평동 887-5대	207.5	-	-	-
	부평동 887-6대	206.9	-	-	-
	부평동 887-7대	207.2	-	-	-
	부평동 887-8대	207.1	-	-	-
	부평동 887-9대	201.2	-	-	-
	부평동 887-10대	202.5	-	-	-
	부평동 887-11대	207.2	-	-	-
	부평동 887-12대	207.7	-	-	-
	부평동 887-13대	207.0	-	-	-
	부평동 887-14대	207.6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887-15대	206.5	-	-	-
	부평동 887-16대	207.6	-	-	-
	부평동 887-17대	206.6	-	-	-
	부평동 887-18대	206.7	-	-	-
	부평동 887-19대	199.6	-	-	-
B5	- 소계	4,100.5	-	-	-
	부평동 886대	200.3	-	-	-
	부평동 886-1대	206.1	-	-	-
	부평동 886-2대	206.4	-	-	-
	부평동 886-3대	206.7	-	-	-
	부평동 886-4대	206.4	-	-	-
	부평동 886-5대	206.2	-	-	-
	부평동 886-6대	206.5	-	-	-
	부평동 886-7대	207.4	-	-	-
	부평동 886-8대	206.3	-	-	-
	부평동 886-9대	200.5	-	-	-
	부평동 886-10대	199.8	-	-	-
	부평동 886-11대	205.3	-	-	-
	부평동 886-12대	206.9	-	-	-
	부평동 886-13대	205.8	-	-	-
	부평동 886-14대	205.4	-	-	-
	부평동 886-15대	206.2	-	-	-
	부평동 886-16대	206.3	-	-	-
	부평동 886-17대	206.3	-	-	-
	부평동 886-18대	205.9	-	-	-
	부평동 886-19대	199.8	-	-	-
B6	- 소계	2,454.1	-	-	-
	부평동 884대	169.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13대	194.5	-	-	
	부평동 884-1대	151.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12대	201.5	-	-	
	부평동 884-2대	150.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11대	200.0	-	-	
	부평동 884-3대	151.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10대	201.1	-	-	
	부평동 884-4대	150.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9대	200.9	-	-	
	부평동 884-5대	150.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8대	201.0	-	-	

가구 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884-6대	137.0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4-7대	194.1	-	-	
B7	- 소계	2,061.9	-	-	-
	부평동 885대	137.8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11대	194.2	-	-	
	부평동 885-1대	150.8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10대	200.0	-	-	
	부평동 885-2대	150.6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9대	200.3	-	-	
	부평동 885-3대	150.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8대	199.3	-	-	
	부평동 885-4대	150.2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7대	200.1	-	-	
	부평동 885-5대	135.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5-6대	192.8	-	-	
B8	- 소계	2,249.0	-	-	-
	부평동 889대	135.9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11대	192.4	-	-	
	부평동 889-1대	149.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10대	199.3	-	-	
	부평동 889-2대	149.4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9대	199.7	-	-	
	부평동 889-3대	149.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8대	199.9	-	-	
	부평동 889-4대	189.9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7대	199.8	-	-	
	부평동 889-5대	185.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9-6대	298.8	-	-	
B9	- 소계	1,714.0	-	-	-
	부평동 888대	130.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8-1대	196.3	-	-	
	부평동 888-2대	202.9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8-9대	145.4	-	-	
	부평동 888-3대	203.4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8-8대	146.7	-	-	
	부평동 888-4대	202.9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8-7대	145.9	-	-	
	부평동 888-5대	198.5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888-6대	141.3	-	-	
B10	- 소계	3,728.3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890대	347.1	-	-	-
	부평동 890-1대	751.6	-	-	-
	부평동 890-2대	469.7	-	-	-
	부평동 890-3대	744.5	-	-	-
	부평동 890-4대	599.4	-	-	-
	부평동 890-6대	181.9	-	-	-
	부평동 890-7대	198.4	-	-	-
	부평동 890-8대	225.9	-	-	-
	부평동 890-9대	209.8	-	-	-
B11	- 소계	3,604.8	-	-	-
	부평동 904대	153.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9대	211.4	-	-	
	부평동 904-1대	155.3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8대	201.7	-	-	
	부평동 904-2대	156.6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7대	206.6	-	-	
	부평동 904-3대	155.8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6대	203.6	-	-	
	부평동 904-4대	155.7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5대	203.6	-	-	
	부평동 904-5대	155.0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4대	203.8	-	-	
	부평동 904-6대	154.6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3대	203.6	-	-	
	부평동 904-7대	155.4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2대	204.3	-	-	
	부평동 904-8대	155.1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1대	204.7	-	-	
	부평동 904-9대	151.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04-10대	212.2	-	-	
B12	- 소계	2,764.0	-	-	-
	부평동 900대	228.2	-	-	-
	부평동 900-1대	199.5	-	-	-
	부평동 900-2대	221.1	-	-	-
	부평동 900-3대	220.7	-	-	-
	부평동 900-4대	200.6	-	-	-
	부평동 900-5대	179.5	-	-	-
	부평동 900-6대	228.7	-	-	-
	부평동 900-7대	229.1	-	-	-
	부평동 900-8대	200.7	-	-	-

가구 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900-9대	200.1	-	-	-
	부평동 900-10대	228.6	-	-	-
	부평동 900-11대	228.4	-	-	-
	부평동 900-12대	198.8	-	-	-
B13	- 소계	2,104.8	-	-	-
	부평동 899대	217.8	-	-	-
	부평동 899-1대	207.6	-	-	-
	부평동 899-2대	207.4	-	-	-
	부평동 899-3대	207.5	-	-	-
	부평동 899-4대	213.6	-	-	-
	부평동 899-5대	213.3	-	-	-
	부평동 899-6대	206.9	-	-	-
	부평동 899-7대	207.2	-	-	-
	부평동 899-8대	207.1	-	-	-
	부평동 899-9대	216.4	-	-	-
B14	- 소계	1,469.3	-	-	-
	부평동 901대	244.2	-	-	-
	부평동 901-1대	238.0	-	-	-
	부평동 901-2대	249.8	-	-	-
	부평동 901-3대	253.9	-	-	-
	부평동 901-4대	253.2	-	-	-
	부평동 901-5대	230.2	-	-	-
B15	- 소계	2,085.4	-	-	-
	부평동 902대	279.2	-	-	-
	부평동 902-1대	217.5	-	-	-
	부평동 902-2대	203.7	-	-	-
	부평동 902-3대	233.7	-	-	-
	부평동 902-4대	227.0	-	-	-
	부평동 902-5대	220.4	-	-	-
	부평동 902-6대	220.6	-	-	-
	부평동 902-7대	227.2	-	-	-
	부평동 902-8대	256.1	-	-	-
B16	- 소계	2,633.3	-	-	-
	부평동 903대	212.2	-	-	-
	부평동 903-1대	210.7	-	-	-
	부평동 903-2대	244.0	-	-	-
	부평동 903-3대	224.7	-	-	-
	부평동 903-4대	230.1	-	-	-
	부평동 903-5대	238.5	-	-	-
	부평동 903-6대	224.7	-	-	-
	부평동 903-7대	225.0	-	-	-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903-8대	239.6	-	-	-
	부평동 903-9대	190.3	-	-	-
	부평동 903-10대	199.3	-	-	-
	부평동 903-11대	194.2	-	-	-
B17	- 소계	2,985.6	-	-	-
	부평동 898대	195.2	-	-	-
	부평동 898-1대	186.1	-	-	-
	부평동 898-2대	170.2	-	-	-
	부평동 898-3대	202.8	-	-	-
	부평동 898-4대	202.7	-	-	-
	부평동 898-5대	202.1	-	-	-
	부평동 898-6대	202.0	-	-	-
	부평동 898-7대	195.9	-	-	-
	부평동 898-8대	195.3	-	-	-
	부평동 898-9대	200.9	-	-	-
	부평동 898-10대	200.8	-	-	-
	부평동 898-11대	201.0	-	-	-
	부평동 898-12대	200.8	-	-	-
	부평동 898-13대	117.4	-	-	-
	부평동 898-14대	173.4	-	-	-
	부평동 898-15대	139.0	-	-	-
B18	- 소계	2,265.0	-	-	-
	부평동 896대	215.0	-	-	-
	부평동 896-1대	215.6	-	-	-
	부평동 896-2대	209.1	-	-	-
	부평동 896-3대	209.0	-	-	-
	부평동 896-4대	215.4	-	-	-
	부평동 896-5대	213.4	-	-	-
	부평동 897대	987.5	-	-	-
B19	- 소계	1,951.9	-	-	-
	부평동 894대	243.7	-	-	-
	부평동 894-1대	249.0	-	-	-
	부평동 894-2대	244.4	-	-	-
	부평동 894-3대	244.2	-	-	-
	부평동 894-4대	240.8	-	-	-
	부평동 894-5대	118.9	-	-	-
	부평동 894-6대	244.5	-	-	-
	부평동 894-7대	243.9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894-8대	122.5	-	-	-
B20	- 소계	3,065.4	-	-	-
	부평동 893대	179.7	-	-	-
	부평동 893-1대	194.4	-	-	-
	부평동 893-2대	194.5	-	-	-
	부평동 893-3대	165.3	-	-	-
	부평동 893-4대	229.4	-	-	-
	부평동 893-5대	232.6	-	-	-
	부평동 893-6대	234.2	-	-	-
	부평동 893-7대	230.8	-	-	-
	부평동 893-8대	226.0	-	-	-
	부평동 893-9대	224.4	-	-	-
	부평동 893-10대	230.6	-	-	-
	부평동 893-11대	231.4	-	-	-
	부평동 893-12대	230.6	-	-	-
	부평동 893-13대	261.5	-	-	-
B21	- 소계	1,976.7	-	-	-
	부평동 895대	242.0	-	-	-
	부평동 895-1대	240.4	-	-	-
	부평동 895-2대	250.7	-	-	-
	부평동 895-3대	250.5	-	-	-
	부평동 895-4대	244.6	-	-	-
	부평동 895-5대	245.1	-	-	-
	부평동 895-6대	251.1	-	-	-
	부평동 895-7대	252.3	-	-	-
B22	- 소계	847.0	-	-	-
	부평동 911대	161.1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1-1대	164.4	-	-	
	부평동 911-2대	92.0	-	-	
	부평동 911-3대	96.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1-4대	165.5	-	-	
	부평동 911-5대	167.1	-	-	
B23	- 소계	2,674.5	-	-	-
	부평동 912대	177.2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5대	121.0	-	-	
	부평동 912-1대	186.9	-	-	ㅇ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ㅇ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4대	137.9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912-2대	190.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3대	140.8	-	-	
	부평동 912-3대	193.3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2대	143.9	-	-	
	부평동 912-4대	196.7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1대	147.0	-	-	
	부평동 912-5대	200.1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10대	150.2	-	-	
	부평동 912-6대	203.4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9대	153.1	-	-	
	부평동 912-7대	192.8	-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지정) ○도로 기부채납
	부평동 912-8대	140.1	-	-	
B24	- 소계	3,046.2	-	-	-
	부평동 910대	187.0	-	-	-
	부평동 910-1대	223.2	-	-	-
	부평동 910-2대	223.3	-	-	-
	부평동 910-3대	223.6	-	-	-
	부평동 910-4대	223.1	-	-	-
	부평동 910-5대	223.2	-	-	-
	부평동 910-6대	221.7	-	-	-
	부평동 910-7대	219.0	-	-	-
	부평동 910-8대	223.1	-	-	-
	부평동 910-9대	223.2	-	-	-
	부평동 910-10대	224.3	-	-	-
	부평동 910-11대	223.7	-	-	-
	부평동 910-12대	223.9	-	-	-
	부평동 910-13대	183.9	-	-	-
B25	- 소계	3,528.4	-	-	-
	부평동 10-454대	142.0	-	-	-
	부평동 10-455도	208.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456대	145.0	-	-	-
	부평동 10-527대	126.0	-	-	-
	부평동 10-528대	126.0	-	-	-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0-530대	139.0	-	-	-
	부평동 10-531대	126.0	-	-	-
	부평동 10-532대	132.0	-	-	-
	부평동 10-533대	139.0	-	-	-
	부평동 10-534대	126.0	-	-	-
	부평동 10-535대	142.0	-	-	-
	부평동 10-536대	142.0	-	-	-
	부평동 10-537대	142.0	-	-	-
	부평동 10-538대	142.0	-	-	-
	부평동 10-539대	139.0	-	-	-
	부평동 10-540대	145.0	-	-	-
	부평동 10-601대	136.0	-	-	-
	부평동 909대	172.4	-	-	-
	부평동 909-1대	163.3	-	-	-
	부평동 909-2대	269.4	-	-	-
	부평동 909-3대	109.6	-	-	-
	부평동 909-4대	158.4	-	-	-
	부평동 909-5대	140.4	-	-	-
	부평동 909-6대	117.9	-	-	-
B26	- 소계	3,387.6	-	-	-
	부평동 10-460대	136.0	-	-	-
	부평동 10-461도	20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462대	136.0	-	-	-
	부평동 10-573대	126.0	-	-	-
	부평동 10-574대	136.0	-	-	-
	부평동 10-575대	139.0	-	-	-
	부평동 10-576대	139.0	-	-	-
	부평동 10-577대	139.0	-	-	-
	부평동 10-578대	145.0	-	-	-
	부평동 10-579대	139.0	-	-	-
	부평동 10-580대	136.0	-	-	-
	부평동 10-581대	139.0	-	-	-
	부평동 10-582대	138.6	-	-	-
	부평동 908대	146.7	-	-	-
	부평동 908-1대	273.4	-	-	-
	부평동 908-2대	233.4	-	-	-
	부평동 908-3대	210.9	-	-	-
	부평동 908-4대	196.4	-	-	-
	부평동 908-5대	329.5	-	-	-
	부평동 908-6대	146.7	-	-	-
B27	- 소계	5,220.2	-	-	-
	부평동 10-66대	351.0	-	-	-
	부평동 10-74대	217.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0-217대	216.0	-	-	○ 맹지 및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217대 맹지, 10-617전 과소필지
	부평동 10-617전	34.0	-	-	
	부평동 10-452대	150.0	-	-	-
	부평동 10-463대	136.0	-	-	-
	부평동 10-464도	106.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465대	145.0	-	-	-
	부평동 10-469도	169.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470대	139.0	-	-	-
	부평동 10-480대	133.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604대 과소필지
	부평동 10-604대	15.0	-	-	
	부평동 10-481대	126.0	-	-	-
	부평동 10-482대	165.0	-	-	-
	부평동 10-483대	132.0	-	-	-
	부평동 10-484대	136.0	-	-	-
	부평동 10-485대	142.0	-	-	-
	부평동 10-486대	139.0	-	-	-
	부평동 10-583대	136.0	-	-	-
	부평동 10-584대	132.0	-	-	-
	부평동 10-585대	142.0	-	-	-
	부평동 10-586대	142.0	-	-	-
	부평동 10-599도	2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600도	2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605도	27.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606대	138.0	-	-	-
	부평동 10-618대	190.0	-	-	-
	부평동 10-619대	173.0	-	-	-
	부평동 10-768대	186.0	-	-	-
	부평동 10-1034도	64.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041도	16.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074대	231.0	-	-	-
	부평동 907대	277.7	-	-	-
	부평동 907-1대	243.5	-	-	-
	부평동 907-2대	199.9	-	-	-
	부평동 907-3대	227.1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0-205종 일부편입
	부평동 10-205종	4.0	-	-	
B28	- 소계	5,344.9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0-205종	305.0	-	-	○ 부정형 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부평동 10-624대	150.0	-	-	
	부평동 10-940전	221.0	-	-	
	부평동 10-471도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472대	126.0	-	-	-
	부평동 10-473도	218.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474대	286.0	-	-	-
	부평동 10-487대	155.0	-	-	-
	부평동 10-488대	139.0	-	-	-
	부평동 10-489대	162.0	-	-	-
	부평동 10-490대	162.0	-	-	-
	부평동 10-491대	139.0	-	-	-
	부평동 10-492대	149.0	-	-	-
	부평동 10-493대	155.0	-	-	-
	부평동 10-495대	149.0	-	-	-
	부평동 10-496대	145.0	-	-	-
	부평동 10-497대	145.0	-	-	-
	부평동 10-498대	304.0	-	-	-
	부평동 10-500대	162.0	-	-	-
	부평동 10-595도	4.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596대	386.0	-	-	-
	부평동 10-597대	361.0	-	-	-
	부평동 10-623대	140.0	-	-	-
	부평동 10-939도	107.9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117도	6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206도	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208도	43.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906대	215.6	-	-	-
	부평동 906-1대	237.9	-	-	-
	부평동 906-2대	249.5	-	-	-
	부평동 906-3대	265.0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B29	- 소계	2,262.0	-	-	-
	부평동 10-457대	132.0	-	-	-
	부평동 10-541대	136.0	-	-	-
	부평동 10-542대	141.0	-	-	-
	부평동 10-543대	142.0	-	-	-
	부평동 10-544대	142.0	-	-	-
	부평동 10-545대	142.0	-	-	-
	부평동 10-546대	150.0	-	-	-
	부평동 10-547대	139.0	-	-	-
	부평동 10-548대	139.0	-	-	-
	부평동 10-549대	139.0	-	-	-
	부평동 10-550대	139.0	-	-	-
	부평동 10-551대	139.0	-	-	-
	부평동 10-552대	139.0	-	-	-
	부평동 10-553대	139.0	-	-	-
	부평동 10-554대	149.0	-	-	-
	부평동 10-555대	142.0	-	-	-
	부평동 10-1168대	13.0	-	-	○국·공유지
B30	- 소계	2,305.0	-	-	-
	부평동 10-85전	1.0	-	-	○국·공유지
	부평동 10-466대	129.0	-	-	-
	부평동 10-475대	126.0	-	-	-
	부평동 10-501대	129.0	-	-	-
	부평동 10-502대	126.0	-	-	-
	부평동 10-503대	126.0	-	-	-
	부평동 10-504대	126.0	-	-	-
	부평동 10-505대	126.0	-	-	-
	부평동 10-506대	126.0	-	-	-
	부평동 10-507대	126.0	-	-	-
	부평동 10-508대	126.0	-	-	-
	부평동 10-509대	126.0	-	-	-
	부평동 10-510대	122.0	-	-	-
	부평동 10-511대	122.0	-	-	-
	부평동 10-512대	136.0	-	-	-
	부평동 10-513대	142.0	-	-	-
	부평동 10-587대	132.0	-	-	-
	부평동 10-588대	126.0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0-589대	132.0	-	-	-

가구번호	필지		개발유형1	개발유형2
	위치	면적(㎡)		
B31	- 소계	2,820.6	-	
	부평동 917-11대	66.1	○ 공동개발지정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917-25대	4.0		
	부평동 10-459대	132.0		
	부평동 10-556대	126.0		
	부평동 917-12대	74.0	○ 공동개발지정 ○ 10-558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부평동 917-26대	8.0		
	부평동 10-557대	126.0		
	부평동 10-558대	126.0	○ 917-12, 917-26, 10-557 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부평동 917-13대	80.7	○ 공동개발지정 ○ 10-559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부평동 10-560대	126.0		
	부평동 10-559대	126.0	○ 917-13, 10-560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부평동 917-14대	62.2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917-15대	32.0		
	부평동 917-16대	27.8		
	부평동 10-561대	630.0		
	부평동 10-1210대	126.0	-	
	부평동 917-17대	34.9	○ 공동개발지정 ○ 917-18, 10-567, 10-570 필지와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10-568대	126.0		
	부평동 10-569대	126.0		
	부평동 917-18대	66.8	○ 917-17, 10-568, 10-569 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67대	126.0		
	부평동 10-570대	126.0		
	부평동 10-571대	139.0	○ 공동개발지정 ○ 917-19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72대	145.0		
	부평동 917-19대	58.1	○ 10-571, 10-572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가구번호	필지		개발유형1	개발유형2
	위치	면적(㎡)		
B32	- 소계	2,690.8	-	
	부평동 10-590대	132.0	○ 공동개발지정 ○ 10-468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917-2대	45.3		
	부평동 10-468대	126.0	○ 10-590, 917-2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91대	132.0	○ 공동개발지정 ○ 10-592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917-3대	58.6		
	부평동 10-592대	122.0	○ 10-591, 917-3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917-4대	52.6	○ 공동개발지정 ○ 10-477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14대	126.0		
	부평동 10-477대	122.0	○ 917-4, 10-514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15대	126.0	○ 공동개발지정 ○ 10-516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917-5대	50.1		
	부평동 10-516대	126.0	○ 10-515, 917-5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18대	126.0	○ 공동개발지정 ○ 10-517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917-6대	48.0		
	부평동 10-517대	126.0	○ 10-518, 917-6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19대	126.0	○ 공동개발지정 ○ 10-520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917-7대	43.8		
	부평동 10-520대	126.0	○ 10-519, 917-7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22대	126.0	○ 공동개발지정 ○ 10-521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917-8대	41.6		
	부평동 10-521대	126.0	○ 10-522, 917-8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523대	126.0	○ 공동개발지정	
	부평동 10-524대	126.0		
	부평동 917-9대	38.9		
	부평동 10-526대	122.0	○ 공동개발지정 ○ 10-525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917-10대	33.9		
	부평동 10-525대	136.0	○ 10-526, 917-10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가구번호	필지		개발유형1	개발유형2
	위치	면적(㎡)		
B33	- 소계	1,023.6	-	-
	부평동 914대	1,023.6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도로 기부채납	
C1	- 소계	887.7	-	-
	부개동 478대	214.3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개동 478-1대	229.8		
	부개동 478-2대	229.0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개동 478-3대	214.6		
C2	- 소계	4,063.8	-	-
	부평동 10-852대	277.0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10-1059대	375.0		
	부평동 915대	479.0	-	
	부평동 10-114대	169.0	○ 공동개발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10-934대	169.0		
	부평동 10-1060대	405.4		
	부평동 915-1대	456.7	-	
	부평동 915-2대	505.7	-	
	부평동 10-144대	198.0	○ 공동개발권장 ○ 10-697, 10-1161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 공동개발 (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평동 10-830답	28.0		
	부평동 10-697대	327.0	○ 공동개발지정 ○ 10-144, 10-830필지와 공동개발 권장	
	부평동 10-1161	36.0		
	부평동 915-3대	638.0	-	

가구번호	필지		개발유형1	개발유형2
	위치	면적(㎡)		
C3	- 소계	1,910.8	-	-
	부개동 480대	191.7	-	○ 공동개발(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개동 480-1대	194.8	-	
	부개동 480-8대	194.1	-	
	부개동 480-9대	188.6	-	
	부개동 480-2대	194.1	-	-
	부개동 480-3대	192.6	-	-
	부개동 480-4대	173.6	-	-
	부개동 480-5대	195.3	-	-
	부개동 480-6대	193.0	-	-
	부개동 480-7대	193.0	-	-
C4	- 소계	3,760.3	-	-
	부평동 10-16대	10.0	-	-
	부개동 479대	196.9	-	○ 공동개발(인고 제2017-95호 획지단위 개발 및 기부채납 준수시 적용)
	부개동 479-1대	199.4	-	
	부개동 479-12대	200.1	-	
	부개동 479-13대	197.4	-	
	부개동 479-2대	199.3	-	-
	부개동 479-3대	199.4	-	-
	부개동 479-4대	198.8	-	-
	부개동 479-5대	199.6	-	-
	부개동 479-6대	196.1	-	-
	부개동 479-7대	249.6	-	-
	부개동 479-8대	242.3	-	-
	부개동 479-9대	227.8	-	-
	부개동 479-10대	201.5	-	-
	부개동 479-11대	200.3	-	-
	부개동 12-271대	117.0	-	-
	부개동 12-272대	168.0	-	-
	부개동 12-273대	162.0	-	-
	부개동 12-274대	125.0	-	-
	부개동 12-275대	132.0	-	-
	부개동 12-276대	136.0	-	-
	부개동 12-277잡	1.8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C5	- 소계	2,276.0	-	-	-
	부개동 12-277잡	1.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278대	130.0	-	-	-
	부개동 12-279대	130.0	-	-	-
	부개동 12-280대	129.0	-	-	-
	부개동 12-281대	140.0	-	-	-
	부개동 12-476도	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481대	224.8	-	-	-
	부개동 481-1대	198.7	-	-	-
	부개동 481-2대	192.2	-	-	-
	부개동 481-3대	189.5	-	-	-
	부개동 481-4대	173.8	-	-	-
	부개동 481-5대	172.5	-	-	-
	부개동 481-6대	159.1	-	-	-
	부개동 481-7대	177.1	-	-	-
	부개동 481-8대	213.8	-	-	-
	부개동 481-9도	42.5	-	-	○ 현황도로(국·공유지)
C6	- 소계	1,294.0	-	-	-
	부평동 10-658대	127.0	-	-	-
	부평동 10-659대	127.0	-	-	-
	부평동 10-660대	140.0	-	-	-
	부평동 10-679대	150.0	-	-	-
	부평동 10-761대	373.0	-	-	-
	부평동 10-764대	342.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1202대 과소필지
	부평동 10-1202대	35.0	-	-	
C7	- 소계	1,901.3	-	-	-
	부평동 10-661도	55.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663대	140.0	-	-	-
	부평동 10-664대	133.0	-	-	-
	부평동 10-665대	133.0	-	-	-
	부평동 10-662대	10.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662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83대	129.0	-	-	
	부평동 10-681대	87.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681대, 12-285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85대	51.0	-	-	
	부평동 10-682대	64.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682대, 12-287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87대	72.0	-	-	
	부개동 12-284대	119.0	-	-	-
	부개동 12-286대	117.0	-	-	-
	부개동 12-288대	1.0	-	-	○ 국·공유지
	부개동 482대	211.2	-	-	-
	부개동 482-1대	208.8	-	-	-
	부개동 482-2대	195.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482-3대	175.3	-	-	-
C8	- 소계	2,653.0	-	-	-
	부평동 10-627도	24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628대	119.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698대 과소필지
	부평동 10-698대	10.0	-	-	
	부평동 10-629대	154.0	-	-	-
	부평동 10-630대	183.0	-	-	-
	부평동 10-631대	305.0	-	-	-
	부평동 10-633대	111.0	-	-	-
	부평동 10-634대	117.0	-	-	-
	부평동 10-635대	117.0	-	-	-
	부평동 10-636대	117.0	-	-	-
	부평동 10-637대	104.0	-	-	-
	부평동 10-638대	119.0	-	-	-
	부평동 10-639대	119.0	-	-	-
	부평동 10-640대	117.0	-	-	-
	부평동 10-641대	111.0	-	-	-
	부평동 10-642대	125.0	-	-	-
	부평동 10-667대	150.0	-	-	-
	부평동 10-668대	135.0	-	-	-
	부평동 10-850도	11.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851전	170.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933도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143도	6.0	-	-	○ 현황도로(사유지, 10-641대 동일소유)
	부평동 10-1150도	6.0	-	-	○ 현황도로(사유지, 10-639대 동일소유)
	부평동 10-1151도	6.0	-	-	○ 현황도로(사유지, 10-640대 동일소유)
C9	- 소계	1,857.8	-	-	-
	부평동 10-99대	88.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0-99대 과소필지
	부평동 10-677대	123.0	-	-	
	부평동 10-184대	137.0	-	-	-
	부평동 10-671대	164.0	-	-	-
	부평동 10-672대	146.0	-	-	-
	부평동 10-673대	139.0	-	-	-
	부평동 10-674대	164.0	-	-	-
	부평동 10-675대	141.0	-	-	-
	부평동 10-676대	182.0	-	-	-
	부개동 483대	140.3	-	-	-
	부개동 483-1대	166.3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483-2대	137.4	-	-	-
	부개동 483-3대	129.8	-	-	-
C10	- 소계	2,322.9	-	-	-
	부개동 484대	221.0	-	-	-
	부개동 484-1대	199.8	-	-	-
	부개동 484-2대	200.2	-	-	-
	부개동 484-3대	199.8	-	-	-
	부개동 484-4대	169.1	-	-	-
	부개동 484-5대	162.3	-	-	-
	부개동 484-6대	159.8	-	-	-
	부개동 484-7대	198.3	-	-	-
	부개동 484-8대	200.3	-	-	-
	부개동 484-9대	201.0	-	-	-
	부개동 484-10대	199.8	-	-	-
	부개동 484-11대	211.5	-	-	-
C11	- 소계	2,466.2	-	-	-
	부개동 12-150대	493.0	-	-	-
	부개동 12-213대	386.0	-	-	-
	부개동 12-215대	406.0	-	-	-
	부개동 12-472대	124.0	-	-	-
	부개동 485대	198.7	-	-	-
	부개동 485-1대	297.6	-	-	-
	부개동 486대	174.1	-	-	-
	부개동 486-1대	145.4	-	-	-
	부개동 486-2대	241.4	-	-	-
C12	- 소계	5,062.0	-	-	-
	부개동 12-17대	680.0	-	-	○ 국·공유지(주민센터)
	부개동 12-19도	384.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44대	20.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145대	69.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145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52대	189.0	-	-	
	부개동 12-202대	130.0	-	-	-
	부개동 12-203대	385.0	-	-	-
	부개동 12-205대	308.0	-	-	-
	부개동 12-206대	272.0	-	-	-
	부개동 12-208대	388.0	-	-	-
	부개동 12-211대	272.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 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212도 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266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12도	72.0	-	-	
	부개동 12-266대	66.0	-	-	
	부개동 12-229대	222.0	-	-	-
	부개동 12-231대	464.0	-	-	-
	부개동 12-232대	314.0	-	-	-
	부개동 12-233도	67.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234대	179.0	-	-	-
	부개동 12-235대	113.0	-	-	-
	부개동 12-236도	13.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237대	14.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242도	10.0	-	-	○ 국·공유지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12-350대	95.0	-	-	-	
	부개동 12-351대	93.0	-	-	-	
	부개동 12-355대	242.0	-	-	-	
	부개동 12-443대	1.0	-	-	○ 국·공유지	
C13	- 소계	3,940.0	-	-	-	
	부개동 12-19도	20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21전	1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21전 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432전 과소필지
	부개동 12-201대	517.0	-	-		
	부개동 12-432전	3.0	-	-	-	
	부개동 12-35대	10.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35대 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103전, 12-226대 과소필지
	부개동 12-185답	278.0	-	-		
	부개동 12-103전	53.0	-	-	-	
	부개동 12-226대	40.0	-	-	-	
	부개동 12-36대	255.0	-	-	-	
	부개동 12-89대	174.0	-	-	-	
	부개동 12-90대	184.0	-	-	-	
	부개동 12-104전	18.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104전 과소필지	
	부개동 12-126전	435.0	-	-		
	부개동 12-127대	280.0	-	-	-	
	부개동 12-128도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98대	290.0	-	-	-	
	부개동 12-200대	393.0	-	-	-	
	부개동 12-225대	188.0	-	-	-	
	부개동 12-227대	446.0	-	-	-	
	부개동 12-228도	89.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441도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442대	3.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446전	1.0	-	-	-	
	부개동 12-448대	47.0	-	-	-	
	부개동 12-464대	17.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479도	7.0	-	-		
C14	- 소계	790.0	-	-	-	
	부개동 12-106도	38.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07대	79.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107대, 12-265답 과소필지	
	부개동 12-177대	148.0	-	-		
	부개동 12-265답	19.0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12-175답	159.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398전 과소필지
	부개동 12-398전	3.0	-	-	
	부개동 12-176대	332.0	-	-	-
	부개동 12-440도	12.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C15	- 소계	5,341.0	-	-	-
	부개동 12-25대	99.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108대	261.0	-	-	-
	부개동 12-109대	333.0	-	-	-
	부개동 12-110도	6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111대	248.0	-	-	-
	부개동 12-112전	348.0	-	-	-
	부개동 12-113도	76.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15전	155.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16대	119.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117도	60.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18대	166.0	-	-	-
	부개동 12-132도	19.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34전	128.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426대 과소필지
	부개동 12-426대	35.0	-	-	
	부개동 12-135도	10.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36대	341.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480도 과소필지
	부개동 12-480도	25.0			
	부개동 12-137전	13.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178대	232.0	-	-	-
	부개동 12-179대	172.0	-	-	-
	부개동 12-180대	357.0	-	-	-
	부개동 12-181대	580.0	-	-	-
	부개동 12-182대	50.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83대	455.0	-	-	-
	부개동 12-236도	27.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238대	224.0	-	-	-
	부개동 12-270대	129.0	-	-	-
	부개동 12-293대	172.0	-	-	-
	부개동 12-307대	271.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12-368도	77.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60대	19.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78답	9.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81도	48.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86전	2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87전	1.0	-	-	○ 현황도로(사유지)
C16	- 소계	5,697.0	-	-	-
	부평동 10-41도	157.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43대	116.0	-	-	○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2-255대 과소필지
	부개동 12-255대	36.0	-	-	
	부평동 10-187대	354.0	-	-	-
	부평동 10-225대	211.0	-	-	-
	부평동 10-226대	42.0	-	-	○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226대, 10-1103대 과소필지
	부평동 10-227대	131.0	-	-	
	부평동 10-1103대	1.0	-	-	
	부평동 10-228대	290.0	-	-	-
	부평동 10-314대	165.0	-	-	○ 부정형 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부개동 12-222대	208.0	-	-	
	부평동 10-315대	462.0	-	-	-
	부평동 10-860도	54.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861대	132.0	-	-	-
	부평동 10-862대	225.0	-	-	-
	부평동 10-948대	81.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948대 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346대 과소필지
	부개동 12-123대	135.0	-	-	
	부개동 12-346전	10.0	-	-	-
	부평동 10-950대	15.0	-	-	○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950대 과소필지
	부개동 12-348대	223.0	-	-	
	부평동 10-1138도	3.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166도	7.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195도	4.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19도	5.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26도	165.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개동 12-119전	46.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119전, 12-470전 과소필지
	부개동 12-264대	331.0	-	-	
	부개동 12-470전	7.0	-	-	
	부개동 12-120대	258.0	-	-	-
	부개동 12-122대	182.0	-	-	-
	부개동 12-188대	53.0	-	-	○ 국·공유지
	부개동 12-189대	307.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개동 12-190대	410.0	-	-	-
	부개동 12-191대	185.0	-	-	-
	부개동 12-192대	68.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2-192대, 12-415대 과소필지
	부개동 12-415대	22.0	-	-	
	부개동 12-193대	207.0	-	-	-
	부개동 12-240대	169.0	-	-	-
	부개동 12-473대	211.0	-	-	-
	부개동 12-483도	2.0	-	-	○현황도로(사유지)
	부개동 12-484도	7.0	-	-	○현황도로(사유지)
C17	- 소계	2,035.0	-	-	-
	부평동 10-41도	69.0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00전	117.0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01대	179.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1015대 과소필지
	부평동 10-1015대	13.0	-	-	
	부평동 10-128도	43.0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85대	352.0	-	-	-
	부평동 10-320대	119.0	-	-	-
	부평동 10-322대	217.0	-	-	-
	부평동 10-643대	94.0	-	-	○맹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805대 맹지
	부평동 10-805대	133.0	-	-	
	부평동 10-653대	119.0	-	-	-
	부평동 10-654대	147.0	-	-	-
	부평동 10-680대	119.0	-	-	-
	부평동 10-846도	60.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954대	215.0	-	-	-
	부평동 10-1017대	8.0	-	-	○국·공유지
	부평동 10-1051대	6.0	-	-	○국·공유지
	부평동 10-1052도	2.0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144도	23.0	-	-	○현황도로(사유지)
C18	- 소계	6,707.0	-	-	-
	부평동 10-135대	231.0	-	-	○국·공유지
	부평동 10-143답	3.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218전	231.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779답 과소필지
	부평동 10-779답	14.0	-	-	
	부평동 10-699대	142.0	-	-	-
	부평동 10-707대	135.0	-	-	-
	부평동 10-708대	133.0	-	-	-
	부평동 10-709대	133.0	-	-	-
	부평동 10-710대	133.0	-	-	-
	부평동 10-711대	143.0	-	-	-
	부평동 10-773대	139.0	-	-	-
	부평동 10-775답	12.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776대	150.0	-	-	-
	부평동 10-777답	23.0	-	-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10-777답 과소필지
	부평동 10-786대	142.0	-	-	
	부평동 10-778대	4.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780대	607.0	-	-	-
	부평동 10-781대	209.0	-	-	-
	부평동 10-782대	209.0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0-783대	235.0	-	-	-
	부평동 10-784대	216.0	-	-	-
	부평동 10-785대	197.0	-	-	-
	부평동 10-788대	160.0	-	-	-
	부평동 10-789도	39.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790대	143.0	-	-	-
	부평동 10-791대	154.0	-	-	-
	부평동 10-865주	1,213.0	-	-	-
	부평동 10-866대	362.0	-	-	-
	부평동 10-868대	995.0	-	-	-
	부평동 10-873대	200.0	-	-	-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D1	D1	- 소계	2,162.2	23,339.0	-	2,162.2	-	-	
		청천동 302-2대	2,162.2	2,162.2	①	2,162.2	-	-	
특①		- 소계	7,193.7	-	-	7,193.7	-	-	
		청천동 302-10도	177.0	177.0	획지1	2,636.1	-	-	
		청천동 302-12대	483.5	483.5			-	-	
		청천동 302-29대	983.8	983.8			-	-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45대	19.7	19.7			-	-	
		청천동 302-51대	827.1	827.1			-	-	
		청천동 302-77도	55.7	55.7			-	-	
		청천동 302-82대	47.6	47.6			-	-	
		청천동 302-83대	41.7	41.7			-	-	
		청천동 302-10도	306.5	306.5	획지2	4,557.6	-	-	
		청천동 302-13대	198.0	198.0			-	-	
		청천동 302-31대	1,021.1	1,021.1			-	-	
		청천동 302-32대	3,032.0	3,032.0			-	-	

※ 2022. 4. 25.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필지별 지침 적용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특②	D1	- 소계	8,223.1	-	-	8,223.1	-	-	
		청천동 166도	222.3	222.3	획지1	1,895.8	-	-	
		청천동 302대	571.9	571.9			-	-	
		청천동 302-34대	1,101.6	1,101.6			-	-	
		청천동 166도	698.4	698.4	획지2	6,327.3	-	-	
		청천동 302-3대	357.0	357.0			-	-	
		청천동 302-4대	256.8	256.8			-	-	
		청천동 302-5대	256.4	256.4			-	-	302-37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6대	207.5	207.5			-	-	
		청천동 302-7대	108.8	108.8			-	-	302-68번지와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8대	130.7	130.7			-	-	
		청천동 302-9대	1,370.3	1,370.3			-	-	
		청천동 302-10도	157.9	157.9			-	-	
		청천동 302-37대	79.7	79.7			-	-	302-5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38대	244.5	244.5			-	-	
		청천동 302-40대	338.5	338.5			-	-	
		청천동 302-41대	175.6	175.6			-	-	
		청천동 302-42대	234.4	234.4			-	-	
		청천동 302-43대	79.7	79.7			-	-	302-76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44도	84.5	84.5			-	-	
		청천동 302-47대	130.8	130.8			-	-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48대	159.9	159.9			-	-	
		청천동 302-49대	279.6	279.6			-	-	
		청천동 302-50도	98.7	98.7			-	-	
		청천동 302-66대	257.3	257.3			-	-	
		청천동 302-67대	236.2	236.2			-	-	302-74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68대	98.8	98.8			-	-	302-7번지와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69대	207.7	207.7			-	-	
		청천동 302-74도	25.7	25.7			-	-	302-67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75도	25.3	25.3			-	-	
		청천동 302-76도	26.6	26.6			-	-	302-43번지와 공동개발(권장)

※ 2022. 4. 25.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필지별 지침 적용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특③	D1	- 소계	5,760.0	-	-	5,760.0	-	-	
		청천동 166도	518.8	518.8			-	-	
		청천동 302-10도	296.3	296.3			-	-	
		청천동 302-14대	110.2	110.2			-	-	· 302-15번지와 공동개발(권장) · 302-80번지와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15대	215.0	215.0			-	-	· 302-14번지와 공동개발(권장)
		청천동 302-16대	161.0	161.0			-	-	
		청천동 302-17대	171.5	171.5			-	-	
		청천동 302-18대	118.4	118.4			-	-	· 공동개발(지정)
		청천동 302-19대	169.4	169.4			-	-	
		청천동 302-20대	267.2	267.2			-	-	
		청천동 302-22대	182.0	182.0			-	-	
		청천동 302-23대	216.1	216.1			-	-	
		청천동 302-24대	681.0	681.0	-	5,760.0	-	-	
		청천동 302-36대	289.5	289.5			-	-	
		청천동 302-55대	432.7	432.7			-	-	
		청천동 302-56대	243.0	243.0			-	-	
		청천동 302-57대	249.4	249.4			-	-	
		청천동 302-60도	112.2	112.2			-	-	
		청천동 302-61대	190.0	190.0			-	-	
		청천동 302-62대	224.7	224.7			-	-	
		청천동 302-63대	213.7	213.7			-	-	
		청천동 302-64대	190.0	190.0			-	-	
		청천동 302-65대	340.5	340.5			-	-	
		청천동 302-80대	167.4	167.4			-	-	· 302-14번지와 공동개발(지정)

※ 2022. 4. 25.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개별필지별 지침 적용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E1	- 소계	5,211.0	-	-	-
	부평동 10-195대	152.0	-	-	-
	부평동 10-222대	232.0	-	-	-
	부평동 10-245대	312.0	-	-	-
	부평동 10-246대	265.0	-	-	-
	부평동 10-247대	331.0	-	-	-
	부평동 10-248대	169.0	-	-	-
	부평동 10-249대	331.0	-	-	-
	부평동 10-250대	167.0	-	-	○맹지 및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737전 맹지, 과소필지, 국·공유지
	부평동 10-737전	6.0	-	-	
	부평동 10-251대	222.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10-958잡 과소필지
	부평동 10-958잡	3.0	-		
	부평동 10-602대	172.0	-	-	-
	부평동 10-610대	171.0	-	-	-
	부평동 10-718대	160.0	-	-	-
	부평동 10-719대	175.0	-	-	-
	부평동 10-721대	197.0	-	-	-
	부평동 10-722대	284.0	-	-	-
	부평동 10-723대	172.0	-	-	-
	부평동 10-952대	70.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10-952대 과소필지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1160잡 과소필지, 국·공유지
	부평동 10-957대	118.0	-	-	
	부평동 10-1160잡	15.0	-	-	-
	부평동 18-2대	329.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19-5대, 19-26대 과소필지
	부평동 19-5대	17.0	-	-	
	부평동 19-26대	46.0	-	-	
	부평동 18-5답	3.0	-	-	○국·공유지
	부평동 18-6대	218.0	-	-	-
	부평동 18-7대	405.0	-	-	-
	부평동 18-22대	269.0	-	-	-
	부평동 19-8대	197.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9-16도	3.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E2	- 소계	5,992.0	-	-	-
	부평동 10-21대	219.0	-	-	-
	부평동 10-32대	119.0	-	-	○ 맹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0-32대 맹지
	부평동 10-418대	119.0	-	-	
	부평동 10-252대	182.0	-	-	-
	부평동 10-253대	249.0	-	-	-
	부평동 10-254대	191.0	-	-	-
	부평동 10-255대	165.0	-	-	-
	부평동 10-257대	165.0	-	-	-
	부평동 10-258대	312.0	-	-	-
	부평동 10-271대	308.0	-	-	-
	부평동 10-272대	324.0	-	-	-
	부평동 10-273대	169.0	-	-	-
	부평동 10-274대	162.0	-	-	-
	부평동 10-400대	169.0	-	-	-
	부평동 10-401대	169.0	-	-	-
	부평동 10-414대	159.0	-	-	-
	부평동 10-419대	122.0	-	-	○ 맹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0-421대 맹지
	부평동 10-421대	122.0	-	-	
	부평동 10-420대	122.0	-	-	○ 맹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422대 맹지
	부평동 10-422대	122.0	-	-	
	부평동 10-425대	257.0	-	-	-
	부평동 10-438대	165.0	-	-	-
	부평동 10-621대	334.0	-	-	-
	부평동 10-961대	149.0	-	-	-
	부평동 10-1021대	219.0	-	-	-
	부평동 10-1090대	33.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1090대 과소필지
	부평동 18-36대	272.0	-	-	
	부평동 18-9도	35.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8-15도	2.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8-16대	205.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권장) ○ 18-17수 과소필지
	부평동 18-17수	1.0	-	-	
	부평동 18-26도	1.0	-	-	○ 현황도로(사유지)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8-32대	301.0	-	-	-
	부평동 18-38대	349.0	-	-	-
E3	- 소계	6,635.0	-	-	-
	부평동 10-22대	259.0	-	-	-
	부평동 10-230대	212.0	-	-	-
	부평동 10-233대	330.0	-	-	-
	부평동 10-234대	290.0	-	-	-
	부평동 10-235대	315.0	-	-	-
	부평동 10-236대	197.0	-	-	-
	부평동 10-284대	162.0	-	-	-
	부평동 10-285대	159.0	-	-	-
	부평동 10-286대	312.0	-	-	-
	부평동 10-302대	157.0	-	-	-
	부평동 10-303대	148.0	-	-	-
	부평동 10-304대	317.0	-	-	-
	부평동 10-305대	186.0	-	-	-
	부평동 10-307대	318.0	-	-	-
	부평동 10-383대	358.0	-	-	-
	부평동 10-389대	170.0	-	-	-
	부평동 10-393대	165.0	-	-	-
	부평동 10-411대	283.0	-	-	-
	부평동 10-423대	134.0	-	-	-
	부평동 10-424대	159.0	-	-	-
	부평동 10-433대	178.0	-	-	-
	부평동 10-436대	159.0	-	-	-
	부평동 10-931대	172.0	-	-	-
	부평동 10-942대	317.0	-	-	-
	부평동 10-1036대	195.0	-	-	-
	부평동 16-12대	194.0	-	-	-
	부평동 16-13대	262.0	-	-	-

가구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6-15대	209.0	-	-	-
	부평동 16-16대	182.0	-	-	-
	부평동 16-17대	136.0	-	-	-
E4	- 소계	5,583.0	-	-	-
	부평동 10-25대	249.0	-	-	-
	부평동 10-31대	42.0	-	-	○과소필지 및 맹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31대, 10-347대 과소필지 및 맹지 ○10-31대 국·공유지
	부평동 10-346대	107.0	-	-	
	부평동 10-347대	7.0	-	-	
	부평동 10-327대	305.0	-	-	-
	부평동 10-329대	384.0	-	-	-
	부평동 10-341대	266.0	-	-	-
	부평동 10-343대	240.0	-	-	-
	부평동 10-344대	124.0	-	-	-
	부평동 10-345대	301.0	-	-	-
	부평동 10-348대	165.0	-	-	-
	부평동 10-349대	171.0	-	-	-
	부평동 10-1045대	171.0	-	-	-
	부평동 10-351대	247.0	-	-	-
	부평동 10-370대	275.0	-	-	-
	부평동 10-372대	269.0	-	-	-
	부평동 10-373대	303.0	-	-	-
	부평동 10-377대	279.0	-	-	-
	부평동 10-381대	248.0	-	-	-
	부평동 10-687대	110.0	-	-	-
	부평동 10-689대	167.0	-	-	-
	부평동 10-692대	180.0	-	-	-
	부평동 10-795대	153.0	-	-	-
	부평동 13-19대	317.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3-20대	324.0	-	-	-
	부평동 13-42대	165.0	-	-	-
	부평동 16-18도	14.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E5	- 소계	6,165.0	-	-	-
	부평동 10-332대	191.0	-	-	-
	부평동 10-352대	152.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지정) ○ 10-353대 과소필지
	부평동 10-353대	40.0	-	-	
	부평동 13-31대	106.0	-	-	
	부평동 10-354대	138.0	-	-	-
	부평동 10-435도	13.0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690대	149.0	-	-	-
	부평동 10-815도	22.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3-23대	168.0	-	-	○ 국·공유지
	부평동 13-24대	201.0	-	-	-
	부평동 13-25대	292.0	-	-	-
	부평동 13-26대	155.0	-	-	○ 부정형 필지 해소 및 기건축물을 고려 공동개발(지정)
	부평동 13-27대	152.0	-	-	
	부평동 13-28대	145.0	-	-	-
	부평동 13-29대	155.0	-	-	-
	부평동 13-33대	185.0	-	-	-
	부평동 13-40대	399.0	-	-	-
	부평동 13-43대	195.0	-	-	-
	부평동 13-44대	231.0	-	-	-
	부평동 13-46대	149.0	-	-	-
	부평동 13-48대	192.0	-	-	○ 국·공유지
	부평동 13-49대	284.0	-	-	-
	부평동 13-50대	144.0	-	-	-
	부평동 13-51대	219.0	-	-	-
	부평동 13-52대	152.0	-	-	-
	부평동 13-89대	273.0	-	-	-
	부평동 13-90대	281.0	-	-	-
	부평동 13-91대	297.0	-	-	-
	부평동 13-92대	152.0	-	-	-
	부평동 13-94대	162.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3-95대	276.0	-	-	-
	부평동 13-96대	166.0	-	-	-
	부평동 13-99대	156.0	-	-	-
	부평동 13-100대	155.0	-	-	-
	부평동 13-101도	18.0	-	-	○ 현황도로(사유지)
E6	- 소계	3,732.0	-	-	-
	부평동 10-815도	2.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142대	67.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지정) ○ 10-1142대 과소필지
	부평동 13-37대	142.0	-	-	
	부평동 13-93대	374.0	-	-	
	부평동 10-1163도	17.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3-12대	178.0	-	-	-
	부평동 13-38대	208.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3-97대 과소필지
	부평동 13-97대	18.0	-	-	
	부평동 13-73대	185.0	-	-	-
	부평동 13-74대	158.0	-	-	-
	부평동 13-75대	162.0	-	-	-
	부평동 13-76대	182.0	-	-	-
	부평동 13-77대	182.0	-	-	-
	부평동 13-78도	14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3-79대	180.0	-	-	-
	부평동 13-80대	182.0	-	-	-
	부평동 13-81대	162.0	-	-	-
	부평동 13-82대	161.0	-	-	-
	부평동 13-83대	182.0	-	-	-
	부평동 13-84대	182.0	-	-	-
	부평동 13-85대	14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3-86대	180.0	-	-	-
	부평동 13-87대	182.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3-88대	151.0	-	-	-
	부평동 13-109도	3.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3-114도	6.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3-122도	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3-123도	2.0	-	-	○ 현황도로(사유지)
E7	- 소계	3,285.0	-	-	-
	부평동 10-223대	202.0	-	-	-
	부평동 10-239대	398.0	-	-	-
	부평동 10-241대	164.0	-	-	-
	부평동 10-242대	152.0	-	-	-
	부평동 10-243대	331.0	-	-	-
	부평동 10-244대	188.0	-	-	-
	부평동 10-311대	193.0	-	-	-
	부평동 10-431대	142.0	-	-	-
	부평동 10-691대	177.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727전 과소필지
	부평동 10-727전	11.0	-	-	
	부평동 10-725대	214.0	-	-	-
	부평동 10-729대	165.0	-	-	-
	부평동 10-730대	167.0	-	-	-
	부평동 10-731대	178.0	-	-	-
	부평동 10-732대	94.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743대 과소필지
	부평동 10-743대	3.0	-	-	
	부평동 10-733대	140.0	-	-	-
	부평동 10-746대	198.0	-	-	-
	부평동 10-812전	5.0	-	-	○ 국·공유지
	부평동 10-1118대	163.0	-	-	-
E8	- 소계	3,803.0	-	-	-
	부평동 10-259대	156.0	-	-	-
	부평동 10-260대	165.0	-	-	-
	부평동 10-261대	165.0	-	-	-
	부평동 10-262대	301.0	-	-	-
	부평동 10-264대	161.0	-	-	-
	부평동 10-265대	182.0	-	-	-
	부평동 10-266대	367.0	-	-	-
	부평동 10-267대	165.0	-	-	-
	부평동 10-268대	393.0	-	-	-
	부평동 10-269대	163.0	-	-	-
	부평동 10-270대	150.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0-395대	155.0	-	-	-
	부평동 10-397대	301.0	-	-	-
	부평동 10-430대	153.0	-	-	-
	부평동 10-593대	165.0	-	-	-
	부평동 10-603대	162.0	-	-	-
	부평동 10-614대	166.0	-	-	-
	부평동 10-622대	169.0	-	-	-
	부평동 10-962대	164.0	-	-	-
E9	- 소계	4,333.0	-	-	-
	부평동 10-287대	308.0	-	-	-
	부평동 10-288대	165.0	-	-	-
	부평동 10-289대	165.0	-	-	-
	부평동 10-290대	367.0	-	-	-
	부평동 10-291대	192.0	-	-	-
	부평동 10-292대	294.0	-	-	-
	부평동 10-293대	264.0	-	-	-
	부평동 10-294대	262.0	-	-	-
	부평동 10-295대	135.0	-	-	-
	부평동 10-296대	544.0	-	-	-
	부평동 10-298대	158.0	-	-	-
	부평동 10-301대	205.0	-	-	-
	부평동 10-402대	126.0	-	-	-
	부평동 10-403대	278.0	-	-	-
	부평동 10-405대	161.0	-	-	○ 부정형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지정)
	부평동 10-406대	125.0	-	-	
	부평동 10-407대	117.0	-	-	○ 부정형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지정)
	부평동 10-408대	154.0	-	-	
	부평동 10-410대	192.0	-	-	-
	부평동 10-413대	121.0	-	-	-
E10	- 소계	3,355.0	-	-	-
	부평동 10-30대	201.0	-	-	-
	부평동 10-336대	179.0	-	-	○ 국·공유지(경로당)
	부평동 10-337대	331.0	-	-	-
	부평동 10-338대	174.0	-	-	-
	부평동 10-339대	367.0	-	-	-
	부평동 10-340대	307.0	-	-	-
	부평동 10-371대	192.0	-	-	-
	부평동 10-379대	164.0	-	-	-
	부평동 10-380대	209.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0-388대	237.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0-434대 과소필지
	부평동 10-434대	20.0	-	-	
	부평동 10-415대	204.0	-	-	
	부평동 10-416대	140.0	-	-	-
	부평동 10-417대	195.0	-	-	-
	부평동 10-427대	104.0	-	-	○맹지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지정) ○10-428대 맹지
	부평동 10-428대	109.0	-	-	
	부평동 10-716대	181.0	-	-	-
	부평동 10-1158도	41.0	-	-	○현황도로(국·공유지)
E11	- 소계	4,046.0	-	-	-
	부평동 10-221대	104.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10-946전, 10-947전 과소필지
	부평동 10-946전	28.0	-	-	
	부평동 10-947전	13.0	-	-	
	부평동 10-355대	147.0	-	-	-
	부평동 10-356대	172.0	-	-	-
	부평동 10-357대	189.0	-	-	-
	부평동 10-358대	231.0	-	-	-
	부평동 10-359대	264.0	-	-	-
	부평동 10-360대	264.0	-	-	-
	부평동 10-361대	120.0	-	-	-
	부평동 10-362대	170.0	-	-	-
	부평동 10-363대	165.0	-	-	-
	부평동 10-364대	165.0	-	-	-
	부평동 10-365대	156.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3-36대 과소필지
	부평동 13-36대	7.0	-	-	
	부평동 10-374대	269.0	-	-	-
	부평동 10-375대	146.0	-	-	-
	부평동 10-376대	234.0	-	-	-
	부평동 10-382대	277.0	-	-	-
	부평동 10-394대	122.0	-	-	-
	부평동 10-607대	166.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0-608대	105.0	-	-	-
	부평동 10-609대	104.0	-	-	-
	부평동 10-613대	161.0	-	-	-
	부평동 10-1048도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1119대	265.0	-	-	-
	부평동 13-124대	1.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E12	- 소계	4,665.0	-	-	-
	부평동 10-75대	74.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75대, 10-844대 과소필지
	부평동 10-820대	133.0	-	-	
	부평동 10-844대	5.0	-	-	
	부평동 10-439대	37.0	-	-	○ 과소필지 및 맹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439대, 10-598대 과소필지 ○ 10-994대, 12-187대 맹지
	부평동 10-598대	31.0	-	-	
	부평동 10-994대	94.0	-	-	
	부평동 12-187대	133.0	-	-	
	부평동 10-478대	77.0	-	-	○ 과소필지 및 부정형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 공동개발(지정) ○ 10-478대 과소필지 ○ 10-152대 부정형 필지
	부평동 10-968대	183.0	-	-	
	부평동 10-152대	199.0	-	-	
	부평동 10-734대	176.0	-	-	-
	부평동 10-964대	198.0	-	-	-
	부평동 10-965대	200.0	-	-	-
	부평동 10-966대	241.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동일소유자 공동개발(지정) ○ 10-1043전 과소필지
	부평동 10-1043전	56.0	-	-	
	부평동 10-993대	87.0	-	-	○ 맹지 및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0-993대 맹지, 과소필지, 12-204대 과소필지
	부평동 12-204대	78.0	-	-	
	부평동 10-1105대	151.0	-	-	-
	부평동 10-1044전	48.0	-	-	○ 국·공유지
	부평동 12-1대	253.0	-	-	-
	부평동 12-184대	203.0	-	-	-
	부평동 12-185대	228.0	-	-	-
	부평동 12-189대	367.0	-	-	-
	부평동 12-190대	208.0	-	-	-
	부평동 12-197대	63.0	-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 12-197대 과소필지
	부평동 12-198대	118.0	-	-	
	부평동 12-199대	118.0	-	-	-

가구번호	필지 위치	필지 면적(㎡)	획지 위치	획지 면적(㎡)	비 고
	부평동 12-200대	70.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2-200대 과소필지
	부평동 12-201대	98.0	-	-	
	부평동 12-202대	107.0	-	-	-
	부평동 12-203대	97.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공동개발(권장) ○12-268대 과소필지, 국·공유지
	부평동 12-268대	82.0	-	-	
	부평동 12-205대	98.0	-	-	○국·공유지
	부평동 12-259도	130.0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2-290대	20.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310대	204.0	-	-	-
E13	- 소계	6,459.0	-	-	-
	부평동 10-875대	282.0	-	-	○과소필지 해소를 위한 기건축물을 고려하여 공동개발(권장) ○10-1110도 과소필지
	부평동 10-1110도	2.0	-	-	
	부평동 10-972도	29.0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982도	10.0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0-1109도	1.0	-	-	○국·공유지
	부평동 12-4대	157.0	-	-	-
	부평동 12-5대	179.0	-	-	-
	부평동 12-6대	140.0	-	-	-
	부평동 12-7대	117.0	-	-	-
	부평동 12-72대	120.0	-	-	-
	부평동 12-73대	121.0	-	-	-
	부평동 12-74대	132.0	-	-	-
	부평동 12-75대	128.0	-	-	-
	부평동 12-77대	176.0	-	-	-
	부평동 12-101대	205.0	-	-	-
	부평동 12-102대	156.0	-	-	-
	부평동 12-103대	205.0	-	-	-
	부평동 12-104대	198.0	-	-	-
	부평동 12-105대	208.0	-	-	-
	부평동 12-106대	212.0	-	-	-
	부평동 12-107대	182.0	-	-	-
	부평동 12-108대	182.0	-	-	-
	부평동 12-109대	135.0	-	-	-
	부평동 12-110대	133.0	-	-	-
	부평동 12-111대	172.0	-	-	-
	부평동 12-127대	120.0	-	-	-
	부평동 12-151대	130.0	-	-	-
	부평동 12-152대	122.0	-	-	-
	부평동 12-153대	121.0	-	-	-
	부평동 12-155대	128.0	-	-	-
	부평동 12-156대	127.0	-	-	-
	부평동 12-157대	145.0	-	-	-
	부평동 12-161대	127.0	-	-	-
	부평동 12-162대	130.0	-	-	-
	부평동 12-163대	133.0	-	-	-

가구 번호	필지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부평동 12-164대	137.0	-	-	-
	부평동 12-165대	137.0	-	-	-
	부평동 12-166대	136.0	-	-	-
	부평동 12-167대	136.0	-	-	-
	부평동 12-168대	136.0	-	-	-
	부평동 12-169대	140.0	-	-	-
	부평동 12-170대	266.0	-	-	-
	부평동 12-174대	96.0	-	-	-
	부평동 12-256대	143.0	-	-	-
	부평동 12-258대	105.0	-	-	-
	부평동 12-263도	4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264도	44.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265도	42.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318대	34.0	-	-	○ 현황도로(사유지)
E14	- 소계	2,609.0	-	-	-
	부평동 10-974도	9.0	-	-	○ 현황도로(국·공유지)
	부평동 10-975대	194.0	-	-	-
	부평동 10-984도	4.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8대	163.0	-	-	-
	부평동 12-9대	171.0	-	-	-
	부평동 12-10대	152.0	-	-	-
	부평동 12-11대	171.0	-	-	-
	부평동 12-12대	143.0	-	-	-
	부평동 12-13대	271.0	-	-	-
	부평동 12-14대	161.0	-	-	-
	부평동 12-96대	200.0	-	-	-
	부평동 12-128대	207.0	-	-	-
	부평동 12-133대	150.0	-	-	-
	부평동 12-134대	136.0	-	-	-
	부평동 12-158대	137.0	-	-	-
	부평동 12-159대	150.0	-	-	-
	부평동 12-160대	156.0	-	-	-
	부평동 12-171대	5.0	-	-	○ 국·공유지
	부평동 12-316도	20.0	-	-	○ 현황도로(사유지)
	부평동 12-319도	9.0	-	-	○ 현황도로(사유지)

주1) B31, B32, C1, C2, C3, C4 가구에서 유형1은 공동개발 지정/권장을 통해 이면도로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할 경우, 유형2는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기정) D1, 특①, 특②, 특③ (변경) D1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허용용도
전체구역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전층 권장용도	1층 권장용도
A(제3종) 교차점 일대 [20m 도로 인접]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체험관), 집회장(예식장, 회의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B(제1종) 먹거리 일대 [10m 도로 인접]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목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사진관
C(완충녹지변)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소, 나 목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D(제3종) 어울림센터 일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치과, 한방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E(준주거, 준공업) 장제로변, 구 등기소 부지 (청천동 30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F(제3종) 길주남로, 주부토로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G(제1, 2종) 이면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주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권장용도에서 제외

주2) 도시계획시설은 권장용도 미설정

주3)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르되 **구역 해제시 권장용도 "E"를 따름**

주4) 권장용도의 적용 : 전층 권장용도는 지상부에 한하여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제외)의 20% 이상인 경우, 특정층 권장용도는 당해용도의 특정층 바닥면적의 합이 특정층 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50% 초과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봄, 권장용도 적용필지와 미적용필지의 합필시(공동개발 제외) 권장용도 적용필지로 적용

주5) 주거용건축물(단독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은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불 허 용 도
기정	변경	
U1 제1종, 제2종일반 주거지역	U1 제1종, 제2종일반 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성인전용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에 따른 불허용도
U2 제3종일반 주거지역	U2 제3종일반 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성인전용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따른 불허용도
U3 준주거지역	U3 준주거지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B31, B32, C1, C2가구에 한함)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따른 불허용도
U4 준공업지역 (구 등기소 부지 (청천동 302-2))	U4 준공업지역 (구 등기소 부지 (청천동 302-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 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나 목의 격리병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따른 불허용도
-	U5 준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주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에 포함

주2)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인가 사항을 따름

- 건축물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특별계획구역 해제된 가구, 필지에 대한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U5 준공업지역 신설)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특정층 불허용도계획: 변경없음

구 분	1층 불허용도
1 먹거리 테마가로변	○ 주거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사,타,거,너 목
2 완충녹지변	○ 주거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마,아 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사,타,거,너 목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건폐율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준공업지역	70% 이하	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 60% 이하
일반상업지역	70% 이하	-

주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에 따름(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제외)

주2)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인가 사항을 따름

- 용적률 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전*)		변 경					비고
구분	용적률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조례에 따름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240%이하	300%이하	부담율 15%
		준주거지역	B33		150%이하	370%이하	500%이하	부담율 30%
			C1 C3 C4	필지단위	150%이하	200%이하	250%이하	-
				유형1	150%이하	300%이하	500%이하	-
				유형2	150%이하	370%이하	500%이하	부담율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50%이하	조례에 따름	-
		준주거지역	B31 B32 C2	필지단위	200%이하	250%이하	500%이하	-
				유형1	220%이하	350%이하	500%이하	-
				유형2	250%이하	400%이하	500%이하	부담율 20%
준주거지역	350% 이하	준주거지역			350%이하	500%이하	조례에 따름	-
준공업지역	400% 이하	기정	준공업지역		350%이하	400%이하	조례에 따름	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일반상업지역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준공업지역		350%이하	400%이하	조례에 따름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지침 적용
			-		-	-	-	-

주1)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건립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함

주2) 도시계획시설은「국토계획법」및「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결정·인가 사항을 따름

주3)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름

주4)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 규정 적용

주5) 공공기여 부담률은 민간부문 지침 제39조(공공기여 부담률)에 따라 시행함

주6) 계획부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적용
- 계획부지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단일한 용도지역으로 통일된 경우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치 적용

주7) B31, B32, C1, C2 가구에서 유형1은 공동개발 지정/권장을 통해 이면도로로 차량진출입이 가능할 경우(공동 개발하였으나, 전면도로로 차량진출입시에는 필지단위 용적률 적용)
B31, B32, C1, C2 가구에서 유형2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

주*) 용도지역 변경전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95호 이전 용도지역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준공업지역 용적율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공동주택 및 준주택 연면적 비율(%)	준주거지역(% 이하)	중심상업지역(% 이하)	일반상업지역(% 이하)	근린상업지역(% 이하)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30 미만	460	1,200	900	600
30 이상~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90 미만	300	500	440	320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4m 이하	24m 이하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	○ 최고높이 미설정: B33, C2(915, 915-1, 915-2, 915-3), C18 ○ 24m 이하: B31, B32, C1, C2(10-114, 10-144, 10-697, 10-830, 10-852, 10-934, 10-1059, 10-1060, 10-1161) (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 최고높이 미설정: B33, C2(915, 915-1, 915-2, 915-3),C18 ○ 24m 이하: B31, B32, C1, C2(10-114, 10-144, 10-697, 10-830, 10-852, 10-934, 10-1059, 10-1060, 10-1161) (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세림병원 일대 (준공업지역, 특별계획구역)	세림병원 일대 (준공업지역)	(최고높이 미설정)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개별필지별 지침(안)을 따름	최고높이 미설정 (건축법 제60조에 따름)

주1) 필지의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해 가중평균을 높이기준으로 함
주2) 도시계획시설은 최고높이 미지정
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높이계획 적용
주4)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건축하는 부분도 층수에 포함되며,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조례를 따름
주5) 장제로변 일대 준주거지역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를 따름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준공업지역 높이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한계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적용 목표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건축물 방향	○ 갈산동	주부토로, 갈월동로	3m	○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 특정 기능 유도를 위한 가로변은 건축한계선 1m 추가 확보 ○ 일대의 이면도로 도로중심선을 기준 양측으로 건축한계선 확보(2~3m)
			굴포먹거리, 굴포천변	2m	
			기타 이면부	1m	
		○ 부평동	장제로변(준주거지역)	3m	
			주부토로, 길주남로 북측	3m	
			신트리공원, 어울림센터 남측, 장제로변(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주남로, 주부토로(제3종) 이면부	2m	
			장제로변(준주거지역) 이면부 기타 이면부	1m	
		○ 부개동	길주남로(효실천거리)	2m	
			기타 이면부	1m	
		○ 청천동	이면도로변	5m	
			길주로변	3m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변으로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필지의 경사가 15%이상일 때는 예외로 함 ○ 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는 건축물이 테라스 전면공지에 접하도록 함 - 최소 4m이상 접하도록 함			○ 가로경관의 향상과 완충녹지변 활성화 기능 확보
건축물 형태	저층부	○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 ○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하도록 권장			○ 가로경관의 향상 ○ 시각회랑 확보
	중·고층부	○ 구역 전체 높이를 고려하여 탑상형(5층 이상)은 건폐율 축소 권장			
건축물 외관	재료/색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0」 준용			○ 도시경관 향상 ○ 도시미관 정비
	야간조명	○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등 관련 내용 준용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며,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			○ 도시미관 정비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담장 및 옹벽의 설치	○ 담장 설치시 식재 담당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옥상녹화	○ 인천광역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자연지반 보존	○ 지상부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			
	중수도 시스템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			

- 변경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4">계획 내용</th><th>적용 목표</th></tr>
<tr><td rowspan="15">건축물 배치</td><td rowspan="15">건축한계선 건축물 방향</td><td rowspan="3">○ 갈산동</td><td colspan="2">주부토로, 갈월동로</td><td>3m</td><td rowspan="15">○ 간선도로변 시각적 개방감 확보
○ 이면도로변 보・차도 확보
○ 특정 기능 유도를 위한 가로변은 건축한계선 1m 추가 확보
○ 일대의 이면도로 도로중심선을 기준 양측으로 건축한계선 확보(2~3m)</td></tr>
<tr><td colspan="2">굴포먹거리, 굴포천변</td><td>2m</td></tr>
<tr><td colspan="2">기타 이면부</td><td>1m</td></tr>
<tr><td rowspan="4">○ 부평동</td><td colspan="2">장제로변(준주거지역)</td><td>3m</td></tr>
<tr><td colspan="2">주부토로, 길주남로 북측</td><td>3m</td></tr>
<tr><td colspan="2">신트리공원, 어울림센터 남측,
장제로변(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주남로, 주부토로(제3종) 이면부</td><td>2m</td></tr>
<tr><td colspan="2">장제로변(준주거지역) 이면부
기타 이면부</td><td>1m</td></tr>
<tr><td rowspan="2">○ 부개동</td><td colspan="2">길주남로(효실천거리)</td><td>2m</td></tr>
<tr><td colspan="2">기타 이면부</td><td>1m</td></tr>
<tr><td rowspan="3">○ 청천동</td><td rowspan="2">구 등기소
(302-2)</td><td>이면도로변</td><td>5m</td></tr>
<tr><td>길주로변</td><td>3m</td></tr>
<tr><td>준공업
지역</td><td colspan="2">・대로변 5m
・세림병원 일대 3m, 외곽 2m, 이면부 1m
・맹지 해소를 위해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 2m, 총 4m 확보</td></tr>
<tr><td colspan="5">○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 되도록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변으로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 필지의 경사가 15%이상일 때는 예외로 함
○ 완충녹지변에 접한 필지는 건축물이 테라스 전면공지에 접하도록 함
- 최소 4m이상 접하도록 함</td><td>○ 가로경관의 향상과 완충녹지변 활성화 기능 확보</td></tr>
<tr><td rowspan="2">건축물 형태</td><td>저층부</td><td colspan="5">○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설치 권장
○ 연접대지에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하도록 권장</td><td rowspan="2">○ 가로경관의 향상
○ 시각회랑 확보</td></tr>
<tr><td>중・고층부</td><td colspan="5">○ 구역 전체 높이를 고려하여 탑상형(5층 이상)은 건폐율 축소 권장</td></tr>
<tr><td rowspan="2">건축물 외관</td><td>재료/색채</td><td colspan="5">○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2010」 준용</td><td rowspan="2">○ 도시경관 향상
○ 도시미관 정비</td></tr>
<tr><td>야간조명</td><td colspan="5">○ 「인천광역시 야간경관계획」,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등 관련 내용 준용</td></tr>
<tr><td rowspan="6">기타 사항</td><td>옥외광고물</td><td colspan="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하며,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름</td><td rowspan="6">○ 도시미관 정비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td></tr>
<tr><td>담장 및 옹벽의 설치</td><td colspan="5">○ 담장 설치시 식재 담당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td></tr>
<tr><td>옥상녹화</td><td colspan="5">○ 인천광역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td></tr>
<tr><td>자연지반 보존</td><td colspan="5">○ 지상부 비건폐지 등은 자연재료로 조성 권장</td></tr>
<tr><td>중수도 시스템</td><td colspan="5">○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권장</td></tr>
<tr><td>녹색주차장</td><td colspan="5">○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주차장 설치 권장</td></tr>
</table>

- 건축한계선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D1가구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건축물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등: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적용 목표
전면공지			간선부	○ 보도와 일체형으로 조성	○ 가로의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 제고 ○ 가로변 휴게공간 제공 ○ 공공부문과 일체형으로 조성 ○ 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 이면도로 연접부는 특별계획구역 내 도로 개설계획과 연계하여 조성
			이면부	○ 차도 및 보도와 일체형으로 조성 (기존 차도 및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	
			테라스형	○ 완충녹지변 - 바닥데크, 의자, 식탁, 파라솔 등 테라스형 카페거리 조성 - 카페 등이 아닌 업종도 바닥데크를 설치해 벤치, 화분 등 휴식공간화 유도 - 외벽(바람막이 등) 및 기둥의 설치는 불허 - 어닝(차양)은 접이식만 허용	
쌈지공원				○ 위치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위치에 조성 ○ 전면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점에 확보 ○ 인접대지의 공개공지 등과는 일체형 조성 ○ 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연속하여 조성	○ 가로변 보행환경 제고 및 휴식·휴게공간 제공 ○ 보행 및 시각 결절점에 오픈스페이스 확보
공개공지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6조 규정 준용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 전면부 조성 ○ 전면공지와 쌈지형 공지와 중복지정 불가 - 전면공지와 중복하여 지정한 경우 제외 ○ 도로 및 보행 결절부에 조성	○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가로변 보행환경 개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기정		○ 길주로, 장제로변, 길주남로변 이면부로 차량 출입이 가능지역은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B31, B32, C2블록 중 이면부 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간선도로 및 가각부에 지정(3m)	○ 간선도로변 원활한 차량소통 도모 및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변경		○ 길주로, 장제로변, 길주남로변 이면부로 차량 출입이 가능지역은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B31, B32, C2블록 중 이면부 진출입이 불가능한 대지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간선도로 및 가각부에 지정(3m) ○ D1가구는 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를 원칙으로 함	
	공공보행통로			○ 간선도로와 이면부 연계 지정 ○ 특별계획구역, 획지 등 대규모 개발시 권장 ○ 구 등기소 부지(청천동 302-2)는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 보행환경 정비
	보차혼용통로			○ 주거지역 이면부 필지변 지정 ○ 간선도로 이면부 내부 필지변 지정	○ 이면부 차량 및 보행의 원활한 흐름 유도
	보행자전용도로			○ 차량진입 배제로 보행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 보행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
	공동주차 출입구			○ 주요도로에서 잦은 차량진출입의 발생으로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화 하도록 인접필지에 출입구가 기 설치 또는 설치되도록 서로 인접 배치하여 조성함을 권장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보행단절 최소화

- 전면공지 등 공개공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D1가구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환경친화요소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벽면 녹화 등 환경친화 요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	
옥상녹화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을 준용	
빗물이용시설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을 준용	
중수도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을 준용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을 준용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을 준용	
기존 수목의 보존 및 재활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할 경우에는 기존 수목의 보존 또는 재활용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권장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특별계획구역1	부평구 청천동 302-32번지	7,193.7	감) 7,193.7	-	
기정	②	특별계획구역2	부평구 청천동 302-9번지	8,223.1	감) 8,223.1	-	
기정	③	특별계획구역3	부평구 청천동 302-24번지	5,760.0	감) 5,760.0	-	
계				21,176.8	감) 21,176.8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면적 변경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지 표
용도지역 용도지구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밀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400%이하 ○ 허용용적률 800%이하 ○ 상한용적률 1,000%이하
용도	허용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 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나 목의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가, 나목의 호스텔, 소형호텔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에 따른 불허용도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지 표</th></tr>
<tr><td colspan="2">용도 권장</td><td colspan="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td></tr>
<tr><td colspan="2">높 이</td><td colspan="2">○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시</td></tr>
<tr><td colspan="2" rowspan="3">도시기반시설</td><td>특별계획구역1</td><td>○ 도로 : 확폭 1개소(추가 3m)
○ 공원 : 신설 1개소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원 위치 확정, 부평구청역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td></tr>
<tr><td>특별계획구역2</td><td>○ 도로 : 신설 1개소(폭 10m), 확폭 1개소(폭원 3m 확장)</td></tr>
<tr><td>특별계획구역3</td><td>○ 도로 : 신설 1개소(폭 6m), 확폭 1개소(폭원 3m 확장)</td></tr>
<tr><td colspan="2">건 축 선</td><td colspan="2">○ 부평대로, 길주로변 5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3m</td></tr>
<tr><td colspan="2">공개공지</td><td colspan="2">○ 공개공지 중 공공지하공간과 연접한 필지는 침상형 공지로 확보
○ 부평구청역 인근 공개공지 위치지정(지하철 연계 검토)</td></tr>
<tr><td colspan="2">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2">○ 공공보행통로 폭 4m 이상
- 특별계획구역① 획지1,2 사이, 특별계획구역② 획지1 남측부 조성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부평구청역과 연계하는 지하보행통로 조성 및 통경축 확보 권장</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부담률</td><td colspan="2">○ 순부담율: 15.0% 이상(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시행자 부담)
- 획지별 단계별 조성 시 15.0% 이상 확보</td></tr>
<tr><td colspan="2">차량출입불허구간</td><td colspan="2">○ 대로변으로 차량 출입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함</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2">○ 획지1(LPG 충전소 부지) 북측 부평구청역과 연계한 지하통로 확보
○ 5년 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되며,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특별계획구역 해제 시 필지별 개발에 의한 지침에 따름(개별필지 지침(안)도 참조)
<table>
<tr><th>용도지역</th><th>높이</th><th>건폐율</th><th>용적률</th></tr>
<tr><td>준공업지역
(변경없음)</td><td>최고높이 미설정
(건축법 제60조에 따름)</td><td>70%</td><td>350%/400%/지침에 따름
(준주거지역 인센티브 적용)</td></tr>
<tr><td colspan="2">건축물 용도</td><td colspan="2">가구 및 획지</td></tr>
<tr><td colspan="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td><td colspan="2">·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지침도에 따름)
·준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 colspan="2">차량출입불허구간</td></tr>
<tr><td colspan="2">·대로변 5m
·세림병원 일대 3m, 외곽 2m, 이면부 1m
·맹지 해소를 위해 도로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 2m, 총 4m 확보</td><td colspan="2">·대로변 차량출입을 불허를 원칙으로 함</td></tr>
</table>
○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며, 도시경관 및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경관심의를 득할 것</td></tr>
</table>

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절차를 거쳐 심의 후 결정

- 변경

○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D1 가구 필지별 개발 지침

구분	내용	비고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건폐율	○ 70%	
용적률	○ 350%/400%/지침에 따름	준공업지역 인센티브 적용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 E ○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높이	○ 최고높이 미설정	건축법 제60조에 따름
가구 및 획지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지침도에 따름) ○ 준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건축한계선	○ 대로변 5m ○ 세림병원 일대 3m, 외곽 2m, 이면부 1m ○ 맹지 해소를 위해 도로중심을 기준으로 양측 2m, 총 4m 확보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로변 차량출입 불허를 원칙으로 함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지정 이후 5년이내 사업 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되어, 기정 결정(변경) 고시 내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지정을 해제하고,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바.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가구번호 A-7, 8, 10, 19, 21, 22, 25, 26 / B-6, 7, 8, 9, 11, 22, 23): 변경없음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0.5a	○2필지: a=0.1 ○3~4필지: a=0.15 ○5필지이상: a=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특정층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1	○특정층 권장용도의 바닥면적 5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 a=0.5 ○침상형 a=0.9 ○개방형 a=1.1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0.04이내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구 등기소 부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가구번호 B-33 / D-1): 변경

- 기정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a=0.5 ○ 침상형 a=0.9 ○ 개방형 a=1.1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적용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가구번호 B-33 / D-1)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a=0.5 ○ 침상형 a=0.9 ○ 개방형 a=1.1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적용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 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 소제목 변경 - 준공업지역(구 등기소 부지) → 준공업지역	특별계획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준공업 지역 인센티브 계획기준 대상변경	

○ 제1·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가구번호 B-31, B-32 / C-1, C-2) (필지단위 개발): 변경없음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맞벽/합벽 건축	맞벽/합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제1·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가구번호 B-31, B-32 / C-1, C-2) (유형1 개발): 변경없음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및 맞벽/합벽 건축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0.5a	○2필지: a=0.1 ○3~4필지: a=0.15 ○5필지이상: a=0.2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2a	
	맞벽/합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 a=0.5 ○침상형 a=0.9 ○개방형 a=1.1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a=0.5 ○개방형구조: 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0.04이내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제1·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가구번호 B-31, B-32 / C-1, C-2) (유형2 개발): 변경없음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및 맞벽/합벽 건축	유형2	준수시	기준용적률×0.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95호로 결정된 획지형상으로 개발하고 당초 규모의 건축선,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경우
	맞벽/합벽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공지	위치준수	기준용적률×0.1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a=0.5 ○ 침상형 a=0.9 ○ 개방형 a=1.1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 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변경없음

구 분			완화기준	비 고
공동개발	지정	준수시	기준용적률×0.5a	○ 2필지: a=0.1 ○ 3~4필지: a=0.15 ○ 5필지이상: a=0.2
	권장	준주시	기준용적률×0.2a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특정층 권장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해당층 바닥면적)×0.1	○ 특정층 권장용도의 바닥면적 50%이상시 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적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 세림병원 특별계획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변경

- 기정

구 분			완 화 기 준	비 고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전층권장용도의 건축면적 20%이상시인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x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쌈지형, 침상형 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 a=0.5 ○ 침상형 a=0.9 ○ 개방형 a=1.1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 및 통합간판등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적용
	건축물의 색채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별도 계획 수립시 적용
	지하철 관련	준수시	기준용적률×0.1	○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를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20% 이내 적용 ○ 법적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0.04이내 ○ 전면공지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 설치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감율	1등급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절감」, 「에너지성능지표」 및 「녹색건축 인증」의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인센티브 차등적용 ○ 각 요소의 인센티브 산정시 중복 계상 불허
		2등급	기준용적률×0.04	
	에너지 성능지표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녹색건축물 인증	1등급	기준용적률×0.06	
		2등급	기준용적률×0.04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15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제공시	기준용적률×0.2	

주1) 기준용적률과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의 20% 이상, '특정층'의 경우 당 해층 전용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를 수용된 것으로 봄

주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예,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에 공개공지 조성시 등)

주4) 환경친화적 건축물 준용에 있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30% 이하로 적용

- 변경: 기정 계획기준 전체 삭제

- 세림병원 특별계획구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내용 및 사유	비고
○ 특별계획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특①, 특②, 특③가구의 인센티브 계획기준 삭제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준: 변경없음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주1) 상한용적률 적용 인센티브는 높이(층수) 및 건폐율 완화 등 타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주2)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공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1)에서 정한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상한용적률의 산출식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높이 등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변경없음

높 이 완 화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 (건축조례 제36조 제4항) - 산정식 : [1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설치 의무 면적. 다만,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 × 기준높이 ○ 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산정식 : 기준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건폐율 완 화	○ 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산정식 :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주1) '공개공간' 이라 함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등을 말함

- 공개공간 항목 중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전면공지는 미포함
- '피로티구조'는 건축조례 제22조 제2항을 준용하여 설치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함

주2)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 및 건폐율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 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높이완화, 건폐율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단계별 공동개발(지정/권장)에 따른 건축물 밀도완화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 산정식에 의한 결과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변경없음

1. 필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필지간 공동개발(지정/권장/자율)의 변경(신설 포함)
3.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제외)의 위치 및 조성방법 변경(신설 포함)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등)의 성격·설계계획(위치변경 및 신설 포함)
6. 담장 등의 형태
7.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8.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9.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0. 1층 대문, 개구부의 형태(높이)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15호선, 대1-14호선, 사업명: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185),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59-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5, 대로1-14호선)사업

○ 명칭: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광로3-15호선 - 무네미로 (L)=260.0m, (B)=7.0m, 2차로 확장

○ 대로1-14호선 - 백범로 (L)=150.0m, (B)=3.25m, 1차로 확장

4.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2022. 1. 10. ~ 202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해당 없음

붙임: 토지조서 1부. 끝.

토 지 조 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	기정	장수동	662-18	도	733	124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2	기정	장수동	산137-8	임	6,075	39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산137-8	임	6,075	39	인천광역시	-	
3	기정	장수동	662-15	도	194	194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2-15	도	194	194	인천광역시	-	
4	기정	장수동	662-19	도	376	280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5	기정	장수동	산135-3	임	25	25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산135-3	임	25	25	인천광역시	-	
6	기정	장수동	662-13	도	115	115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2-13	도	115	115	인천광역시	-	
7	기정	장수동	산135-1	임	27	25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8	기정	장수동	754	도	2,494	54	국(국토교통부)	-	
	변경	장수동	754	도	2,494	29	국(국토교통부)	-	
9	기정	장수동	662-5	도	409	55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10	기정	장수동	662-11	전	76	76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2-11	전	76	76	인천광역시	-	
11	기정	장수동	662-2	전	6	6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2-2	전	6	6	인천광역시	-	
12	기정	장수동	727-2	천	199,163	69	국(국토교통부)	-	
	변경	장수동	727-2	천	199,163	39	국(국토교통부)	-	
13	기정	장수동	662-12	전	107	107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	장수동	662-12	전	107	107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14	기정	장수동	662-3	창	56	56	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변경	장수동	662-3	창	56	56	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15	기정	장수동	662-4	답	92	92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62-4	답	92	92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장수동)	
16	기정	장수동	661	답	115	11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61	답	115	11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7	기정	장수동	660-3	창	75	7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60-3	창	75	75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8	기정	장수동	660-12	전	208	208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60-12	전	208	208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19	기정	장수동	659-15	답	80	8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59-15	답	80	8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20	기정	장수동	659-7	답	50	5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59-7	답	50	5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21	기정	장수동	659-8	도	10,607	660	인천광역시	-	-
	변경	-	-	-	-	-	-	-	제외
22	기정	장수동	688-3	도	5,547	159	국(국토교통부)	-	
	변경	-	-	-	-	-	-	-	제외
23	기정	장수동	688-6	도	1,171	394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88-6	도	1,171	145	인천광역시	-	
24	기정	장수동	666	수	82,223	126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6	수	82,223	120	인천광역시	-	
25	기정	장수동	762-1	도	275	26	국(농림축산식품부)	-	
	변경	-	-	-	-	-	-	-	제외
26	기정	장수동	695-3	도	247	24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변경	장수동	695-3	도	247	123	인천광역시	-	
27	기정	장수동	695-4	도	2,601	258	국(국토교통부)	-	
	변경	-	-	-	-	-	-	-	제외

일련번호		소재지	편입용지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28	기정	장수동	727-1	천	1	1	국(국토교통부)	-	
	변경	장수동	727-1	천	1	1	국(국토교통부)	-	
29	기정	장수동	698-13	도	29	29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30	기정	장수동	698-1	답	7	7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98-1	답	7	7	인천광역시	-	
31	기정	장수동	727-37	천	2,267	79	국(국토교통부)	-	
	변경	장수동	727-37	천	2,267	39	국(국토교통부)	-	
32	기정	장수동	659-3	답	30	30	김**외 7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동 ***호 (산본동,을지아파트)	
	변경	장수동	659-3	답	30	30	김**외 7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동 ***호 (산본동,을지아파트)	
33	기정	장수동	659-12	답	89	52	김**외 7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 ***동 ***호 (산본동,을지아파트)	
	변경	-	-	-	-	-	-	-	제외
34	기정	장수동	660-10	전	111	95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35	기정	장수동	660-2	전	176	176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60-2	전	176	176	인천광역시	-	
36	기정	장수동	660-13	전	9	9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60-13	전	9	9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37	기정	장수동	659-2	답	41	41	인천광역시	-	
	변경	장수동	659-2	답	41	41	인천광역시	-	
38	기정	장수동	659-8	도	10,607	182	인천광역시	-	
	변경	-	-	-	-	-	-	-	제외
39	기정	장수동	659-16	답	124	124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변경	장수동	659-16	답	124	124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장수동)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2차)·실시계획(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4차)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2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조정을 통해 공항시설 경계와의 정합성 확보, 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반영 및 공부면적으로 조정, 공공청사(제3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적(변경) : 기정- 17,284,000.0㎡, 변경- 17,257,362.2㎡(감 26,637.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합계			17,284,000.0	100.0	-26,637.8	17,257,362.2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4,000.0	13.4	-2,996.7	2,311,003.3	13.4	
	상업시설		128,000.0	0.7	1,209.2	129,209.2	0.7	
	복합시설		1,832,000.0	10.6	-1,049.4	1,830,950.6	10.6	
	업무시설		354,000.0	2.0	-3,156.5	350,843.5	2.0	
산업·물류용지			4,617,000.0	26.7	-46,776.7	4,570,223.3	26.5	
관광위락 및숙박	숙박시설		79,000.0	0.5	4,608.6	83,608.6	0.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37,000.0	46.5	41,428.6	8,078,428.6	46.8	
	문화시설		73,000.0	0.4	-5,863.7	67,136.3	0.4	
	공공청사		91,000.0	0.5	-11,846.5	79,153.5	0.5	
	체육시설		741,000.0	4.3	43,037.3	784,037.3	4.5	
	주유소		12,000.0	0.1	-6,166.8	5,833.2	-	
	공급처리시설		169,000.0	1.0	9,872.0	178,872.0	1.0	
	문화재		70,000.0	0.4	-6,311.0	63,689.0	0.4	
	도시기반시설 (유수지)	유수지	1,856,000.0	10.7	595.9	1,856,595.9	10.8	
	공원		581,000.0	3.4	19,637.0	600,637.0	3.5	
	녹지 (공공공지)	녹지	1,806,000.0	10.4	-7,897.6	1,723,729.4	10.0	
		공공공지				74,373.0	0.4	
	도로		999,000.0	5.8	9,308.3	1,008,308.3	5.8	
	광장		79,000.0	0.5	109.7	79,109.7	0.5	
	주차장		337,000.0	1.9	-4,718.0	332,282.0	1.9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1,143,000.0	6.6	
	공항시설		80,000.0	0.5	1,672.0	81,672.0	0.5	
기타용지	유보지		2,237,000.0	12.9	-22,901.6	2,214,098.4	12.8	
계획미수립지역			-	-	-	-	-	

주1)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25호 (2021.05.10.)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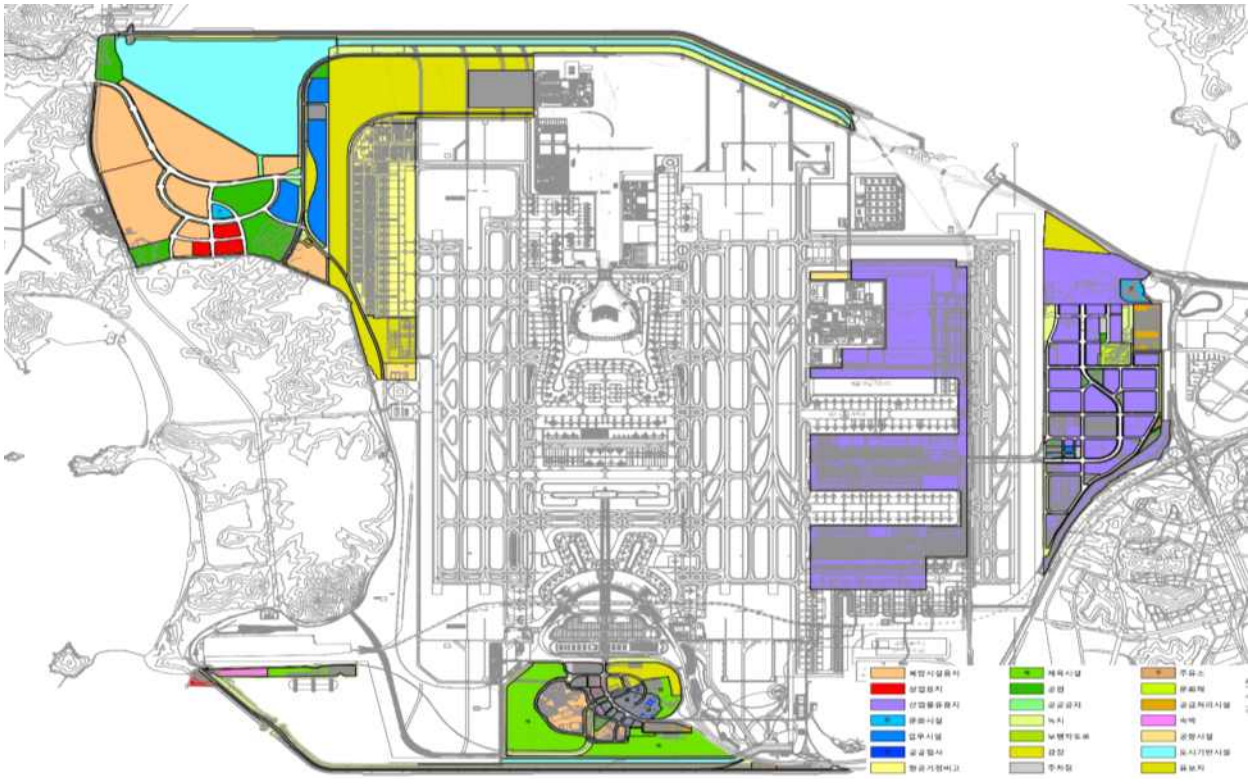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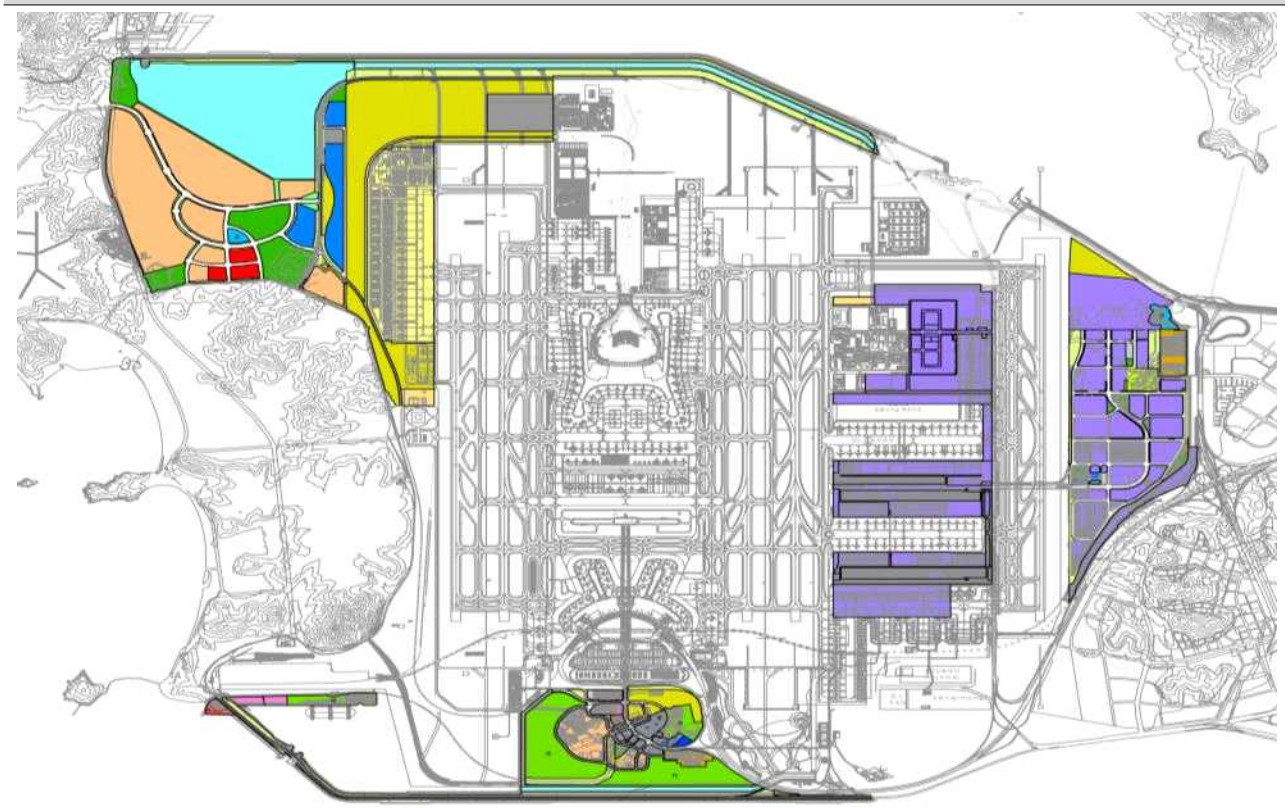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 문화시설 계획 >

구분	위치	시설수	계획면적(㎡)	기능	비 고
문화 시설	운서동 2508-133 번지	1	당초 : 50,000.0 변경 : 44,691.3 (감 5,308.7)	주민편익 / 운동 / 여가 / 문화 / 업무시설 등	하늘문화센터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	22,445.0	지역홍보 / 문화 / 박물관 / 복지시설 등	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내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4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조정을 통해 공항시설 경계와의 정합성 확보, 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반영 및 공부면적으로 조정, 공공청사(제3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참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면적: 기정- 17,284,000.0㎡, 변경- 17,257,362.2㎡(감 26,637.8㎡)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계					20,082,452.3	17,257,362.2			
1	남북동	785	1	답	1,554.0	1,55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	남북동	785	5	답	1,260.0	1,26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3	남북동	785	7	답	2,122.0	2,12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	남북동	785	10	답	1,657.0	1,65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5	남북동	785	11	답	677.0	67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	남북동	785	24	답	59.0	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	남북동	785	25	답	194.0	19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	남북동	785	26	답	1,553.0	1,5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9	남북동	785	27	답	1,000.0	1,00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10	남북동	790	1	답	1,099.0	1,09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1	남북동	790	2	답	15,081.0	15,08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2	남북동	790	6	답	258.0	258.0	개인		IBC-III_MRO
13	남북동	790	8	전	610.0	610.0	인천국제공항공사외1인		IBC-III_MRO
14	남북동	790	9	도	257.0	25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5	남북동	790	18	도	104.0	10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6	남북동	790	19	도	72.0	7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7	남북동	790	20	도	4,079.0	4,07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8	남북동	790	27	도	445.0	445.0	인천국제공항공사외1인		IBC-III_MRO
19	남북동	790	28	전	178.0	178.0	인천국제공항공사외1인		IBC-III_MRO
20	남북동	791	1	전	4,660.0	4,660.0	인천공항공사		IBC-III_MRO
21	남북동	791	2	답	611.0	611.0	개인		IBC-III_MRO
22	남북동	791	8	전	104.0	10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23	남북동	792	1	답	886.0	88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4	남북동	792	2	답	1,471.0	1,47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5	남북동	792	3	전	1,577.0	1,57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6	남북동	792	4	전	1,299.0	1,29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7	남북동	792	5	과	788.0	7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8	남북동	792	6	도	184.0	18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29	남북동	792	7	답	1,010.0	1,01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0	남북동	792	8	답	1,861.0	1,86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1	남북동	792	9	전	954.0	95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2	남북동	792	10	도	123.0	12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3	남북동	792	11	답	195.0	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34	남북동	792	12	유	2,983.0	2,98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5	남북동	792	13	제	194.0	19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6	남북동	792	14	도	756.0	75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7	남북동	792	15	임	297.0	29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8	남북동	792	16	전	1,697.0	1,69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39	남북동	792	17	구	761.0	76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0	남북동	792	18	답	475.0	47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1	남북동	792	19	답	94.0	9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2	남북동	792	25	답	1,025.0	1,02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3	남북동	792	26	답	773.0	77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4	남북동	793		답	440.0	44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5	남북동	793	1	전	3,788.0	3,7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6	남북동	794		과	6,032.0	6,03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7	남북동	794	1	답	682.0	6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8	남북동	794	2	전	1,005.0	1,00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9	남북동	794	9	과	3,306.0	3,30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0	남북동	796	1	답	2,482.0	2,4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1	남북동	796	2	답	304.0	30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2	남북동	797		답	219.0	21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3	남북동	802	1	전	16.0	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4	남북동	823	4	답	252.0	25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5	남북동	823	18	답	4.0	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6	남북동	975		도	296.0	296.0	국(국토교통부)		IBC-III_MRO
57	남북동	976		도	175.0	17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58	남북동	981	1	도	4,055.4	248.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
59	남북동	981	2	도	28.0	2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0	남북동	981	3	도	81.5	81.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1	남북동	981	4	도	1,455.0	254.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
62	남북동	984		도	5,903.3	5,903.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3	남북동	985		도	2,525.0	2,52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4	남북동	986		도	2,673.9	2,673.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5	남북동	산 1		임	21,284.0	21,28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66	남북동	산 1	2	도	534.0	53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67	남북동	산 2	1	임	24,957.0	24,95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	남북동	산 2	11	임	235.0	23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	남북동	산 6	14	임	358.0	35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	남북동	산 6	16	임	357.0	35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	운서동	1822	1	답	98.0	9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2	운서동	1824	9	전	23.0	2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3	운서동	1827	1	전	4,440.0	4,44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4	운서동	1827	4	임	178,910.0	178,91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5	운서동	1827	41	임	6,584.0	6,58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6	운서동	1830	1	전	3,550.0	3,55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7	운서동	1830	2	대	358.0	35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78	운서동	1895		전	595.0	595.0	인천국제공항공사/김상진		제1산물
79	운서동	2057		전	4,916.0	4,91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0	운서동	2061		전	10,041.0	7,63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81	운서동	2062		임	1,768.0	1,76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2	운서동	2067		대	3,789.0	3,78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83	운서동	2069	1	답	3,547.0	1,209.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84	운서동	2072	1	임	7,772.0	1,389.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85	운서동	2073	1	학	2,902.0	2,90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6	운서동	2075	4	대	81.0	8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7	운서동	2079	6	전	173.0	17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8	운서동	2079	8	도	37.0	37.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89	운서동	2083	1	답	5,669.0	2,46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0	운서동	2083	3	도	42.0	4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91	운서동	2084	1	전	1,260.0	368.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2	운서동	2084	2	도	168.0	8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3	운서동	2091	4	도	6,729.0	2,078.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4	운서동	2091	16	염	144,986.0	107,067.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5	운서동	2091	27	잡	31,601.0	13,74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6	운서동	2091	60	제	13.0	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97	운서동	2091	65	염	4,473.0	4,47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98	운서동	2091	71	제	2,248.0	710.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99	운서동	2091	73	유	80,921.0	14,435.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00	운서동	2091	75	제	7,266.0	2,27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01	운서동	2091	79	잡	765.0	76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02	운서동	2091	81	잡	558.0	55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03	운서동	2093		답	77,303.0	37,50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04	운서동	2097		전	7,981.0	37.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05	운서동	2102	1	대	340.0	34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06	운서동	2114		전	5,734.0	5,70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07	운서동	2162		답	1,332.0	1,33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08	운서동	2162	1	전	999.0	99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09	운서동	2163		답	99.0	9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0	운서동	2164		답	45,566.0	31,858.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11	운서동	2164	1	대	511.0	51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2	운서동	2164	3	전	601.0	60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3	운서동	2165	1	도	289.0	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4	운서동	2165	2	구	1,311.0	1,31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5	운서동	2165	6	제	1,740.0	1,74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6	운서동	2165	7	염	12,328.0	12,32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7	운서동	2165	150	염	851.0	85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8	운서동	2166	7	전	1,524.0	1,52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19	운서동	2166	10	유	111.0	11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0	운서동	2170	5	구	1,266.0	1,26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1	운서동	2170	6	답	4,656.0	4,65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2	운서동	2170	7	제	558.0	55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3	운서동	2172	1	잡	30,431.0	17,91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24	운서동	2172	4	구	83.0	8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5	운서동	2175		답	67,265.0	5,89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26	운서동	2181	1	대	472.0	47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27	운서동	2181	4	대	412.0	154.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28	운서동	2181	9	전	20,742.0	1,566.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29	운서동	2181	19	전	1,004.0	1,00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30	운서동	2223		잡	6,780.0	744.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1	운서동	2242	4	잡	5,487.0	1,749.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2	운서동	2242	6	잡	29,309.0	5,89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3	운서동	2242	8	염	240,432.0	55,77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4	운서동	2242	60	구	2,636.0	80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5	운서동	2242	64	제	3,194.0	1,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6	운서동	2242	81	구	2,032.0	559.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7	운서동	2242	95	구	3,057.0	59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38	운서동	2252		전	4,313.0	4,3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39	운서동	2253		전	2,575.0	1,113.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40	운서동	2255	1	잡	4,279.0	3,739.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41	운서동	2256		전	950.0	95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2	운서동	2257		전	7,244.0	7,2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3	운서동	2269	1	대	254.0	25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4	운서동	2273		임	555.0	55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5	운서동	2286		대	918.0	91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6	운서동	2287		전	10,717.0	6,11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47	운서동	2288		대	145.0	14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148	운서동	2289		전	3,263.0	3,26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49	운서동	2292		묘	344.0	3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50	운서동	2294	4	대	25.0	2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51	운서동	2508	3	전	747.0	747.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2	운서동	2508	4	전	7,844.0	7,84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3	운서동	2508	7	제	529.0	44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154	운서동	2508	8	구	60.0	6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5	운서동	2508	9	제	10,362.0	10,36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6	운서동	2508	10	구	26.0	2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7	운서동	2508	11	제	28.0	2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8	운서동	2508	12	잡	231.0	23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59	운서동	2508	13	도	549.0	54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0	운서동	2508	14	잡	5,416.0	5,41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1	운서동	2508	15	도	155.0	15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2	운서동	2508	16	도	282.0	28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3	운서동	2508	17	잡	5,202.0	5,20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4	운서동	2508	18	도	67,501.0	31,158.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165	운서동	2508	19	잡	3,104.0	3,10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6	운서동	2508	29	잡	8,475.0	8,47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7	운서동	2508	33	제	851.0	85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8	운서동	2508	46	도	107.0	107.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69	운서동	2508	48	잡	12,574.0	12,57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0	운서동	2508	51	도	1,761.0	1,76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1	운서동	2508	56	잡	709.0	70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2	운서동	2508	91	잡	225.0	22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3	운서동	2508	92	도	9,986.0	9,98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4	운서동	2508	121	임	270,313.0	270,31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5	운서동	2508	129	잡	295.0	2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6	운서동	2508	130	잡	270.0	27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7	운서동	2508	131	도	236.0	23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8	운서동	2508	132	도	772.0	77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79	운서동	2508	133	임	43,599.0	43,59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0	운서동	2508	139	임	29,412.0	29,41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1	운서동	2577	3	도	7,934.0	2,305.0	국(건설교통부)	부분편입	제2산물
182	운서동	2577	4	도	928.0	461.0	국(건설교통부)	부분편입	제2산물
183	운서동	2578		도	879.0	66.0	국(국토교통부)	부분편입	제2산물
184	운서동	2824	1	대	1,552.0	1,55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5	운서동	2824	2	도	1,513.7	1,513.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6	운서동	2824	3	대	2,874.4	2,874.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7	운서동	2824	4	도	3,721.5	3,72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8	운서동	2824	5	대	2,837.3	2,837.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89	운서동	2824	6	도	1,579.0	1,57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190	운서동	2833		제	42,744.9	26,747.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MRO
191	운서동	2833	1	구	378,073.3	378,073.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92	운서동	2833	2	도	140,890.9	140,890.9	인천광역시		IBC-III_MRO
193	운서동	2833	3	제	184,422.2	184,422.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94	운서동	2833	4	도	9,520.2	9,520.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195	운서동	2833	6	도	748,633.8	27,802.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IBC-III_MRO
196	운서동	2835	3	잡	211,337.5	119,879.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197	운서동	2835	4	구	5,521.8	5,52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98	운서동	2835	5	잡	15,798.8	15,798.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199	운서동	2835	14	공	11,249.8	11,249.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0	운서동	2835	16	잡	12,939.4	12,939.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1	운서동	2835	17	잡	12,163.8	12,163.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2	운서동	2835	18	잡	19,707.5	19,707.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3	운서동	2835	20	잡	8,811.3	8,811.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4	운서동	2835	21	도	11,856.9	11,856.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205	운서동	2835	22	잡	17,574.9	17,574.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6	운서동	2835	23	잡	19,409.3	19,409.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7	운서동	2835	24	잡	11,373.7	11,373.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8	운서동	2835	27	잡	7,691.9	7,691.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09	운서동	2835	28	대	481.1	481.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0	운서동	2835	30	도	12,725.6	12,725.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1	운서동	2835	32	잡	252.5	252.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2	운서동	2838		도	3,073.5	3,073.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3	운서동	2838	1	잡	6,756.0	6,75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4	운서동	2838	2	공	3,825.6	3,825.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5	운서동	2838	4	잡	7,297.4	7,297.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6	운서동	2838	5	도	17,369.2	17,369.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7	운서동	2838	6	공	12,315.2	12,315.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8	운서동	2838	12	도	2,645.8	2,645.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19	운서동	2838	13	잡	6,558.3	6,558.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0	운서동	2838	15	잡	8,572.0	8,57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1	운서동	2838	21	도	2,708.5	2,708.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2	운서동	2838	25	공	4,160.7	4,160.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3	운서동	2838	27	잡	3,270.2	3,270.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4	운서동	2838	28	잡	3,311.5	3,31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5	운서동	2838	31	차	10,444.7	10,444.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6	운서동	2838	41	잡	4,630.0	4,63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7	운서동	2838	44	잡	16,360.5	16,360.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8	운서동	2838	49	잡	4,571.8	4,57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29	운서동	2838	50	잡	16,459.3	16,459.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0	운서동	2838	51	잡	4,596.3	4,596.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1	운서동	2838	52	잡	19,372.3	19,372.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2	운서동	2839		잡	1,576.1	1,57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3	운서동	2840	6	잡	23,496.3	23,496.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4	운서동	2840	7	구	2,269.6	2,269.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35	운서동	2840	8	잡	25,381.7	868.1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36	운서동	2840	9	잡	47,832.1	27,918.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37	운서동	2840	15	도	6,731.1	1,259.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38	운서동	2840	27	잡	326,922.1	26,647.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39	운서동	2841		도	999.5	999.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40	운서동	2842	2	잡	65,015.8	11,463.8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41	운서동	2842	3	잡	34,707.8	18,668.8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42	운서동	2842	4	구	12,716.4	6,856.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43	운서동	2842	5	잡	18,240.6	10,607.8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44	운서동	2842	6	차	13,749.0	13,74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45	운서동	2842	7	잡	17,681.3	17,681.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46	운서동	2842	8	잡	9,388.9	9,388.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47	운서동	2842	9	잡	33,942.1	6,085.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48	운서동	2842	10	잡	2,692.8	2,692.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49	운서동	2842	11	구	2,817.7	2,817.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0	운서동	2842	12	잡	1,029.9	1,029.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1	운서동	2842	13	잡	10,740.5	10,740.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2	운서동	2842	14	도	14,733.4	14,733.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3	운서동	2842	16	잡	36,941.7	36,941.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4	운서동	2842	17	차	40,351.1	40,351.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5	운서동	2842	18	구	12,115.9	12,115.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6	운서동	2842	19	도	3,288.3	3,288.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257	운서동	2843		도	15,939.3	15,936.1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58	운서동	2843	1	잡	291,854.3	254,290.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59	운서동	2843	3	구	28,201.5	16,927.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60	운서동	2843	4	잡	193,937.1	90,144.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261	운서동	2849		잡	5,833.2	5,833.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262	운서동	2849	1	잡	7,506.8	7,506.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3	운서동	2849	2	도	1,603.7	1,603.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4	운서동	2850		대	23,565.0	23,56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5	운서동	2850	1	잡	16,347.9	16,347.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6	운서동	2850	2	잡	11,380.5	11,380.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7	운서동	2850	3	잡	7,534.0	7,53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8	운서동	2850	4	잡	5,475.2	5,475.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69	운서동	2850	5	잡	5,095.0	5,09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0	운서동	2850	6	잡	6,717.8	6,717.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1	운서동	2850	7	잡	7,906.6	7,906.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2	운서동	2850	8	잡	16,348.0	16,34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3	운서동	2850	9	잡	2,057.6	2,057.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4	운서동	2850	10	도	41,527.1	41,527.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5	운서동	2850	11	잡	247.8	247.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6	운서동	2850	12	도	28,471.7	28,471.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7	운서동	2850	13	잡	6,136.9	6,136.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8	운서동	2850	14	공	361.3	361.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79	운서동	2850	15	차	5,755.6	5,755.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0	운서동	2850	17	대	12,651.7	12,651.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1	운서동	2850	18	공	664.2	664.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2	운서동	2850	19	공	490.5	490.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3	운서동	2850	20	공	132.2	132.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4	운서동	2850	21	공	5,736.9	5,736.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5	운서동	2850	22	잡	36,236.1	36,236.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6	운서동	2850	23	도	766.4	766.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7	운서동	2850	24	공	3,187.2	3,187.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8	운서동	2850	25	잡	280.2	280.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89	운서동	2850	28	잡	666.5	666.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0	운서동	2850	30	잡	865.1	865.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1	운서동	2850	31	도	2,573.2	2,573.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2	운서동	2850	33	잡	1,009.1	1,009.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3	운서동	2850	34	도	2,824.7	2,824.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4	운서동	2850	35	잡	8,210.4	8,210.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5	운서동	2850	36	잡	47,515.6	47,515.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6	운서동	2850	39	도	486.2	486.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7	운서동	2850	41	도	351.3	351.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298	운서동	2851	1	도	56,709.7	11,499.6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299	운서동	2851	13	구	247,397.2	247,397.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00	운서동	2851	20	잡	336,944.2	336,944.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01	운서동	2851	22	도	82,690.9	1,475.8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02	운서동	2851	23	체	17,440.4	17,440.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03	운서동	2851	24	체	41,920.1	41,920.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04	운서동	2851	25	차	7,239.3	7,239.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05	운서동	2851	26	잡	11,189.0	11,189.0	국(국토교통부)		IBC-I
306	운서동	2851	27	잡	48,701.6	11,469.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07	운서동	2851	33	체	10,000.2	10,000.2	국(국토교통부)		IBC-I
308	운서동	2851	47	대	2,525.8	2,525.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09	운서동	2851	48	구	906.8	906.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0	운서동	2851	49	도	4,195.8	4,195.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1	운서동	2851	50	잡	5,405.5	5,405.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2	운서동	2851	51	잡	192.2	192.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3	운서동	2851	56	잡	38,417.2	38,417.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4	운서동	2851	66	잡	7,680.7	7,680.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5	운서동	2851	76	잡	33,240.5	33,240.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6	운서동	2851	85	대	1,498.3	1,498.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7	운서동	2851	86	공	7.7	7.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18	운서동	2851	88	도	813.6	813.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319	운서동	2851	89	공	262.4	262.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0	운서동	2851	90	도	1,304.3	1,304.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1	운서동	2851	91	대	3,779.0	3,77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2	운서동	2851	92	도	611.2	611.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3	운서동	2851	93	공	2,396.2	2,396.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4	운서동	2851	94	구	1,809.7	1,809.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5	운서동	2851	96	도	45.7	45.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6	운서동	2851	97	공	740.6	740.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7	운서동	2851	98	잡	22,927.4	22,927.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8	운서동	2851	100	대	14,933.4	14,933.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29	운서동	2851	101	잡	219,009.9	219,009.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30	운서동	2851	106	체	7,312.8	7,312.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31	운서동	2854		제	168,803.6	168,803.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32	운서동	2854	3	제	463.4	298.1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33	운서동	2854	5	도	132,599.2	131,820.5	인천광역시	부분편입	IBC-I
334	운서동	2854	6	제	8,109.5	6,847.9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35	운서동	2854	7	제	21,621.6	21,621.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36	운서동	2854	9	도	7,594.5	7,594.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37	운서동	2854	10	도	102.3	15.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38	운서동	2854	11	도	55.5	54.8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39	운서동	2854	12	도	1,205.5	1,200.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40	운서동	2854	14	제	549.6	511.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
341	운서동	2854	15	제	591.3	591.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42	운서동	2855		잡	13,388.0	13,3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43	운서동	2855	1	잡	14,072.2	14,072.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344	운서동	2855	2	잡	265.0	265.0	국		IBC-I
345	운서동	2858	1	잡	44,257.0	36,965.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346	운서동	2858	2	도	18,067.7	15,105.5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347	운서동	2859	2	도	54,120.4	54,120.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48	운서동	2859	3	잡	30,474.4	30,474.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49	운서동	2859	4	잡	296,729.3	296,729.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50	운서동	2860	1	잡	9,536.1	9,53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1	운서동	2860	2	도	590.0	59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2	운서동	2860	3	잡	1,712.9	1,712.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3	운서동	2860	4	잡	1,431.0	1,43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4	운서동	2860	5	도	445.7	445.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5	운서동	2860	6	잡	66,741.9	66,741.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6	운서동	2860	7	잡	26,315.0	26,31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7	운서동	2860	8	도	1,596.2	1,596.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58	운서동	2861	5	도	30,752.3	16,782.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359	운서동	2861	17	도	7,356.3	5,00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360	운서동	2861	22	도	74.0	74.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361	운서동	2861	23	도	5,954.9	5,954.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62	운서동	2861	24	도	74.0	74.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363	운서동	2861	25	도	1,021.0	1,02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64	운서동	2861	26	도	174.0	174.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365	운서동	2861	27	도	10,942.5	10,942.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66	운서동	2861	28	도	6,365.9	6,365.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67	운서동	2861	33	도	5,840.3	5,840.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368	운서동	2863	4	잡	169,178.6	103,834.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369	운서동	2863	5	주	2,470.0	2,47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70	운서동	2863	10	잡	790.0	766.8	국(건설교통부)	부분편입	제2산물
371	운서동	2863	11	잡	1,289.0	541.2	국(건설교통부)	부분편입	제2산물
372	운서동	2863	12	잡	1,064.0	1,064.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373	운서동	2863	13	잡	340.0	340.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374	운서동	2863	14	주	1,485.0	1,4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75	운서동	2864	1	잡	16,030.4	16,030.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376	운서동	2864	2	잡	914.7	914.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77	운서동	2864	3	잡	3,313.3	3,313.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78	운서동	2864	4	잡	1,416.7	1,416.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79	운서동	2864	5	잡	904.1	904.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0	운서동	2864	6	잡	826.6	826.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1	운서동	2864	7	주	2,038.0	2,03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2	운서동	2864	8	잡	5,084.6	5,084.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3	운서동	2864	9	잡	6,014.3	6,014.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4	운서동	2864	10	잡	5,476.9	5,476.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5	운서동	2864	11	잡	1,320.0	1,32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6	운서동	2864	12	잡	273.6	273.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7	운서동	2864	13	잡	3,205.7	3,205.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8	운서동	2864	14	잡	639.4	639.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89	운서동	2864	15	잡	289.0	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0	운서동	2864	16	잡	4,735.2	4,735.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1	운서동	2864	17	잡	1,148.1	1,148.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2	운서동	2864	18	잡	13,585.8	13,585.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3	운서동	2864	19	잡	2,791.5	2,79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4	운서동	2864	20	잡	1,390.9	1,390.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5	운서동	2864	21	잡	7,361.6	7,361.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6	운서동	2864	22	잡	8,881.5	8,88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7	운서동	2864	23	잡	364.2	364.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8	운서동	2864	24	잡	1,400.5	1,400.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399	운서동	2864	25	잡	5,222.6	5,222.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0	운서동	2864	26	잡	8,958.0	8,958.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1	운서동	2864	27	잡	7,822.3	7,822.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2	운서동	2864	28	잡	5,923.0	5,92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3	운서동	2864	29	잡	61.6	61.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4	운서동	2864	30	잡	8,932.5	8,932.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5	운서동	2864	31	잡	8,604.3	8,604.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6	운서동	2864	33	잡	64,596.8	64,596.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7	운서동	2864	34	잡	2,363.9	2,363.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8	운서동	2864	35	잡	435.6	435.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09	운서동	2864	36	도	1,076.7	1,076.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0	운서동	2864	37	도	872.1	872.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1	운서동	2864	38	도	2,000.2	2,000.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2	운서동	2864	39	도	435.6	435.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3	운서동	2864	40	도	583.5	583.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4	운서동	2864	41	도	5,348.1	5,348.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5	운서동	2864	42	도	320.9	320.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6	운서동	2864	43	도	1,901.9	1,901.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7	운서동	2864	44	도	2,625.1	2,625.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8	운서동	2864	45	도	518.7	518.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19	운서동	2864	46	도	3,785.5	3,785.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0	운서동	2864	47	도	1,234.5	1,234.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1	운서동	2864	48	잡	6,748.0	6,748.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422	운서동	2864	49	잡	63.0	63.0	국(건설교통부)		제2산물
423	운서동	2864	50	잡	303.7	303.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4	운서동	2864	51	잡	411.4	411.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5	운서동	2864	52	잡	15,236.0	15,23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6	운서동	2864	61	잡	4,654.8	4,654.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7	운서동	2864	64	잡	10,664.9	10,664.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8	운서동	2864	67	잡	8,926.8	8,926.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429	운서동	2874		대	141,137.2	141,137.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0	운서동	2874	1	도	376.9	376.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1	운서동	2874	6	도	7,262.5	7,262.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2	운서동	2874	8	공	13,604.3	13,604.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433	운서동	2874	9	도	15,011.6	15,011.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4	운서동	2874	11	공	11,806.0	11,80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5	운서동	2874	12	잡	2,740.0	2,74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6	운서동	2874	13	잡	216.1	216.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7	운서동	2877		잡	98,202.5	98,202.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8	운서동	2877	1	잡	24,188.3	24,188.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39	운서동	2877	5	잡	326.9	326.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40	운서동	2877	6	잡	20,002.9	20,002.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41	운서동	2877	7	잡	2,061.3	2,061.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442	운서동	2878		도	257,327.2	226,931.1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MRO
443	운서동	2954		유	1,530,926.2	1,530,926.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44	운서동	2955		잡	2,224,320.5	2,224,320.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45	운서동	2956		잡	42,759.3	42,759.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446	운서동	2957		잡	1,938,404.7	1,938,404.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47	운서동	2957	1	도	30,205.4	30,205.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448	운서동	2957	2	도	10,913.8	10,913.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49	운서동	2957	3	잡	53,577.9	53,577.9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MRO
450	운서동	2957	4	잡	15,559.1	15,559.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51	운서동	2958		잡	36,781.0	36,78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52	운서동	2959		잡	127,294.6	127,294.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53	운서동	2959	1	도	21,885.5	21,885.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54	운서동	2959	2	잡	42,987.5	42,987.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455	운서동	3165	1	창	6,527.2	6,527.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56	운서동	3165	2	창	9,991.8	9,99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57	운서동	3165	3	창	6,973.1	6,973.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58	운서동	3165	4	창	14,949.6	14,949.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59	운서동	3165	5	창	6,645.9	6,645.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0	운서동	3165	6	창	9,446.3	9,446.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1	운서동	3165	7	창	9,571.8	9,57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2	운서동	3166	1	창	16,365.8	16,365.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3	운서동	3166	2	창	16,357.4	16,357.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4	운서동	3166	3	창	16,492.0	16,49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5	운서동	3166	4	창	16,490.4	16,490.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6	운서동	3166	5	공	2,198.2	2,198.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7	운서동	3167	1	공	11,277.1	11,277.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8	운서동	3167	2	차	10,007.7	10,007.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69	운서동	3167	3	대	8,664.1	8,664.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0	운서동	3167	4	대	4,186.9	4,186.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1	운서동	3167	5	차	6,166.6	6,166.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2	운서동	3167	6	대	3,733.2	3,733.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3	운서동	3167	7	대	6,088.5	6,088.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4	운서동	3167	8	대	4,880.2	4,880.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5	운서동	3167	9	도	6,837.3	6,837.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6	운서동	3167	10	도	482.8	482.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7	운서동	3167	11	도	299.6	299.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8	운서동	3167	12	도	337.6	337.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79	운서동	3167	13	공	1,977.6	1,977.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0	운서동	3167	14	공	446.0	446.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1	운서동	3168	1	창	16,743.4	16,743.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2	운서동	3168	2	창	16,603.8	16,603.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3	운서동	3168	3	창	19,246.4	19,246.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4	운서동	3168	4	공	4,116.6	4,116.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5	운서동	3169	1	창	16,368.4	16,368.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6	운서동	3169	2	창	10,038.4	10,038.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7	운서동	3169	3	창	9,640.3	9,640.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8	운서동	3169	4	창	7,355.0	7,35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89	운서동	3169	5	창	4,647.9	4,647.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490	운서동	3169	6	창	4,609.0	4,609.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1	운서동	3169	7	공	2,194.7	2,194.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2	운서동	3170	1	창	5,362.8	5,362.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3	운서동	3170	2	창	6,710.7	6,710.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4	운서동	3170	3	창	9,544.9	9,544.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5	운서동	3170	4	창	6,986.1	6,98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6	운서동	3170	5	창	6,684.9	6,684.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7	운서동	3170	6	창	13,798.8	13,798.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8	운서동	3170	7	차	8,782.5	8,782.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499	운서동	3170	8	창	16,321.5	16,32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0	운서동	3170	9	공	2,362.1	2,362.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1	운서동	3171	1	창	15,996.9	15,996.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2	운서동	3171	2	창	9,290.0	9,29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3	운서동	3171	3	창	6,658.8	6,658.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4	운서동	3171	4	공	2,979.9	2,979.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5	운서동	3172	1	창	79,071.1	79,071.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6	운서동	3172	2	창	9,052.7	9,052.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7	운서동	3172	3	창	8,895.0	8,8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8	운서동	3173		창	38,347.7	38,347.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09	운서동	3174		잡	5,440.0	5,44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0	운서동	3175		공	20,578.6	20,578.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1	운서동	3176		유	178,094.4	173,027.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512	운서동	3177	1	공	5,723.2	5,723.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3	운서동	3177	2	도	13,274.0	13,27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4	운서동	3177	3	공	2,793.4	2,793.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5	운서동	3177	4	공	2,678.1	2,678.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6	운서동	3177	5	도	617.8	617.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7	운서동	3177	6	공	2,755.3	2,755.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8	운서동	3177	7	공	2,875.7	2,875.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19	운서동	3177	8	도	921.5	921.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0	운서동	3177	9	공	2,707.8	2,707.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1	운서동	3177	10	공	2,864.8	2,864.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2	운서동	3177	11	도	22,460.5	22,460.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3	운서동	3177	12	공	2,617.1	2,617.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4	운서동	3178	1	공	3,462.4	3,462.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5	운서동	3179		공	30,208.4	30,208.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6	운서동	3180		공	8,297.1	8,297.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7	운서동	3181	1	도	830.4	830.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8	운서동	3182		도	38,062.2	38,062.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29	운서동	3183		도	24,321.8	24,32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0	운서동	3184		도	22,408.3	22,408.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1	운서동	3185	1	도	853.9	853.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2	운서동	3186		도	5,709.1	5,709.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3	운서동	3187		도	6,007.7	6,007.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4	운서동	3188		도	4,733.3	4,733.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5	운서동	3189		도	25,550.9	25,550.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6	운서동	3190		도	30,582.9	30,582.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7	운서동	3191		도	7,553.3	7,553.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8	운서동	3195		잡	62,961.8	62,96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39	운서동	3195	1	잡	63,337.8	63,337.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0	운서동	3195	2	잡	14,527.4	14,527.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1	운서동	3195	3	도	58.5	58.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2	운서동	3195	4	공	1,439.0	1,439.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3	운서동	3195	5	잡	3.1	3.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4	운서동	3195	6	잡	803.4	803.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5	운서동	3195	7	공	1,769.9	1,769.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6	운서동	3195	8	잡	12.6	12.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547	운서동	3195	9	공	2,481.4	2,481.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8	운서동	3195	11	공	13,148.4	13,148.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49	운서동	3196		체	327,951.7	92,404.3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550	운서동	3196	2	도	16,589.4	12,461.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551	운서동	3198		잡	93,761.4	456.4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552	운서동	3199		잡	38,939.7	28,132.6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553	운서동	3200		잡	9,321.8	9,321.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554	운서동	3215		체	655,615.0	655,61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555	운서동	3215	2	도	3,851.8	3,851.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556	운서동	3215	3	대	2,465.4	2,465.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
557	운서동	3230		구	420,369.1	420,369.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IBC-III_MRO
558	운서동	3233		잡	448,431.7	448,431.7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59	운서동	3233	2	잡	246,975.5	246,975.5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0	운서동	3233	3	잡	180,512.6	180,512.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1	운서동	3233	4	잡	119,323.1	119,323.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2	운서동	3233	5	잡	42,843.5	25,499.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MRO
563	운서동	3233	18	구	18,096.0	18,09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4	운서동	3233	19	구	21,074.1	21,074.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5	운서동	3233	20	구	24,565.6	24,565.6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6	운서동	3233	21	구	18,643.8	18,643.8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MRO
567	운서동	3233	34	도	15,059.1	4,278.5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MRO
568	운서동	3233	35	잡	27,101.0	17,025.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MRO
569	운서동	3240		체	28,120.9	28.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1산물
570	운서동	3243		잡	154,558.5	154,558.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1	운서동	3243	1	잡	29,829.7	29,829.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2	운서동	3243	2	잡	29,406.8	29,406.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3	운서동	3243	3	잡	31,998.7	31,998.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4	운서동	3243	5	잡	127,195.9	127,195.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5	운서동	3243	7	공	9,911.3	9,911.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6	운서동	3243	9	도	181.7	181.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7	운서동	3243	10	공	3,681.6	3,681.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8	운서동	3243	11	도	1,222.9	1,222.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79	운서동	3243	12	도	19,776.1	19,77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0	운서동	3243	13	공	2,658.9	2,658.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1	운서동	3243	14	공	6,159.4	6,159.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2	운서동	3243	15	도	10,080.8	10,080.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3	운서동	3243	16	공	3,603.4	3,603.4			제1산물
584	운서동	3243	17	도	22,206.8	22,206.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5	운서동	3243	18	공	5,874.7	5,874.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6	운서동	3243	19	체	16,515.6	16,515.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7	운서동	3243	21	도	5,054.3	5,054.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8	운서동	3243	22	도	8,032.2	8,032.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89	운서동	3243	23	공	6,880.7	6,880.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0	운서동	3243	24	공	4,092.2	4,092.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1	운서동	3243	25	도	5,156.8	5,156.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2	운서동	3243	26	창	13,762.0	13,76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3	운서동	3243	27	공	2,057.3	2,057.3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4	운서동	3243	28	도	7,184.0	7,18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5	운서동	3243	29	공	2,048.9	2,048.9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6	운서동	3243	30	잡	12,819.5	12,819.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7	운서동	3243	31	공	2,393.0	2,39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8	운서동	3243	32	공	1,686.1	1,68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599	운서동	3243	33	공	556.1	556.1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0	운서동	3243	34	잡	40,700.7	40,700.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1	운서동	3244		잡	10,729.4	10,729.4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2	운서동	3244	1	대	224.8	224.8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603	운서동	3244	2	공	536.2	536.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4	운서동	3244	3	공	2,326.7	2,326.7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5	운서동	3244	5	도	5,701.2	5,701.2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6	운서동	산 327		임	3,441.0	3,44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7	운서동	산 330	1	임	9,190.0	9,190.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8	운서동	산 331	1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09	운서동	산 345	1	임	49,097.0	49,097.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0	운서동	산 349		임	56,132.0	56,13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1	운서동	산 350	10	임	1,322.0	1,322.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2	운서동	산 350	23	임	2,843.0	2,843.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3	운서동	산 357	1	임	21,987.0	21,987.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4	운서동	산 405	1	임	251.0	251.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산물
615	운서동	산 443		임	209,544.0	122,307.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제2산물
616	운서동	산 449		묘	564.0	564.0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산물
617	운서동	미등록지			1,610.4	1,610.4			제1산물
618	을왕동	1		답	142.0	142.0	이정의		IBC-Ⅲ_INS
619	을왕동	2		답	431.0	431.0	이정의		IBC-Ⅲ_INS
620	을왕동	3		답	2,889.0	2,88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1	을왕동	6		답	268.0	268.0	이정의		IBC-Ⅲ_INS
622	을왕동	7		답	388.0	3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3	을왕동	8		답	102.0	102.0	이용구		IBC-Ⅲ_INS
624	을왕동	8	1	전	2,450.0	2,4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5	을왕동	8	2	전	242.0	24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6	을왕동	8	3	임	1,303.0	1,30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7	을왕동	8	4	임	821.0	82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8	을왕동	8	5	임	1,150.0	1,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29	을왕동	9		답	3,364.0	3,36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0	을왕동	9	1	전	1,021.0	1,02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1	을왕동	9	2	전	403.0	40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2	을왕동	9	3	답	532.0	53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3	을왕동	9	4	답	662.0	66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4	을왕동	10		답	1,190.0	1,19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5	을왕동	10	1	임	24,153.0	24,1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6	을왕동	10	2	전	22,669.0	22,66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7	을왕동	11	1	전	444.0	44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8	을왕동	11	2	답	1,382.0	1,3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39	을왕동	11	4	전	320.0	32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0	을왕동	12		전	1,078.0	1,07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1	을왕동	13		전	3,863.0	3,86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2	을왕동	13	1	잡	3,015.0	3,01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3	을왕동	13	2	잡	813.0	81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4	을왕동	13	3	염	1,826.0	1,82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5	을왕동	13	4	전	2,576.0	2,57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6	을왕동	13	5	잡	1,825.0	1,82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7	을왕동	13	6	염	3,306.0	3,30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8	을왕동	13	7	염	4,972.0	4,97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49	을왕동	13	8	유	5,150.0	5,1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0	을왕동	13	9	염	1,450.0	1,4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1	을왕동	13	10	염	2,827.0	2,82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2	을왕동	13	11	염	2,479.0	2,47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3	을왕동	13	13	염	1,001.0	1,00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4	을왕동	14		답	407.0	40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5	을왕동	15		전	3,345.0	3,34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6	을왕동	15	1	전	1,200.0	1,20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7	을왕동	15	2	전	3,018.0	3,01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8	을왕동	15	3	전	4,641.0	4,64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59	을왕동	15	7	전	3,017.0	3,01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660	을왕동	15	8	전	3,017.0	3,01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1	을왕동	15	10	전	3,306.0	3,30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2	을왕동	15	11	임	1,816.0	1,8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3	을왕동	16		답	1,048.0	1,04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4	을왕동	16	1	잡	1,862.0	1,86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5	을왕동	16	2	답	176.0	17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6	을왕동	16	3	전	486.0	48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7	을왕동	16	4	도	59.0	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8	을왕동	16	5	전	334.0	33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69	을왕동	16	10	잡	2,450.0	2,4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0	을왕동	16	20	잡	447.0	447.0	국(국토교통부)		IBC-III_INS
671	을왕동	16	21	도	67.0	67.0	국(국토교통부)		IBC-III_INS
672	을왕동	16	22	잡	4,343.0	4,343.0	국(기획재정부)		IBC-III_INS
673	을왕동	17		답	168.0	16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4	을왕동	17	1	임	552.0	552.0	인천광역시중구		IBC-III_INS
675	을왕동	17	2	임	54.0	5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6	을왕동	18		답	595.0	59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7	을왕동	19		답	446.0	44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8	을왕동	19	1	답	790.0	79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79	을왕동	20		답	116.0	116.0	유종국외5인		IBC-III_INS
680	을왕동	21		답	1,838.0	1,83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1	을왕동	22		전	645.0	64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2	을왕동	22	1	전	529.0	52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3	을왕동	22	2	전	516.0	5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4	을왕동	22	3	전	787.0	78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5	을왕동	22	4	전	750.0	75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6	을왕동	23		전	323.0	32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7	을왕동	24		전	116.0	1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8	을왕동	25		답	592.0	59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89	을왕동	26		답	713.0	71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0	을왕동	27		답	565.0	56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1	을왕동	28		답	846.0	84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2	을왕동	30		답	258.0	25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3	을왕동	31		답	444.0	44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4	을왕동	32		답	86.0	86.0	유종국외5인		IBC-III_INS
695	을왕동	33		답	253.0	2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6	을왕동	355	4	전	280.0	28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7	을왕동	356	1	전	532.0	53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698	을왕동	488	1	답	145.0	145.0	인천광역시		IBC-III_INS
699	을왕동	488	2	전	103.0	103.0	인천광역시		IBC-III_INS
700	을왕동	488	7	임	120.0	12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1	을왕동	488	8	전	574.0	57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2	을왕동	535	4	전	216.0	2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3	을왕동	540		전	193.0	19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4	을왕동	541		전	1,151.0	1,15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5	을왕동	543		전	149.0	14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6	을왕동	544		전	162.0	16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7	을왕동	545		전	170.0	17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8	을왕동	546		전	645.0	64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09	을왕동	547		전	526.0	52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0	을왕동	548	1	전	661.0	66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1	을왕동	548	2	대	14.0	14.0	정응두		IBC-III_INS
712	을왕동	549	1	임	1,911.0	1,91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3	을왕동	549	2	대	173.0	17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4	을왕동	549	3	임	3.0	3.0	인천국제공항공사외7인		IBC-III_INS
715	을왕동	549	6	임	172.0	17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6	을왕동	549	9	전	823.0	82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717	을왕동	550		전	1,051.0	1,051.0	김광국		IBC-III_INS
718	을왕동	551		전	608.0	60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19	을왕동	552		전	3,300.0	3,30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0	을왕동	553		전	392.0	39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1	을왕동	554		전	2,099.0	2,09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2	을왕동	555		전	155.0	15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3	을왕동	556		전	433.0	43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4	을왕동	557		전	522.0	52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5	을왕동	557	1	전	559.0	5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6	을왕동	558		전	506.0	50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7	을왕동	559	1	전	1,878.0	1,87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8	을왕동	559	2	전	327.0	32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29	을왕동	560		전	793.0	79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0	을왕동	561		전	304.0	30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1	을왕동	562		전	185.0	18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2	을왕동	563		전	912.0	91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3	을왕동	564		전	1,415.0	1,41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4	을왕동	565		전	274.0	27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5	을왕동	566		전	1,448.0	1,44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6	을왕동	567		전	1,074.0	1,07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7	을왕동	567	1	전	390.0	39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8	을왕동	568		전	967.0	96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39	을왕동	568	1	전	967.0	96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0	을왕동	569		전	774.0	77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1	을왕동	569	1	전	2,086.0	2,08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2	을왕동	569	2	전	1,980.0	1,98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3	을왕동	570		전	803.0	80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4	을왕동	571		전	416.0	41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5	을왕동	572		답	397.0	39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6	을왕동	573	1	임	4,133.0	4,13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7	을왕동	573	2	전	2,185.0	2,18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8	을왕동	573	3	전	1,282.0	1,2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49	을왕동	573	4	전	929.0	92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0	을왕동	574		전	155.0	15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1	을왕동	575		전	323.0	32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2	을왕동	587		전	292.0	29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3	을왕동	588	1	답	410.0	41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4	을왕동	588	2	답	769.0	76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5	을왕동	589		전	80.0	8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6	을왕동	590		답	359.0	3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7	을왕동	591		답	456.0	45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8	을왕동	592		임	1,577.0	1,57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59	을왕동	593		답	466.0	46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0	을왕동	594		답	314.0	31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1	을왕동	835	3	도	4,592.1	4,592.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2	을왕동	835	4	도	4,729.1	4,729.1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3	을왕동	835	5	도	3,770.2	3,770.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4	을왕동	835	6	도	371.2	371.2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5	을왕동	926		대	430.0	43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66	을왕동	926	1	잡	620.0	620.0	국(국방부)		IBC-III_INS
767	을왕동	926	2	잡	5,718.0	5,718.0	국(국방부)		IBC-III_INS
768	을왕동	927		대	897.0	897.0	홍성민외1인		IBC-III_INS
769	을왕동	927	1	대	120.0	120.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0	을왕동	927	2	도	95.0	9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1	을왕동	927	3	대	75.0	7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2	을왕동	928	12	도	689.0	68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3	을왕동	928	18	도	942.0	94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774	을왕동	928	19	도	94.0	9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5	을왕동	930	1	전	3,413.0	3,41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6	을왕동	930	4	전	1,399.0	1,39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7	을왕동	930	5	도	397.0	39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8	을왕동	930	10	도	188.0	1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79	을왕동	931		전	682.0	6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0	을왕동	931	1	전	4,333.0	4,33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1	을왕동	931	2	전	2,241.0	2,24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2	을왕동	931	3	전	52.0	5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3	을왕동	931	4	도	2.0	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4	을왕동	931	7	전	24.0	2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5	을왕동	931	8	전	2.0	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6	을왕동	931	9	전	34.0	3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7	을왕동	931	10	전	1,057.0	1,05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8	을왕동	931	12	도	351.0	35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89	을왕동	931	15	도	91.0	9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0	을왕동	976	16	도	3,587.6	1,007.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
791	을왕동	976	27	도	2,033.7	311.7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
792	을왕동	976	35	도	3,263.4	175.2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III_INS
793	을왕동	976	41	도	85.4	85.4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4	을왕동	976	52	도	13.3	13.3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5	을왕동	976	56	도	147.9	92.4	국(건설교통부)	부분편입	IBC-III_INS
796	을왕동	산 1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7	을왕동	산 1	1	임	264.0	26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8	을왕동	산 1	2	임	2,645.0	2,64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799	을왕동	산 1	3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0	을왕동	산 1	4	임	5,289.0	5,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1	을왕동	산 1	5	임	5,289.0	5,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2	을왕동	산 1	6	임	1,983.0	1,98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3	을왕동	산 1	8	임	1,984.0	1,98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4	을왕동	산 1	9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5	을왕동	산 1	10	임	1,983.0	1,98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6	을왕동	산 1	11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7	을왕동	산 1	12	임	1,653.0	1,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8	을왕동	산 2	1	임	2,651.0	2,65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09	을왕동	산 2	8	임	2,177.0	2,17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0	을왕동	산 2	9	임	2,737.0	2,73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1	을왕동	산 2	10	임	1,326.0	1,32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2	을왕동	산 2	11	임	1,326.0	1,32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3	을왕동	산 2	12	임	2,652.0	2,65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4	을왕동	산 2	13	임	2,177.0	2,17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5	을왕동	산 2	14	임	1,088.0	1,08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6	을왕동	산 2	15	임	2,737.0	2,73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7	을왕동	산 2	16	임	1,326.0	1,32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8	을왕동	산 2	17	임	1,089.0	1,08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19	을왕동	산 2	18	임	663.0	66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0	을왕동	산 2	19	임	663.0	66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1	을왕동	산 3	3	임	1,656.0	1,65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2	을왕동	산 3	6	임	1,159.0	1,1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3	을왕동	산 3	8	임	834.0	83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4	을왕동	산 4		임	5,148.0	5,148.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5	을왕동	산 4	1	임	9,629.0	9,62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6	을왕동	산 4	2	임	2,953.0	2,9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7	을왕동	산 4	3	임	1,941.0	1,94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8	을왕동	산 4	5	임	3,059.0	3,059.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29	을왕동	산 4	8	임	10,832.0	10,83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830	을왕동	산 4	9	임	507.0	507.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III_INS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831	을왕동	산 4	11	임	1,561.0	1,56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2	을왕동	산 5	1	임	33,451.0	33,45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3	을왕동	산 8	9	임	703.0	70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4	을왕동	산 10		임	357.0	357.0	인천광역시중구		IBC-Ⅲ_INS
835	을왕동	산 11	1	임	15,174.0	15,17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6	을왕동	산 104		임	4,685.0	4,68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7	을왕동	산 105	5	임	898.0	897.0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분편입	IBC-Ⅲ_INS
838	을왕동	산 105	9	임	114.0	11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39	을왕동	산 105	11	임	154.0	154.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40	을왕동	산 105	18	임	861.0	861.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41	을왕동	산 105	23	임	255.0	255.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42	을왕동	산 105	29	임	653.0	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43	을왕동	산 148		도	282.0	282.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844	을왕동	산 148	1	도	56.0	56.0	인천국제공항공사		IBC-Ⅲ_INS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 1>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 032-453-7583)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개발팀(☎ 032-741-2272)에서 열람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현황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계			17,284,000.0	감) 26,637.8
변경				17,257,362.2	
기정	1	영종 제1산업물류단지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837,179.2	감) 504.9
변경			중구 운서동 3167-4번지 일원	2,836,674.3	
기정	2	영종 제2산업물류단지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875,834.4	감) 447.4
변경			중구 운서동 2859-4번지 일원	2,875,387.0	
기정	3	IBC-I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2,427,020.6	감) 6,900.9
변경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2,420,119.7	
기정	4-1	IBC-Ⅲ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4,367,000.0	증) 8,334.6
변경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375,334.6	
기정	4-2	IBC-Ⅲ-1	영종, 용유동 (인천공항 일원)	4,776,965.8	감) 27,119.2
변경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4,749,8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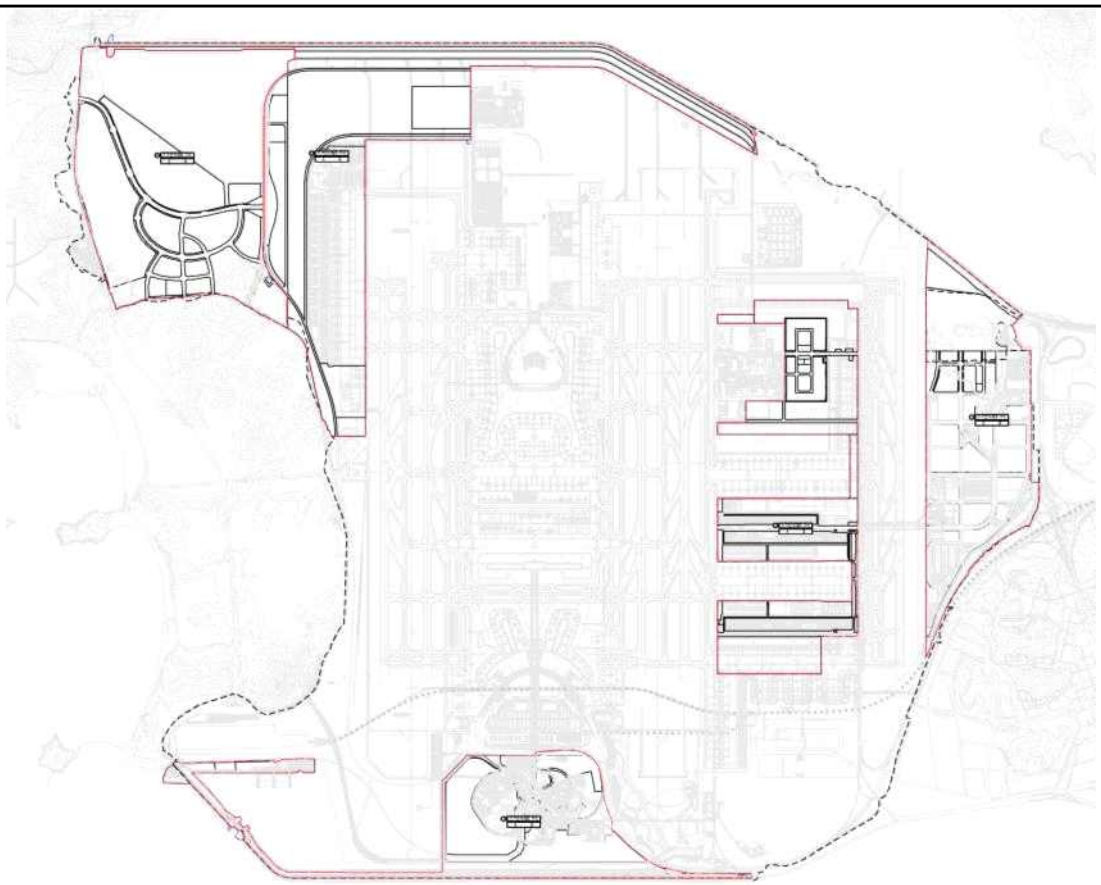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 제1산업물류단지【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총계						2,150,329.3	2,188,136.5							
소계				업무용지		17,731.2	17,731.2							
C01-2		C01-2		업무용지	3167-3	4,186.9	4,186.9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C01-3		C01-3		업무용지	3167-4	8,664.1	8,664.1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C01-4		C01-4		업무용지	3167-8	4,880.2	4,880.2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소계				산업물류		1,720,237.4	1,724,652.4							
I1-1		I1-1		산업물류	3243	53,305.3	50,773.4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2		I1-2		산업물류	1827-4	30,826.3	30,832.9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3		I1-3		산업물류	1827-4	32,221.7	32,170.4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4	1	I1-4	1	산업물류	3243-26	13,762.0	13,762.0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4	2	I1-4	2	산업물류	3243-34	13,440.0	13,440.0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4	3	I1-4	3	산업물류	3243-34	9,086.9	9,086.9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4	4	I1-4	4	산업물류	3243-34	9,086.9	9,086.9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4	5	I1-4	5	산업물류	3243-34	9,086.9	9,086.9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4	6	I1-4	6	산업물류	3243-34	10,215.9	10,215.9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5		I1-5	1	산업물류	3243-30	28,777.6	12,819.5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5		I1-5	2	산업물류	3243		15,839.0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6		I1-6	1	산업물류	3244	26,019.0	13,000.0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6		I1-6	2	산업물류	3195-2		12,259.9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7	1	I1-7	1	산업물류	3243-1	29,849.0	29,829.7	별표#1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7	2	I1-7	2	산업물류	3243-2	29,406.8	29,406.8	별표#1	산업물류	70	350	70	350	
I1-8		I1-8		산업물류	3243-3	32,085.6	31,998.7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9		I1-9		산업물류	3195	63,006.3	62,961.8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0		I1-10		산업물류	3243-5	65,261.4	127,195.9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1		I1-10		산업물류		61,548.2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2		I1-12		산업물류	3195-1	66,030.7	63,337.8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1	산업물류	3165-1	64,105.7	6,527.2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2	산업물류	3165-2		9,991.8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3	산업물류	3165-3		6,973.1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4	산업물류	3165-4		8,306.3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5	산업물류	3165-4		6,643.3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6	산업물류	3165-5		6,645.9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7	산업물류	3165-6		9,446.3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3		I1-13	8	산업물류	3165-7		9,571.8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4		I1-14		산업물류	3166-1	65,664.9	65,705.6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5		I1-15	1	산업물류	3169-1	52,613.4	16,368.4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5		I1-15	2	산업물류	3169-2		19,678.7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5		I1-15	3	산업물류	3169-4		7,355.0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5		I1-15	4	산업물류	3169-5		4,647.9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5		I1-15	5	산업물류	3169-6		4,609.0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I1-16		I1-16		산업물류	3168-1	52,593.3	52,593.6	별표#1	산업물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I1-17		I1-17			3171-1	31,917.9	31,805.9							
I1-18		I1-18	1		3170-1	65,410.0	5,362.8							
			2		3170-2		3,314.9							
			3		3170-2		3,395.8							
			4		3170-3		9,544.9							
			5		3170-4		6,986.1							
			6		3170-5		6,684.9							
			7		3170-6		13,798.8							
			8		3170-8		16,321.5							
I1-19		I1-19	1		3172-1	97,018.8	79,071.1							
			2		3172-2		9,052.7							
			3		3172-3		8,895.0							
I1-20		I1-20			3173	38,347.7	38,347.7							
I1-21		I1-21			2508-121	430,614.0	445,343.7					20	80	삼목일도(공항시설외)
I1-22		I1-22			산349	22,363.2	20,509.3					70	350	
I1-23		I1-23			산349	22,267.8	20,456.4							
I1-24		I1-24			2508-121	11,426.6	10,715.0							
I1-25		I1-25			3167-6	3,733.2	3,733.2							
I1-26		I1-26			3167-7	6,088.5	6,088.5							
유1-1		유1-1			3176	173,055.9	173,055.9					-	-	토지이용계획상 산업물류용지
문화1-1		문화1-1		문화시설	2508-133	50,049.9	44,691.3	문화시설				40	80	
소계						127,555.4	117,919.4							
공급1-1		공급1-1	1	공급시설	2860-1	122,115.4	79,152.4	공급처리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80	발전시설
			2		2860-3		1,712.9							가스공급설비
			3		2860-4		2,983.0							변전시설
			4		2860-6		28,631.1							폐기물및재활용
공급1-2		공급1-2			3174	5,440.0	5,440.0							배수관리소
VC1-1		VC1-1		문화재		71,802.6	63,689.0	문화재				2	4	
소계						36,133.8	36,134.7							
주1-1		주1-1		주차장	1827-4	11,177.0	11,177.9	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	4	
주1-2		주1-2			3167-2	10,007.7	10,007.7							
주1-3		주1-3			3170-7	8,782.5	8,782.5							
주1-4		주1-4			3167-5	6,166.6	6,166.6							
소계						-	1,028.2							
공항1-1		공항1-1		공항시설	3244	-	224.8	-	공항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80	자유무역지역경비동
공항1-2		공항1-2			3195-6	-	803.4							신설(통신설비)
유보1-1		유보1-1		유보지	3196	126,819.0	182,290.3	유보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0	80	

주1) 밀도계획(용적률, 건폐율)은 공항시설 조성계획을 적용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제1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업무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1-2~ CO1-4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산업물류시설【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1~ I1-10, I1-11~ I1-26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창고시설 / 공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기숙사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주1)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6호(2007.09.04.)
수출 목적 제조업 / 수출입거래 목적 도매업 /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 입주기업체 지원 업종 / 공공기관 /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유류판매업, 체인화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인력공급업, 경비업, 경보시스템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다) 문화시설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문화1-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공급처리시설【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	공급1-1~공급1-2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발전시설 및 변전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업무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주차장【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주1-1 ~ 주1-4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바) 공항시설【신설】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항	공항1-1~공항1-2	허용용도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장 / 공공화장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사) 기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C 유보	VC1-1 (문화재) 유보1-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 / 화장실 등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제1산업물류단지)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제1산업물류단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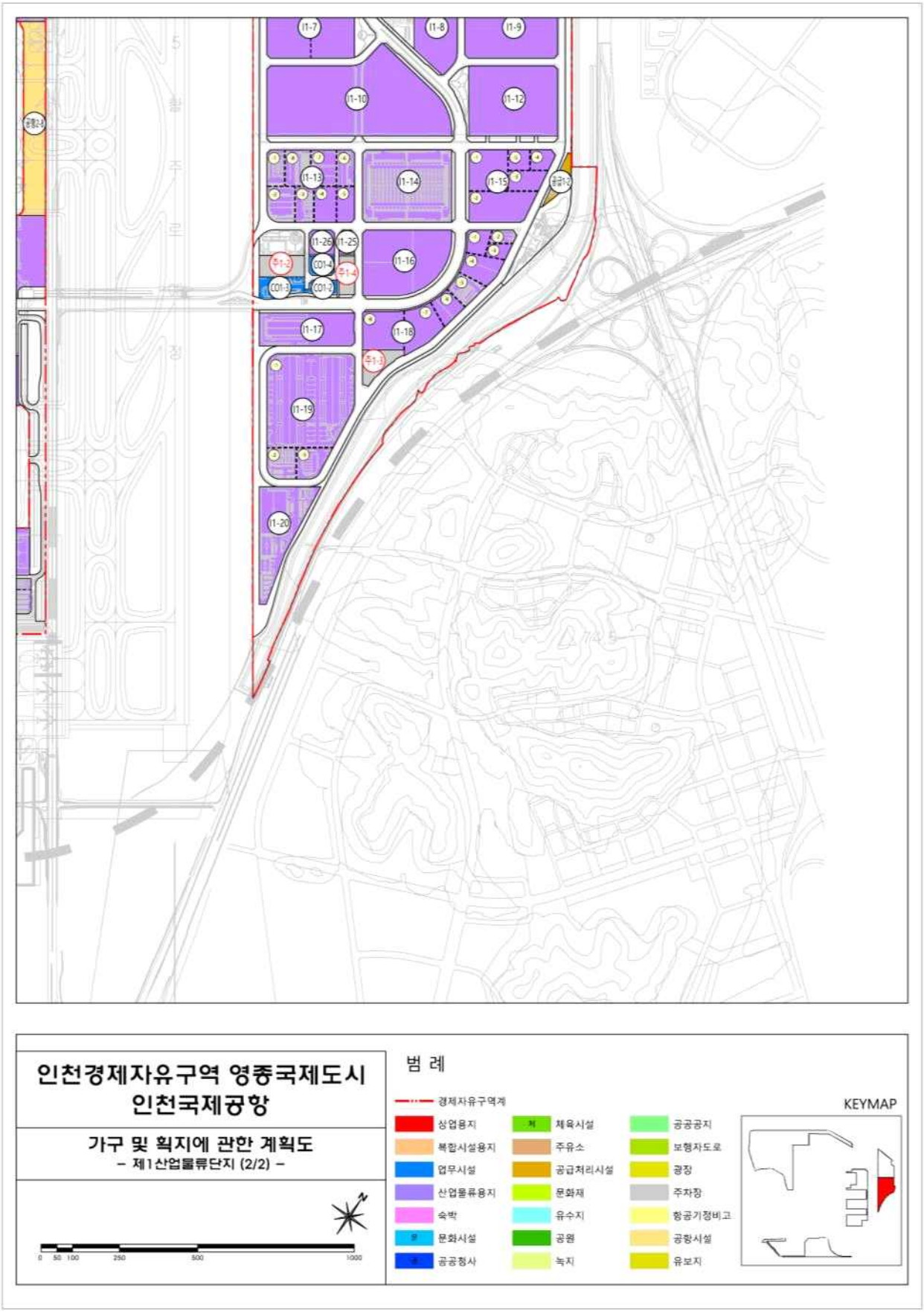

■ 제2산업물류단지【변경】

○ 토지이용계획상 하나의 블록(산업물류용지)를 지구단위계획상 세부토지용도로 관리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계획	세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계							2,875,834.4	2,467,962.7							I2-1하나의블록을현황으로분할
I2-1		CO2-1		산업물류	업무용지		-	3,311.5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제3물류단지
소계				산업물류	산업물류		2,846,021.7	2,324,969.3							
I2-1		I2-1				2843-1	-	361,361.9	별표#1	산업물류			70	350	
		I2-2	1			2851-20		4,328.1					-	-	I2-3_1부설주차장
			2			2851-20		10,756.9					-	-	I2-3_1부설주차장
			3			2851-20		2,754.2					-	-	I2-3_1부설주차장
			4			2851-20		6,837.4					70	350	I2-3_1부설건축물
			5			2851-20		5,029.5					70	350	
			6			2851-20		12,486.2					-	-	I2-2_8부설주차장
			7			2851-20		5,108.4					-	-	I2-3_2부설주차장
			8			2851-20		12,682.9					70	350	
			9			2851-20		3,170.2					-	-	I2-3_2부설주차장
			10			2851-20		7,870.2					-	-	I2-3_2부설주차장
			11			2851-20		2,391.6					-	-	I2-2_12부설주차장
			12			2851-20		5,937.6					70	350	
			13			2851-20		3,090.5					-	-	I2-3_3부설주차장
			14			2851-20		7,672.3					-	-	I2-2_12부설주차장
			15			2851-20		6,050.5					-	-	I2-3_3부설주차장
			16			2851-20		15,023.7					70	350	
			17			2842-17		5,692.7					-	-	I2-3_4부설주차장
			18			2842-17		13,857.4					-	-	I2-2_16부설주차장
			19			2842-17		6,128.9					-	-	I2-3_5부설주차장
			20			2842-17		13,363.8					-	-	I2-3_5부설주차장
		I2-3	1			2851-20		70,342.7					90	350	화물기계류장과연접지역
			2			2851-20		29,665.0							
			3			2851-20		37,630.1							
			4			2851-20		11,978.3							
			5			2842-16		44,774.5							
		I2-4	1			2859-4		68,921.1					90	350	화물기계류장과연접지역
			2			2859-4		418.9							
			3			2859-4		69,106.3							
			4			2859-4		8,291.7							
			5			2842-3		23,231.8							
			6			2842-8		23,753.0							
		I2-5	1			2859-4		10,754.4					-	-	I2-4_1부설주차장
			2			2859-4		3,876.9					-	-	I2-4_1부설주차장
			3			2859-4		6,347.3					70	350	I2-4_1부설건축물
			4			2859-4		2,306.8					-	-	I2-4_1부설주차장
			5			2859-4		12,437.5					-	-	I2-5_7부설주차장
			6			2859-4		4,282.8					10	50	
			7			2859-4		12,802.2					70	350	
			8			2859-4		3,415.2					-	-	I2-5_7부설주차장
			9			2859-4		12,427.1					-	-	I2-4_3부설주차장
			10			2859-4		4,281.2					10	50	
			11			2859-4		6,456.1					70	350	I2-4_3부설주차장
			12			2859-4		2,346.6					-	-	I2-4_3부설주차장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계획	세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13	산업물류	산업물류	2859-4		15,851.0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	-	I2-4_3부설주차장
			14			2859-4		5,759.5					-	-	I2-4_4부설주차장
			15			2859-3		13,880.2					-	-	I2-4_5부설주차장
			16			2859-3		5,174.8					-	-	I2-4_5부설주차장
			17			2859-3		8,891.9					-	-	I2-4_6부설주차장
			18			2842-6		3,721.5					-	-	I2-4_6부설주차장
		I2-6	1			2172-1		5,977.2					-	-	I2-6_2부설주차장
			2			2165-7		18,028.4					70	350	
			3			2166-7		4,599.3					-	-	I2-7_2부설주차장
			4			2166-7		7,700.8					-	-	I2-7_2부설주차장
			5			산443		4,822.7					10	50	I2-7_3부설주차장
			6			2162		8,024.5					-	-	I2-7_3부설주차장
			7			산443		7,835.1					10	50	I2-7_3부설주차장
			8			산443		11,123.2					-	-	I2-7_4부설주차장
			9			2093		5,974.6					10	50	I2-7_5부설주차장
			10			2093		9,975.3					-	-	I2-7_5부설주차장
		I2-7	1			2172-1		17,192.2					90	350	화물기 계류장 연접지역
			2			2164		39,198.2							
			3			산443		38,884.8							
			4			산443		19,735.0							
			5			2114		30,686.5							
			6			2091-16		45,778.8							
			7			2091-16		20,085.7					70	350	
			8			2091-16		9,456.0					10	50	I2-7_6부설주차장
			9			2091-16		19,548.0					-	-	I2-7_6부설주차장
		I2-8				2242-8		151,692.6					70	350	
		I2-9				2858-1		63,612.7					70	350	
		I2-10				2864-18		253,037.2					70	350	
		I2-11	1			3200		6,558.3					70	350	제3물류단지
			2			3200		8,572.0							
			3			3200		10,664.9							
			4			3200		8,926.8							
			5			3200		19,372.3							
			6			3200		16,459.3							
			7			3200		16,360.5							
		I2-12	1			3200		4,630.0							
			2			3200		4,654.8							
			3			3200		4,596.3							
			4			3200		4,571.8							
		I2-13	1			3200		6,756.0							
			2			3200		7,297.4							
		I2-14				3200		17,574.9							
		I2-15	1			3200		11,373.7							
			2			3200		8,811.3							
			3			3200		12,939.4							
			4			3200		12,163.8							
			5			3200		19,707.5							
			6			3200		19,409.3							
		I2-16				2863-4		275,878.9					70	350	
I2-1		공청2-1		산업물류	공공청사	3200	-	3,270.2	별표#1	공공청사			70	350	제3물류단지
소계				산업물류	주유소		-	5,993.0							
I2-1		주유2-1				2864-7	-	2,038.0	별표#1	주유소			30	60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계획	세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주유2-2				2863-14		1,485.0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주유2-3				2863-5		2,470.0							
I2-1		공급2-1		산업물류	공급처리	2851-20	-	4,514.3	별표#1	공급처리			40	80	
소계				산업물류	주차장		-	18,136.6							
I2-1		주2-1				3200	-	10,444.7	별표#1	주차장			2	4	제3물류단지
		주2-2				3200	-	7,691.9							
소계				산업물류	공항시설		29,812.7	107,767.8							
I2-1		공항2-1				2851-20	-	8,573.3	별표#1	공항시설			40	80	
		공항2-2				2851-20		371.1							
		공항2-3				2843		384.1							
		공항2-4				2859-4		304.7							
		공항2-5				2859-4		15,360.9							
		공항2-6				2182-1		6,212.0							
		공항2-7				2859-2		282.9							
		공항2-8				2091-73		44,153.0							
		공항2-9				3200		481.1							제3물류단지
		공항2-10				3200		252.5							
		공항2-11				2839		1,576.1							
공항2-1		공항2-12		공항시설		2840-6	29,812.7	29,816.1	공항시설				2	5	정비에 따른 시설번호 변경

■ 제2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업무용지【신설】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1-2~ CO1-4	허용용도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산업물류시설(화물터미널 지역)【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기정	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I2-1	I1-2~ I1-7		변경	• 창고시설 / 공장 • 국방·군사시설 (미군사우편터미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산업물류시설(화물터미널 이외의 지역)【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기정	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I2-1	I2-1, I2-8~ I2-16		변경	• 창고시설 / 공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 자동차 관련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화약류저장 제외)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건교부고시제2007-346호) • 운수시설(공항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주1) 자유무역지역 관련 허용 시설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6호(2007.09.04.)
수출 목적 제조업 / 수출입거래 목적 도매업 / 물품 하역·운송·보관·전시 / 입주기업체 지원 업종 / 공공기관 /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교육·훈련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유류판매업, 체인화편의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인력공급업, 경비업, 경보시스템서비스업,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라) 공공청사【신설】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2-1	허용용도	• 업무시설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주유소【신설】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주유2-1~주유2-3	허용용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바) 공급처리시설【신설】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	공급2-1	허용용도	• 방송통신시설(통신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 통신용)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사) 주차장【신설】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주2-1 ~ 주2-2	허용용도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아) 공항시설【추가】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항	공항2-1~ 공항2-12	허용용도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추가)공공세면장 / 공공화장실 / 경비초소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주1) 기정 공항2-1은 공항2-12로 번호변경 및 공항2-1~공항2-11 추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제2산업물류단지) >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제2산업물류단지) >

■ IBC-I【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총계						1,484,342.1	1,480,979.7							
소계						37,898.3	39,091.2							
C3-1		C3-1		상업용지	2850-2	12,138.5	11,366.0	별표#1	상업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350	
C3-2		C3-2			2855	25,759.8	27,725.2					20	80	회센터 (공항시설외)
소계						220,276.5	220,079.6							
MU3-1		MU3-1		복합용지	2874	177,893.5	177,661.7	별표#1	복합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00	파라다이스
MU3-2		MU3-2			2851-48	30,276.3	30,302.7							파라다이스2단계
MU3-3		MU3-3			8251-98	12,106.7	12,115.2							파라다이스2단계
소계						35,177.5	33,192.4							
CO3-1		CO3-1		업무용지	2850-3	7,574.3	7,534.0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400	
CO3-2		CO3-2			2850-5	6,273.1	4,989.1							
CO3-3		CO3-3			2850-6	7,380.8	6,671.5							
CO3-4		CO3-4			2850-7	7,785.5	7,879.3							
CO3-5		CO3-5			2850-13	6,163.8	6,118.5							
소계						78,632.1	83,608.6							
TP3-1		H3-1		숙박용지	2850-8	16,348.1	16,327.9	별표#1	숙박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350	
TP3-2		H3-2			2850-1	13,011.6	16,224.1							
TP3-3		H3-3			2850-4	6,700.5	5,475.2							
TP3-4		H3-4			2877-1	42,571.9	25,585.3							
		H3-5			2877-6		19,996.1							
소계						91,034.4	79,153.5							
공청3-1		공청3-1	1	공공청사	2850	91,034.4	45,476.5	별표#1	공공청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150	정부합동청사
			2		2851-24		2,765.4							종합운동시설관리동
			3		2851-24		5,841.9							어린이집
			4		2851-24		5,892.7							어린이집
			5		2851-33		9,836.1							어린이집
			6		2851-101		9,340.9							어린이집
소계						737,864.1	784,037.3							
체3-1		체3-1	1	체육시설	2851-24	38,939.6	25,640.4	별표#1	체육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10	10	대운동장
			2		2851-23		17,396.3					40	40	스카이돔
			3		2851-106		23,489.3					40	40	테니스장
			4		2851-24		25,250.6					10	10	야구장
체3-2		체3-2			3215	364,653.4	602,962.5					10	10	골프장
체3-3						256,775.2								
체3-4		체3-3			2877	77,495.9	89,298.2					10	20	경정장
주유3-1		주유3-1		주유소	2849	11,658.9	5,833.2	별표#1	주유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60	
소계						37,790.1	57,783.6							
공급3-1		공급3-1	1	공급처리	2850-35	37,790.1	8,210.4	별표#1	공급처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40	100	
			2		2850-36		47,515.6							
			3		2850-9		2,057.6							
소계						43,962.5	38,996.1							
주3-1		주3-1		주차장	2851-76	38,194.5	33,240.5	별표#1	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	4	
주3-2		주3-2			2850-15	5,768.0	5,755.6							
소계						190,047.7	139,204.2							
유보3-1		유보3-1		유보지	2851-101	190,047.7	103,348.1	별표#1	유보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0	80	
		유보3-2			2851-26		20,907.5							
		유보3-3			2851-101		14,948.6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IBC-I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상업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3-1~C3-2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관광휴게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U	MU3-1~MU3-3	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주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 기숙사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업무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O3-1~CO3-5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의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숙박시설 / 운동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숙박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TP	H	TP3-1 ~ TP3-4	H3-1 ~ H3-5		변경	• 숙박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위락시설 / 운동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공공청사【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청	공청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바) 주유소【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	주유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가스(수소) 충전소)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사) 공급처리시설【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	공급3-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업무시설 (주거형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아) 주차장(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주3-1 ~ 주3-2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자) 기타【변경】

■ 유보지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	유보3-1~ 유보3-3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 / 화장실 등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체육시설(신규)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	체3-1~ 체보3-3	허용용도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IBC-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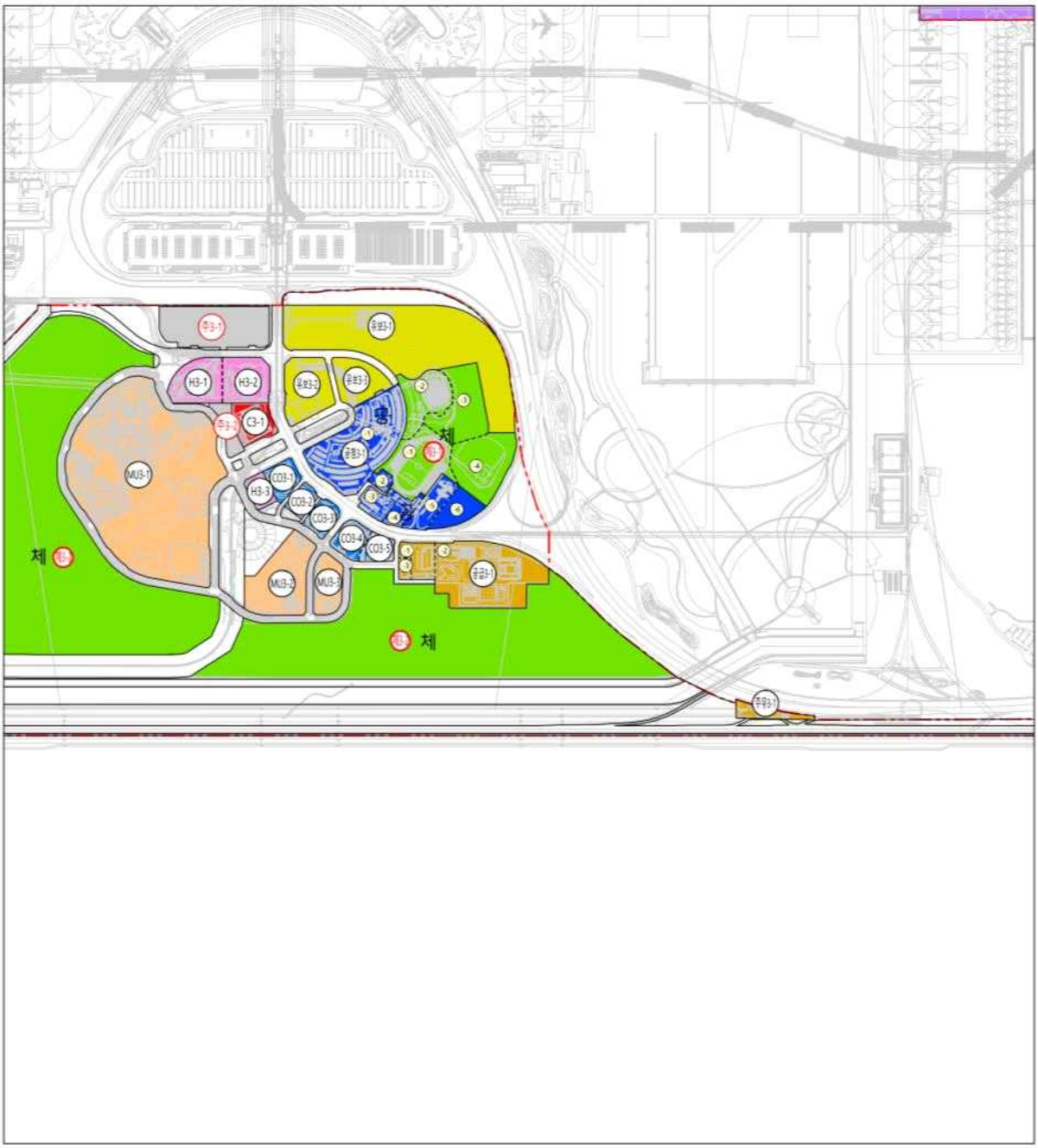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 제1국제업무단지(IBC-I) (1/2) -

0 50 100 250 500 1000

범 례

경제자유구역계
상업용지
복합시설용지
업무시설
산업물류용지
숙박
문화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문화재
유수지
공원
녹지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광장
주차장
항공기정비고
공항시설
유보지

KEYMAP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IBC-I) >

■ IBC-III【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총계						1,807,306.0								인스파이어사업지구
소계				상업용지		90,118.0								
C5-1		C5-1		상업용지	2955	22,269.0		상업용지		70	500	70	500	
C5-2		C5-2			2955	32,577.0								
C5-3		C5-3			2955	35,272.0								
CO5-1		CO5-1		업무용지	2955	80,703.0		업무용지		60	400	60	400	
소계				복합용지		1,610,871.0								
MU5-1	1	MU5-1	1		2955	461,661.0		복합용지		60	300	60	300	
	2		2		2955	82,723.0				60	300	60	300	
MU5-2		MU5-2			2955	114,836.0				60	300	60	300	
MU5-3		MU5-3			2955	92,586.0				60	300	60	300	
MU5-4	1	MU5-4	1		2955	329,393.0				70	350	70	350	
	2		2		2955	401,060.0				60	250	60	250	
MU5-5		MU5-5			2955	55,518.0				70	350	70	350	
MU5-6		MU5-6			2955	43,481.0				70	350	70	350	
MU5-7		MU5-7			2955	29,613.0				70	350	70	350	
문화5-1		문화5-1		문화시설	2955	22,445.0		문화시설		70	350	70	350	
공급5-1		공급5-1		공급시설	2955	3,169.0		공급처리시설		40	80	40	80	

주1) 공원내 기반시설(오수중계펌프장)은 해당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5%, 용적률 10% 적용

■ IBC-III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상업용지【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C5-1~C5-3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 제외), 판매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50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U	MU5-1~ MU5-7	용도	주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용도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불허용도	• 주용도 및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7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250~35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일단의 대지 구분		• 동일 용도 및 사업자가 건축인허가 또는 개발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경우, 인접(연접)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인정 - 도로, 녹지, 공공공지 등 공공시설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예시 : MU5-1, MU5-4_1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가능)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업무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5-1	허용용도		• 업무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총포판매 제외), 기숙사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6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40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문화시설【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문화5-1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체육)시설, 제1종근린생황시설, 제2종근린생황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7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5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공급시설【변경】

■ 변전소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급	공급5-1	허용용도		• 발전시설(변전소) 및 부속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4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8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원5-3	허용용도		• 자원순환 관련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속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5% 이하
			변경	5% 이하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10% 이하
			변경	5% 이하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IBC-III(INS)) >

■ IBC-III-1【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원)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계						3,249,918.4	3,562,799.7							MRO사업지구
소계						219,236.0	219,216.9							
CO5-2		CO5-2		업무용지	2957	46,739.0	46,719.7	별표#1	업무용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60	400	
CO5-3		CO5-3			2957	172,497.0	172,497.2							
소계						256,232.4	257,151.2							
주5-1		주5-1		주차장	2957	27,220.0	27,220.0	주차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	4	
주5-2		주5-2			2957	229,012.4	229,931.2							
항공5-1		항공5-1		항공기 정비고	2957	1,111,895.3	1,143,000.0	항공기정비고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200	
공항5-1		공항5-1		공항시설	2957	50,511.9	50,827.7	공항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70	350	
유보5-1		유보5-1		유보지	2957	1,612,042.8	1,892,603.9	유보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20	80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IBC-III-1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가) 업무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O	CO5-2~ CO5-3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나) 주차장(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	주5-1 ~ 주5-2	허용용도	기정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 및 부속시설
			변경	• 자동차 관련 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1%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3%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항공시설【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항공	항공5-1	허용용도	기정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상의 주용도를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총포판매 제외)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라) 공항시설【변경】

도면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항	공항5-1	허용용도		• 「공항시설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 4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 60% 이하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마) 기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보	유보5-1	허용용도	기정	• 별표 #1 따름
			변경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본 및 지원시설 • 공공세면 / 화장실 등
		건폐율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건폐율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기정	• 공항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용적률을 따름
			변경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 필지 합병 - 연접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IBC-III-1(MR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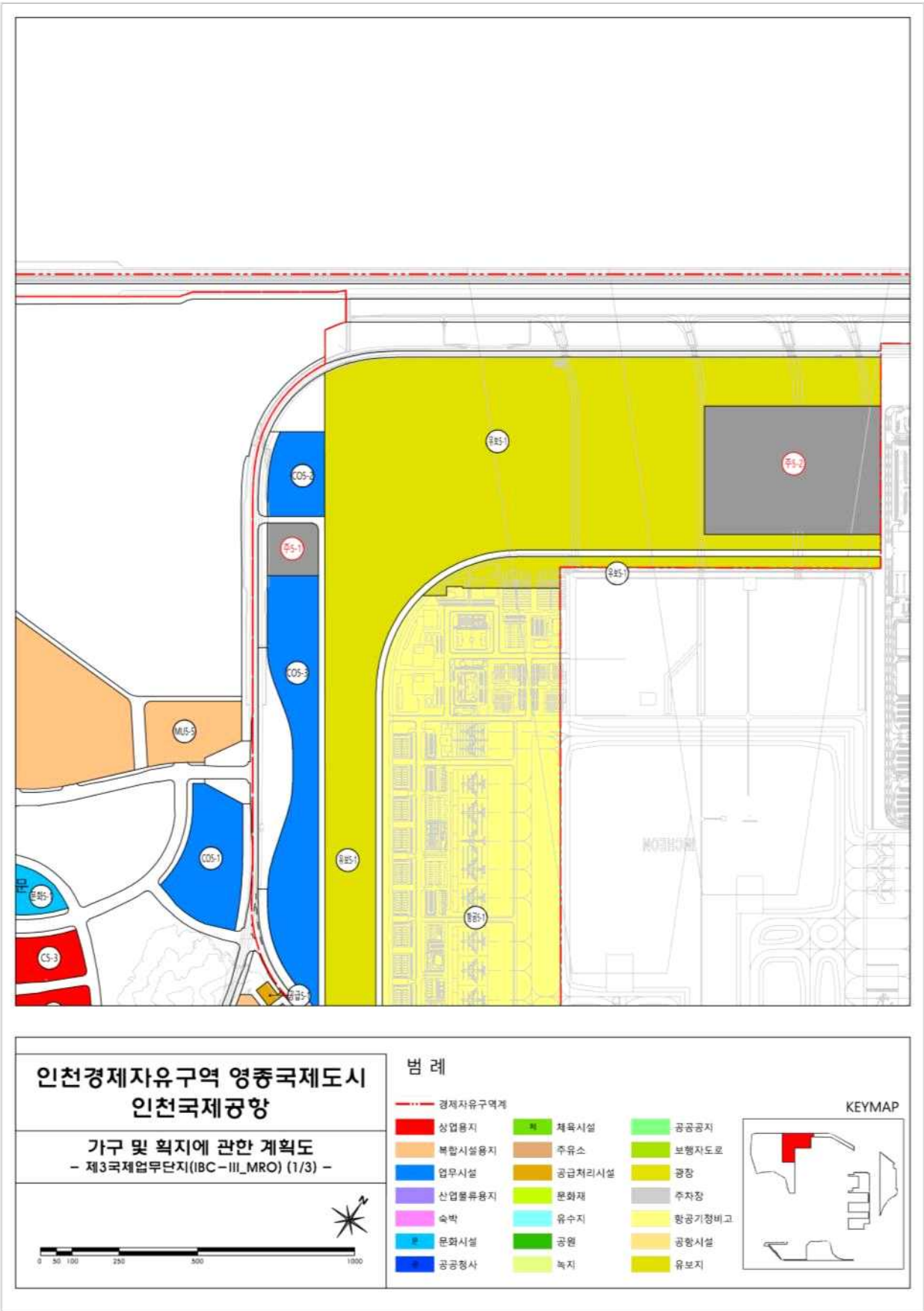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 (IBC-III-1(MR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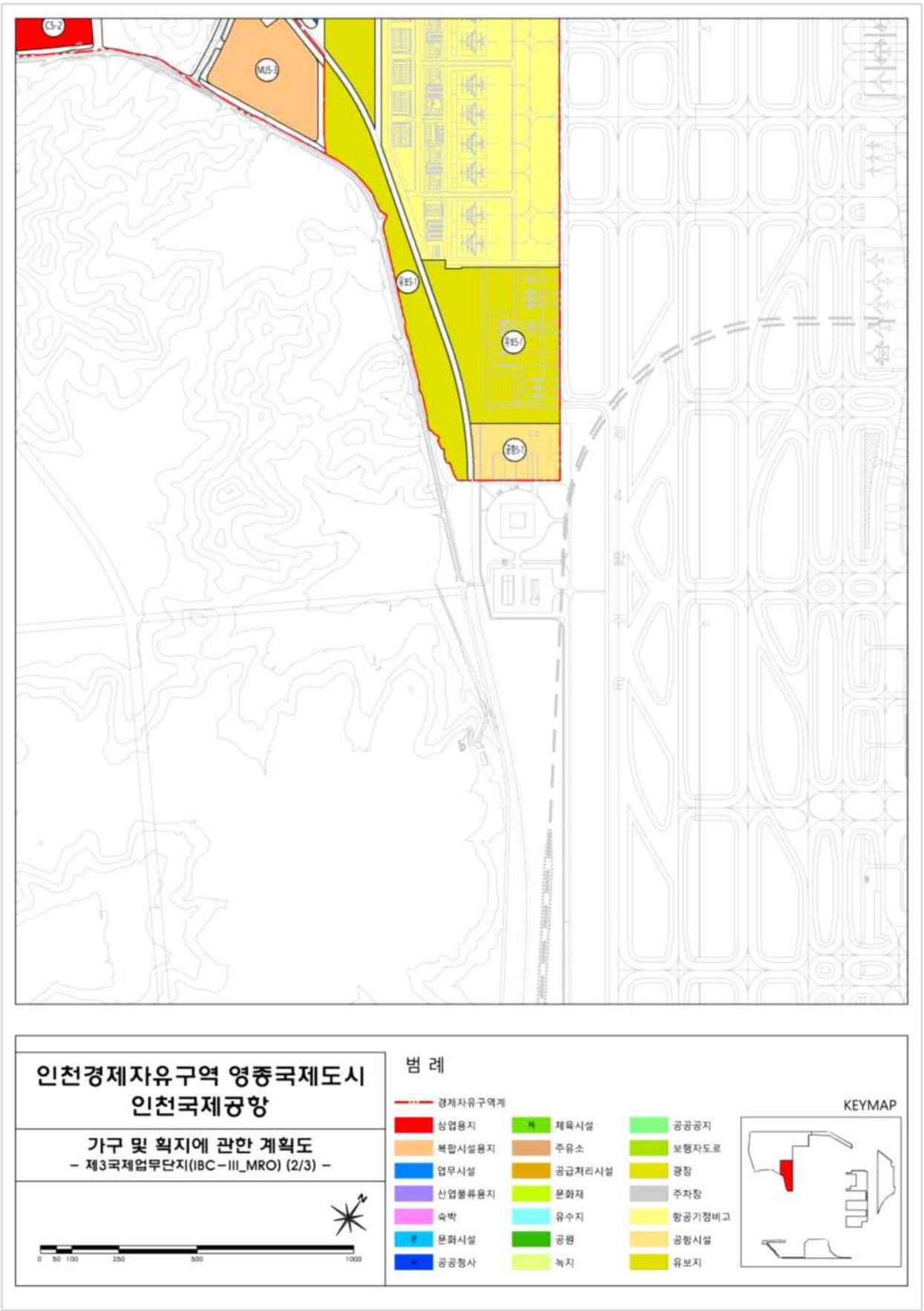

■ 별표 #1【폐지】

○ 용지(시설)별 허용시설

- 적용기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운항관리시설*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등	
상업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업무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복합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산업물류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1호 나목의 화물처리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기내식 제조, 공급 등을 위한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자목의 창고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차목의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카목의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기능 ■ 자유무역지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3조 제5호를 적용
관광·위락·숙박시설용지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위락, 운동,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문화시설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 같은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판매, 위락, 전시 및 관람집회 기능

2)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17,284,000	감 26,637.8	17,257,362.2	재정경제부 제2003-19호 (2003.08.11.)	4개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계			17,284,000.0	감) 26,637.8	17,257,362.2	
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제1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3167-4번지 일원	2,837,179.2	감) 504.9	2,836,674.3	
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제2산업물류단지	중구 운서동 2859-4번지 일원	2,875,834.4	감) 447.4	2,875,387.0	
3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2,427,020.6	감) 6,900.9	2,420,119.7	
4-1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II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4,367,000.0	증) 8,334.6	4,375,334.6	인스파이어
4-2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IBC-III-1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일원	4,776,965.8	감) 27,119.2	4,749,846.6	MRO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지구 인천국제공항 결정(변경)도

인천경제자유구역 국제도시지구 인천국제공항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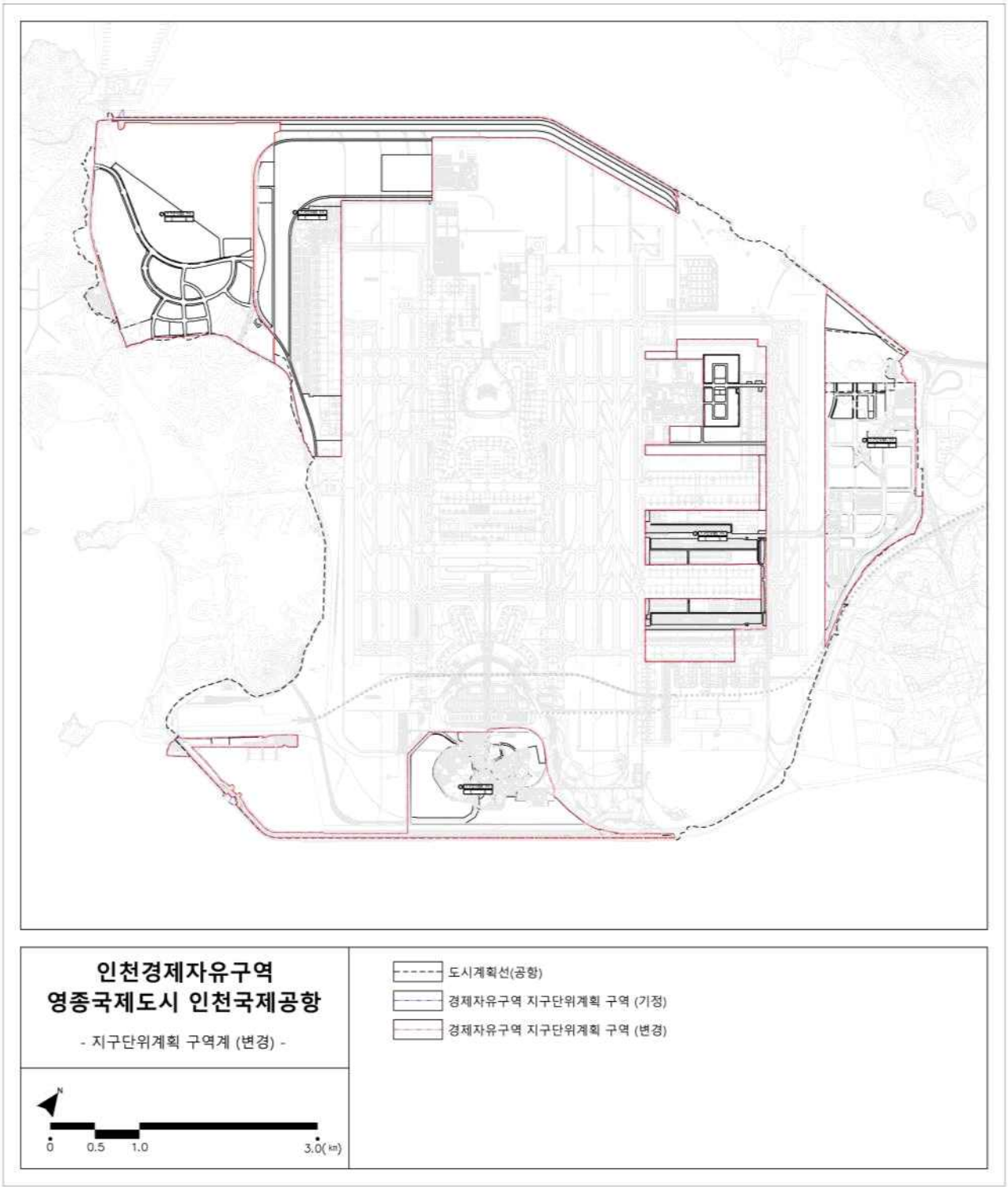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084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검수구실)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850번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79-140번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5-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 명칭: 배수지 검수구실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배 수 지	면적(㎡)	비 고
만 수	29.67	남동구 만수동 80-850번지
원 적 산	95.04	부평구 산곡동 179-149번지
석 남	40.80	서구 석남동 115-8번지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5. 사업기간

○ 2021. 6. 22. ~ 9.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2-1108호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해차량 단속시스템에 적발('21년10월)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경유자동차운행제한) 및 제49조(과태료)
 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과태료 부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라. 지방세기본법 제31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제33조(공시송달)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확인

4. 공고기간 : 2022. 4. 25. ~ 2022. 5. 8.(14일간)

5. 공고내용

가. 공고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 결과 2021년10월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과태료(2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을 부과하고 납부독촉하오니 공고기간까지 우리시 대기보전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고 체납자의 경유자동차는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차량공해관리팀(☎ 032-440-355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	(주)거*씨*씨	06오55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21시05분10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2	(주)경*정*	86부3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5시42분39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1차로	206,000	200,000	6,000
3	(주)엠*이*합*설	87너18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2시58분02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6,000	200,000	6,000
4	(주)티*스	73구15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6일, 14시29분34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1차로	206,000	200,000	6,000
5	(주)퍼*트*발	91부64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0시26분48초	인천광역시 학익변전소 앞(이동식) 3차로	206,000	200,000	6,000
6	(주)혜*클*스*	33버620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22시05분19초	서울특별시 길음역(동소문로) 3차로	206,000	200,000	6,000
7	J*C*B*O* K*L* A*A*	17저244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5일, 15시39분32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2차로	206,000	200,000	6,000
8	고*선	50우626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08시01분18초	서울특별시 오목교(영등포로) 오목교 (영등포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9	공*규	79저83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05시20분4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2차로	206,000	200,000	6,000
10	공*희	77더152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00시36분40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6,000	200,000	6,000
11	권*서	95구776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2일, 09시58분52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12	김*모	95러676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02시54분54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13	김*문	73조896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20시09분52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4차로	206,000	200,000	6,000
14	김*영	80저609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21시22분42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15	김*구	51두778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7시20분23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16	김*연	86러315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2일, 11시05분36초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용이동 96-9 1차로	206,000	200,000	6,000
17	김*수	38라602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1일, 14시02분39초	인천광역시 계양대교 전방 3차로	206,000	200,000	6,000
18	김*애	04다473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22시09분53초	인천광역시 한미반도체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19	김*경	69머050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6일, 15시22분17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5차로	206,000	200,000	6,000
20	김*현	47다150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0일, 10시32분0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2차로	206,000	200,000	6,000
21	김*선	73구286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6시36분3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22	김*석	인천99아325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4일, 10시25분32초	인천광역시 가정성당 4차로	206,000	200,000	6,000
23	김*수	79저223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1일, 10시32분16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아암대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24	김*민	13무29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4일, 14시35분14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206,000	200,000	6,000
25	김*석	06오751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6일, 20시49분56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206,000	200,000	6,000
26	모*호	82구439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6시17분16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1차로	206,000	200,000	6,000
27	박*배	62러578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8일, 11시39분50초	서울특별시 벌말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28	박*영	73두79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6시21분40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3차로	206,000	200,000	6,000
29	박*언	52무388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2일, 06시20분35초	인천광역시 인천세관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30	박*학	73오911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14시52분48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31	백*	58라687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03시56분57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32	손*빈	96구835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6시06분04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6,000	200,000	6,000
33	송*환*(주)	83수98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4시01분5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206,000	200,000	6,000
34	신*재	62나26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5일, 12시26분03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35	안*옥외1인안*윤	25조718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14시24분35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3차로	206,000	200,000	6,000
36	안*순	54소44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5일, 17시22분55초	인천광역시 KCC아파트 1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37	양*승	60구590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3시52분19초	서울특별시 DMC역(증산로) DMC역 (증산로) 2차로	206,000	200,000	6,000
38	양*성	81어264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5일, 09시21분41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65-3 화성방면 2차로	206,000	200,000	6,000
39	양*영	06우548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19시17분52초	경기도 고양시 장항IC 인근 1차로	206,000	200,000	6,000
40	양*숙	14서21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20시32분1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5차로	206,000	200,000	6,000
41	염*천	54라32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3일, 17시08분22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42	유*남	73부73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13시59분37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206,000	200,000	6,000
43	유*동	인천35머984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2일, 13시10분55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44	유*산	43조732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9일, 18시34분12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1차로	206,000	200,000	6,000
45	유*복	02어72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6시17분34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6,000	200,000	6,000
46	유*수	80가32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7시43분24초	서울특별시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1차로	206,000	200,000	6,000
47	이*영	40저92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3일, 16시49분2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206,000	200,000	6,000
48	이*이	26버836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9시32분38초	인천광역시 선학별빛도서관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49	이*종	01소758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0시19분35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4차로	206,000	200,000	6,000
50	이*희	25가44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3일, 13시33분55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2차로	206,000	200,000	6,000
51	이*복외황*옥	26조452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2일, 11시20분38초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65-3 화성방면 1차로	206,000	200,000	6,000
52	이*연	28루445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14시11분23초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인창제일교회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53	이*영	46라326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2일, 06시42분26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54	이*식	20거375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9일, 06시53분57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3차로	206,000	200,000	6,000
55	이*기	75서767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07시54분28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3차로	206,000	200,000	6,000
56	이*택	86노202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8시28분05초	서울특별시 서부간선도로(서울방향) 2차로	206,000	200,000	6,000
57	이*임	20오783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9일, 10시05분17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6,000	200,000	6,000
58	이*현	38구251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0시37분45초	서울특별시 벌말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59	이*덕	25다211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00시20분42초	인천광역시 전재울사거리 전재울사거리 2차로	206,000	200,000	6,000
60	장*봉	91더212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1일, 17시09분55초	인천광역시 일신동주민센터 앞 4차로	206,000	200,000	6,000
61	전*훈	76모60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2일, 11시30분58초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IC 덕소방면 1차로	206,000	200,000	6,000
62	전*석	10누473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7일, 10시53분59초	인천광역시 모다아울렛 2차로	206,000	200,000	6,000
63	전*선	80너883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1시33분32초	인천광역시 용종교 4차로	206,000	200,000	6,000
64	정*점	76가626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9일, 20시32분03초	인천광역시 삼산체육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65	정*재	26누2632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02시10분29초	인천광역시 남동IC 전방 4차로	206,000	200,000	6,000
66	정*수	45라156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2일, 16시03분36초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시장 앞 3차로	206,000	200,000	6,000
67	주*완	65무5537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14시40분37초	인천광역시 인천면허시험장 송도교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68	주*회* 마*타*건*	86누524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2시14분09초	인천광역시 경인요금소 3차로	206,000	200,000	6,000
69	주*회* 알*리*레*딩	86서73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1일, 12시59분38초	인천광역시 항동저수지 앞 2차로	206,000	200,000	6,000
70	주*회* 한*기*	03고59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18일, 10시09분50초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41 파주방면 1차로	206,000	200,000	6,000

연번	소유자	부과대상 (위반차량)	위반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처분내역		
						합계	과태료	가산금
71	진*고	45노5801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4일, 16시09분37초	인천광역시 백운공원 3차로	206,000	200,000	6,000
72	천*구	27더1538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9일, 16시36분26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73	최*희	67구0949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8일, 21시06분59초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풍곡육교 2차로	206,000	200,000	6,000
74	최*경	81우65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08일, 04시56분56초	인천광역시 수현삼거리 2차로	206,000	200,000	6,000
75	최*철	87가7585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8일, 13시31분54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2차로	206,000	200,000	6,000
76	최*호	83두6344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6일, 23시55분58초	서울특별시 강변북로(구리방향) 3차로	206,000	200,000	6,000
77	한*익	74로8796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5일, 15시15분31초	경기도 김포시 해병2사단사거리 3차로	206,000	200,000	6,000
78	형*우	인천33루1850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27일, 16시20분23초	인천광역시 운연사거리 3차로	206,000	200,000	6,000
79	황*현	59머1183	상시운행제한 위반	2021년10월30일, 18시20분46초	서울특별시 서울대입구역(관악로) 1차로	206,000	200,000	6,00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127호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경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2. 5. 10.(화), 14:00~16:00

나. 장 소 : 하버파크 호텔 15층 하버베이(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7)

다. 온라인중계: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제한하며, 온라인 생중계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지역(1,104.45㎢)

○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40년

나. 주요내용:「경관법」 제9조 관련 사항

○인천시 경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천시 경관구조의 설정 및 관리방안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

○경관지구 관리 및 운영방안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

※ 경관계획(안) 주요내용은 2022. 5. 10.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 신청자 50명으로 한정하니 양해 바랍니다.

○ 신청기한: 2022. 4. 25.(월) ~ 2022. 5. 3.(화)

○ 신청방법: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2-440-8681) 또는 전자우편(hjcecile@korea.kr)으로 제출 (붙임 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 사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동일 업종이나 단체의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석 대상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2. 5. 11.(수) ~ 2022. 5. 17.(화) 18:00

2) 제출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도시경관건축과), 전자우편(hjcecile@korea.kr) 및 팩스(☏032-440-8681)

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1)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참석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온라인 생중계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032-440-4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0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나이별 차등지급을 폐지함.(안 제5조제2항)

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6조)

라. 환수조치의 방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두거나”를 “두고 거주하거나”로,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하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를 “월 10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두고 거주하거나 ---------- 하고 거주하는 ----------.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생략)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하고, 85세 이상부터는 월 10만원으로 한다.	② ---------- 월 10만원으로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

	터 제7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환수조치) ① -- 제7조에 따라 ----------.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1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7조)

다. 지급중단, 환수조치의 조항을 정비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유족”을 “유족(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으로, “둔”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 중단 및 환수)”를 “(지급 방법 및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일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① ----------. 1. ----------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① ---------- 유족(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 두고 거주하는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배제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신 설>	② 수당은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일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 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 설>	제8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 설>	제9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 제9조 (생 략)	제10조 · 제11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2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나.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4조제2항)

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5조)

라. 지급중단, 환수조치의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전몰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를 “전몰군경유족(선순위수권자)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4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조(종전의 제6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수당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대상 및 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 전몰군경유족(선순위수권자)로 한다. ② ---------- 7만원--------.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4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신 설>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삭 제>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① -- 제6조----------.
<신 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

	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 제8조 (생 략)	제8조 · 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3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함.(안 제7조)

나.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인상함.(안 제7조)

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8조)

라. 지급중단, 환수조치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를 “시장은”으로,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7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예우수당) <조 신설 2017-11-13>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훈예우수당) ---------- 시장은 ---------- 두고 거주하는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5만원---. ----------.
<신 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7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 설>	제9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 설>	제10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4호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5·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조례에 신설함.(안 제5조)

나. 지급중단, 환수조치의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를 “시에”로, “유가족”을 “유가족(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을 “(지급 방법 및 시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수당은 제4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훈예우수당) ---------- 시에 ---------- 유가족(본인 또는 선순위수권자)----------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제5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한 때 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	② 수당은 제4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건이 소멸한 때	
<신 설>	③ 다른 시도에서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 설>	제6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예우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은 경우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수당 등을 반환할 자

	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제8조 ----------.
제9조·제10조 (생 략)	제10조·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5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주의를 폐지함.(안 제3조 삭제)

나.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제3항 삭제,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신청) ① (생 략)	제2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군수·구청장은 제반서류를 매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삭 제>
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	

급한다.	
제4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 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하에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6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주의를 폐지함.(안 제3조 삭제)

나.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방법) ①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유가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삭 제>
제4조(환수 조치) 유가족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 하에 지체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7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주의를 폐지함.(안 제3조 삭제)

나.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함.(안 제4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훈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오중식(전화번호 032-440-2988, 팩스번호 032-440-8708, 전자메일 jssy212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방법) ① 군수·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예우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삭 제>
제4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예우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예우수당이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 하에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1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문화예술진흥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공공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제도 의무화

○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

나.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심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심의위원 선정 방식·절차 규정, 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정비하고

다.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시 엄정한 검수관리를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

1) 당연직 규정 및 전문직 위촉 분야 변경

2) 위원장단의 선정 방식 및 절차, 인원 규정

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성요건 변경 (안 제13조)

라.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관련규정 신설(안 제17조 ~ 제21조)

마. 군·구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 정비(안 제2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콘텐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용운(440-3998, 팩스 440-8721, windpark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90일”을 “18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 2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로 하고,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를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제17조～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시장은 심의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권고

③ 검수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검수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수에 참여한 경우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고,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제18조(시행

규칙)를 각각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제23조(시행규칙)”로 한다.

제17조 중 제1호를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심의결과 통보”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전단(“제○조에 따른”)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를 삭제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생략)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180일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미술작품----------.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 2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

현 행	개 정 안
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분야----------.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1명----------.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건축물 미술작품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 12명 ---------- 구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제17조(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① 시장은 심의결과에 적합하게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이하“검수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검수 2. 미술작품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자문·권고 ③ 검수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검수단원의 구성 및 자격) ①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검수단원은 미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검수단원의 자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미술작품 검수 회피) 검수단원은 공정한 검수를 위하여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미술작품 검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검수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수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검수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수에 참여한 경우 제21조(검수단원의 비밀준수 의무) 검수단원은 검수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 ----------

현 행	개 정 안
1.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심의결과 통보. (제2조에 따른 및 후단 삭제)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4.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 5.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보관	3. ~ 5. (제○조에 따른 삭제; 그 외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

붙임 2.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개정안> [시행일: 2022. 7. 19.]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

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시행예정일: 2022. 7. 1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

3.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를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기여도 등”을 “기여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로, “공보에 공고”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4(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3.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
4.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작품명	
작품분류		작가명	
설치장소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작품가액(원)		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건축물용도	
작품이미지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2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공공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제도 의무화에 따른 미술작품공모 요령 및 절차, 평가배점 등을 정비하고

다.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시 엄정한 검수관리를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단원의 자격 요건 및 신청·추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작품 공모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조)

1) 미술작품 공모 시 공지 요령

2) 미술작품 공모작품 선정 요령

나. 미술작품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1) 공모 선정작품에 대한 가산점 규정 추가

2) 수정가결 요건 간소화(미술작품의 안정성, 도시미관 등 조건부 가능)

다. 검수단원의 자격 및 위촉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0조)

1) 검수단원의 자격 요건

2) 검수단원 신청 및 추천 시 구비 서류 규정(별지 서식 추가)

라. 법령 및 조례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규정 정비

1) 별표 2.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변경)

2)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필수 첨부서류 추가)

3)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 신청서(추가)

4) 별지 제15호서식. 검수단 추천서(추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콘텐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용운(440-3998, 팩스 440-8721, windpark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한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①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공모할 경우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하며, 2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항에 후단을 추가하고, 제2항의 위원회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정정하며, 제6항 중 “출석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토론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① ----------. 다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이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 인천광역시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③ ~ ⑤항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미술작품 검수단의 자격 및 위촉)를 신설한다.

제10조(미술작품 검수단의 자격 및 위촉)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미술작품 검수단원(이하 “검수단” 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관련 분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관련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검수단으로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별표 1] 공모대행 절차(현행과 같음)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공모작품 가점 10점 추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첨부서류 추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 신청서(추가)

[별지 제15호서식] 검수단 추천서(추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심의번호	작품제목

평가기준 및 배점			점수
가격	20	-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 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	30	-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20	-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	20	-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	10	-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	100	(일반 심의작품은 여기까지만 표기)	
가산점	(10)	-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 ※ 이하는 공모를 통해 제작·설치되고 공모를 증빙한 경우에 한함	
총점수	(110)		
판 정 (해당사항에 O 표기)	적합	(70)점 이상일 경우	
	부적합	(70)점 미만일 경우	
비고	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 ]공공기관 [ ]민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관리인	성명 [ ]공공기관 [ ]민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물	건축구분 [ ]신축 [ ]증축		위 치	
	건축허가일자			
	건물명		용도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 해당시설 중 선택)	설치대상 연면적
미술작품개요	작품명		작가명	
	작가 생년월일		작가 연락처	
	작품종류	작품재료	작품규격	
	설치위치(건물 위치 내 상세위치 명기)		작품가액	
	심의일자		설치완료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 설치 완료(준공)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1. 심의도서 사진 1부.
2. 설치완료 사진(근경 전·후, 원경 전·후, 작품명패) 1부.
3. 작품대금지급완료 증명(통장사본, 은행입금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별지 제14호서식]

검수단 신청서

사진 (3.5*4.5)	성명 (한자)	(　　)	연 락 처	
	생년월일		전자메 일	
	주　　소			
전문분야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　*내용기재*　)			
검수단원 수행경력				
해당분야 주요경력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관련 증빙서류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15호 서식]

검수단 추천서

추천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피추천인	전문분야	미술[ ] 평론[ ] 건축[ ] 조경[ ] 공공디자인[ ] 안전[ ] 기타관련분야 [ ](*내용기재*)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경력	검수단원 수행경력			
	작품경력			
	수상경력	*※ 전분분야별로 경력사항은 편집사용 가능*		
	전시경력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분야별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전시회 판플렛 자료, 졸업증명서 등 경력 관련 증빙서류 등 1부.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건축주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때에 건축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미술 분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작가경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모할 수 있다.	제4조(미술작품의 공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공모할 경우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하며, 2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미술작품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와 같다.	제6조(미술작품 감정·평가 등) ①---------- 다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따라 각 심의위원이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 공모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미술작품 감정·평가 또는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미술작품----------.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가결되거나 제5항에 따른 선정에도 불구하고 출석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토론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밑줄친 부분 삭제; 그 외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미술작품 검수단의 자격 및 위촉)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미술작품 검수단원(이하 “검수단” 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련 분야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관련 분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관련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검수단으로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수단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수단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별표 1]공모대행 절차 [별표 2]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생략) [별지 제11호서식]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생략)	별지/서식 [별표 1]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모제 가점 10점 추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1호서식] (필수 첨부서류 추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14호서식]검수단 신청서(추가)** **[별지 제15호서식]검수단 추천서(추가)**

붙임 2.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개정안> [시행일: 2022. 7. 19.]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

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시행예정일: 2022. 7. 19.]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술작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9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축주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의 대지 내에 공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에 대한 신청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미술작품의 변경 대신에 그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작품명 변경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설치비용의 증감분이 감정·평가를 받은 설치비용의 10% 이내이고 이를 미술작품의 제작비용에 반영하는 경우

3. 미술작품의 2m 이내의 위치변경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로,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를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그 밖에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으로, “기여도 등”을 “기여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로, “공보에 공고”를 “공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6.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관리 및 점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 및 작품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의2의 제목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미술작품의 현황 및 제15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총괄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관리한 현황 및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의 공모를 대행한 경우 그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의4(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제공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 법 제9조2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
3. 법 제9조3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명령 현황
4. 법 제9조4에 따른 공모 현황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은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관리번호		작품명	
작품분류		작가명	
설치장소 (주소)	시·도 시·군·구 도로명 번지 (상세 위치:)		
작품가액(원)		설치일자	
건축주 (관리자 또는 소유자)		건축물용도	
작품이미지			비고 (작품변경내용 등)

일자	관리·점검 사항	조치 사항	비고

담당부서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법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가로로 칸을 배열하는 등 전자적 처리방법에 맞는 서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table>
<tr><td rowspan="2">1. 규제사무명 등</td><td rowspan="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조,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td><td colspan="8">2. 구분</td></tr>
<tr><td>신설</td><td>○</td><td>강화</td><td>○</td><td>내용 심사</td><td></td><td>존속 기한 연장</td><td></td></tr>
<tr><td>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td><td colspan="9">○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 작 성 자 :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문화기반팀장 한교동, 주무관 박용운</td></tr>
<tr><td>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td><td colspan="9">
<table>
<tr><th colspan="2">유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h>의견수렴방식</th><th>의견내용</th></tr>
<tr><td>피규제자</td><td>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주</td><td>불특정 다수</td><td>입법예고</td><td></td></tr>
<tr><td>이해관계자</td><td>미술작품 설치 작가 및 설치대행사</td><td>불특정 다수</td><td>입법예고 및 인천관내 미술단체 의견조회</td><td></td></tr>
<tr><td>관련부처</td><td>문화관광체육부(시각예술과)</td><td></td><td>입법예고</td><td></td></tr>
</table>
* 관련 이해관계인 현황 등 상술(규모별, 자본금 기준, 매출액 기준 등 통계자료 보완)
</td></tr>
<tr><td>5. 근거법령 등</td><td colspan="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법률개정안 제9조 ~ 제9조의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2 및 입법예고안(2022.7.19.시행예정)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td></tr>
<tr><td>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td><td colspan="9">○ 문화예술진흥법령 개정에 대응
- 공공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제도 의무화
-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권한 이관
○ 공공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제도 의무화에 따른 미술작품공모 요령 및 절차, 평가배점 등을 정비
○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시 엄정한 검수관리를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단원의 자격 요건 및 신청·추천 규정을 마련함</td></tr>
<tr><td>7. 규제존속기한</td><td colspan="9">○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td></tr>
</table>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배경과 원인

□ 공공기관 미술작품 공모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자체 공모 절차 등 규정 강화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제9조4 제2항 규정 신설에 따라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므로 이에 따른 공모절차 및 안내, 심사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하는 사항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22.7.19.시행예정) 제15조3 제1항에 의해 건축주가 공모제 시행 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함

□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권한 이관, 설치 확인시 전문능력 요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안(2022.7.19.시행예정) 제15조에 의해 기초자치단체는 미술작품의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연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 동 시행령 입법예고안(2022.7.19.시행예정) 제1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미술작품 관리총괄표도 세밀한 점검 양식으로 변경되었음

○ 건축물 미술작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최초 설치 확인 단계에서 정확한 검수가 이뤄져야 함에 따라 설치 확인 검수에 미술관련 전문가의 전문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검수단원의 자격요건 구비가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경기도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상에 검수단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개정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공공기관 미술작품 공모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자체 공모 절차 등 규정 강화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2항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공모사실을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하며, 2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미술작품 구성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건축계획서, 건축물 및 조경 식재계획 관련 상세 이미지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한 것과

○ 동 규칙 개정안 제4조 제3항에서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선정하도록' 한 것은

○ 최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시도에서 공모제도의 시행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흐름에 궤를 같이하고자 인천시에서도 이미 구조례(「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2019.6.21.개정)에서 '미술작품 공모제도'를 적극 도입한 사항이며

○ 2010년대 이후 미술품 판로가 막힌 기성의 미술작가 및 신진작가들이 대거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으로 진입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한 절차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술작품 창작자인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법령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임.

□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권한 이관, 설치 확인시 전문능력 요구**

○ 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 제1항에서 검수단원의 자격요건을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에서 가) 관련 분야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5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나) 관련 분야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1년에 1회 이상 총 3년 이상의 활동을 한 사람, 다) 관련 분야 대학원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작품 활동을 총 1회 이상 한 사람, 라)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미술·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과

○ 시행규칙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서 검수단으로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검수단 신청서 또는 검수단 추천서 외에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사항을 추가로 구비하게' 한 것은

○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점검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엄정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 확인 단계에서 정확한 검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검수단원의 미술관련 전문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 최근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시도에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이와 같은 흐름에 궤를 같이하고자 인천시에서도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2020.12.31.제정)를 제정하며 사후관리의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강화했던 정책적 선택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해당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해당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공공기관 미술작품 공모제도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자체 공모 절차 등 규정 강화

○ 본 규제는 상위법령에서 시·도지사의 의무로 부과된 업무로서 최근의 법령개정에 따라 공모제도 시행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임

□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 강화 및 권한 이관, 설치 확인시 전문 능력 요구

○ 본 규제는 상위법령의 개정(법률개정안 제9조의3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15조 와 제15조의2)을 통해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로 갈음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본 규제는 상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미술작품 공모제도 활성화 및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의 신설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신설되는 규제 집행에 따른 일부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만(검수단원 운영: 5년간 72백만원 예상),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 자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4.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규제 신설 및 강화

○ 본 규제는 상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미술작품 공모제도 활성화 및 미술작품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 시 필수조항임